연구보고 2011-2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득 하위 70% 아동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아에게도 차상위계층 이하에 한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규모나 대상 확대뿐 아니라,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0년부터 실시하는 정기 보고 형태의 연구로,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보육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수립 반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공급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관련 지원정책, 질 관리 정책 등 9개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고,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하였다. 또한 보육정책 중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주요 보육 지표를 제시하고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앞으로도 기대되는 지원 확대 등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보고서가 보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하고, 재정 지원사업인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어린이집 공급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 정책, 교사 관련 지원정책, 질 관리 정책 등 9개 각종 예산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함.
-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함.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함. 특히 시·도의 부모 모니터링 실태를 알아봄.
- 보육정책 중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앞에서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 제언을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보육정책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보육관계자와 어린이집 이용 영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2. 보육정책 현황

□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음.

주요 지표는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둠.

□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10년 현재 각각 49.2%, 68.7%임.

□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0, 1세 해당아동 5.8%가 지원 받았으며, 2011년부터는 지원 연령이 영아 전체로 확대되고 지원액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증가하였음.

- 저소득층 영아 어린이집 이용 저해, 모의 취업 동기 약화 등 비판 요인이 있어서 유아로의 확대나 지원금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함.

□ 보육 지원 확충으로 보육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2010년이 0.20%, 2011년 0.22%이고,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51%임. 유아교육 및 농어촌 영유아 지원을 포함하면 0.69%임.
- 아동1인당 연간 보육예산은 449만원 정도임.

□ 2010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56.9%,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8%,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8%임. 2009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54.2%,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2.9%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음.

- 보육 및 국공립기관 공급률·이용률은 시·도, 시·군·구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

□ 야간보육은 3.0%이고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3.3% 수준임. 야간보육은 2%에서 3% 수준으로 30% 이상이 증가하였음.

- 소수 아동 야간보육을 위한 교사 인건비 지원방식은 효율성이 낮아 거점형 시설로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현재 통과 비율은 70.1%로, 2009년 통과비율 60.5%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하였음.

- 정보 공개 미비로 부모 활용도 낮고, 재정지원과의 연계 부재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담보 역할 부족함. 평가 의무화로의 전환도 검토가 필요함.

□ 보육교사 수 대비 월 수당 지급 교사 비율은 22.4%로 2009년 18.2%에서 증가하였고,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2.6%로 2009년 2.9%보다 낮아졌음.

3.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 특수보육시책 내용은 크게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 소요 예산을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6~91만원임. 서울, 인천, 대전, 울산이 비교적 높은 순위임.

□ 중앙정부가 시·도에 추진을 위임한 부모모니터링사업의 경우 7개 시·도에서 실시하는데, 서울시와 그 이외 시·도간의 격차가 큼.

□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평균은 51만원 수준이지만 구별로는 최대와 최소가 각각 378만원, 6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고, 사업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함.

□ 특수보육시책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이러한 차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재정 지원 사업 검토

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 정보센터 전문요원, 학계 전문가 총 282명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며, 초과보육 아동 기본보육료 미지급은 적절하다는 경향임.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식이 더 강함.
- 기본보육료를 부모보조금화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보육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조건으로 클린카드, 평가인증 통과는 적절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음.
- 부모의 취업과 연계하거나 환수 시 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음.

□ 부모 인지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이용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를 모름.
- 영아 기본보육료 수령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아동의 92.2%가 5일 모두 종일 이용하여, 표준보육비용이 종일제 주 6일 보육을 전제로 산정된 것과는 일치하지는 않음.
- 기본보육료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차이도 거의 없음.

□ 기본보육료가 추가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기본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이용과 어머니 취업활동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42% 정도이고, 어린이집 선택과 추가 출산과 기본보육료는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3.0%, 37.3%임.
- 영아 기본보육료 수혜여부별 아동이 지불하였다는 추가 납부액은 각각 10천원, 20천원으로 기본보육료를 받는 영아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추가 비용의 차이는 부모 부담 완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임.

□ 기본보육료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육관계자와 부모 모두 재정 지원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서비스의 질과 연계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이윤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아 중심 어린이집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성이 희박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초래를 우려함.

□ 현재 수준으로 양육수당의 보육서비스 대체효과는 거의 없으나,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약 20% 정도의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기대됨.

- 취업모 중 63.4%는 지원금이 충분하면 직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양육수당이 정책 여하에 따라서 여성 노동공급에 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나. 공공형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의 요약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선정 기준 항목으로 수상 실적과 보육료지원아 비율은 재검토를 요함.
- 항목간 점수는 평가인증 점수와 비상재해대피시설 점수 강화, 수상실적과 원장 경력은 점수 차이 하향조정 및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감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최대 3점까지 부여되는 평가인증주기 가점이 약 2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상환액·임대료 감점이 약 10% 정도임.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교직원 전문성 가점 6점임.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상향조정을 검토함. 현재 80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에서는 68~9%, 학계에서는 58% 정도만이 적절하다고 하였음.
- 지원금 지원 방식은 개선을 필요로 함.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25.2%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며, 구간별 지원액에 대해서도 1/3 이상인 34.4%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임.
- 추가적 지원으로 교사도우미 배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임.
- 운영기준으로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 이외에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취약보육 실시를 검토함.
- 관리체계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율공부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함.

5. 정책방향 제언

가. 보육비용 지원

□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표준보육비용 주기적 산정 및 법제화를 추진함.
- 산출되는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점차 현실화 함.
- 단기적으로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교육 등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흡수하여 추가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함.

-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과의 연계를 강화함. 올해부터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기본보육료나 보육료 지원과도 연계함.
- 보육비용을 이용시간과 연계하는 방안의 확대 적용이 필요함.
- 무상보육이 되면 논의의 여지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보육료와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보육은 금지하며, 평가인증 등 질적 수준과 연계를 추진함.
- 평가인증 통과는 물론 클린카드 사용, 1기관 1계좌 사용 등과 같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조건들 추가함.
- 영아보육과 어머니 취업의 연계가 필요함. 이는 사실상 실천하기 쉽지 않고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함.

□ 양육수당 관련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므로 점차 양육수당 대상 소득수준 기준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보육정책의 기본철학에 따라 수위를 조절함.
- 현재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겠으므로, 유아로의 확대는 금지되어야 하며, 유아로의 확대 시에는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함.

나. 보육 인프라 공급

□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지원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함.
- 지원 단가를 확대함.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단가 1,201,300

원/㎡보다 57%p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지원 시설 규모의 확대도 필요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조건이나 지원수준에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선정 기준 항목, 배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필요로 함. 평가인증 점수는 하한선을 두어야 하고, 90점 이상과 95점 이상을 동일점수로 주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수상 실적, 보육료지원아 비율, 원장 경력은 재검토를 요하여 이러한 항목은 점수 하향조정 및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를 상향조정함. 가산점 제도로 총 17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80점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지원금은 아동별 지원이나 반당 지원으로 개선함.
- 운영기준으로는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 취약보육 이외에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을 추가함.
- 관리체계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자율공부는 준비 과정을 통하여 추진함.

□ 시간연장형 보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시간연장형 보육 시작 시간을 현재 7시 30분에서 6시30분으로 한 시간 당겨 실시함. 이를 위해서 종일제 보육 시간을 수정함.
-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함.
- 중기과제로 모의 취업이나 가정 사정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 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야간보육교사 배치를 강화함.

□ 어린이집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함.

-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육아지원시설이 설치되어 부모 입장에서 접근성

을 제고하고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함.

-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체계의 효율적 구조를 구축함.

□ 파견보육서비스의 구조적 관점에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아이돌보미 바우처 체계를 보육과 연계하고,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하며, 시간제 돌보미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심사도 통일적으로 적용함.
- 아동 돌봄노동인력에게 일정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 마련함. 아이돌보미 관련 법에 조항을 추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체계를 구축함.

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원점수를 공개함으로서 부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중기 과제로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정보에 예결산 포함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 전체 교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 사업으로 수용함.

□ 교사 인력 배치 강화

- 당분간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함.
- 궁극적으로는 1개반 1명 교사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 교사를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함.

□ 교육체계 개선과 인력관리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금 단가를 상향조정함.
- 중기과제로 보수교육 명령제를 도입하여 보육인력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해진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관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3
4. 관련 선행연구 ····· 6
5. 연구의 한계 ····· 8

Ⅱ. 보육정책의 현황 ····· 10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 10
2. 보육비용 지원 ····· 28
3. 시간연장형 보육 ····· 43
4. 어린이집 평가인증 ····· 46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 50
6. 보육정보센터 운영 ····· 55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58
8. 가정내 파견보육사업: 아이돌보미 ····· 61
9. 보육 재정 ····· 66
10. 소결 ····· 71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 73

1. 시·도 특수보육시책 ····· 73
2.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 88
3. 소결 ····· 90

Ⅳ.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 사업 검토 ····· 91

1.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 ····· 91

2.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 119

Ⅴ. 정책제언 ····· 141

1. 향후 정책과제 ····· 141
2. 맺는 말 ····· 153

참고문헌 ····· 155

부 록 ····· 159

부록 1.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 161
부록 2. 기본보육료 관련 조사 결과표 ····· 169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표 ····· 172
부록 4. 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 질문지 ····· 187
부록 5. 기본보육료·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보육관계자 조사 질문지 ····· 191

표 차례

〈표 Ⅰ-3-1〉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설문조사 내용 ····· 3
〈표 Ⅰ-3-2〉 성별과 연령별 조사대상 아동 수 ····· 4
〈표 Ⅰ-3-3〉 조사대상 아동 가족유형 및 출생순위 ····· 4
〈표 Ⅰ-3-4〉 조사 대상 아동 부모 학력 ····· 5
〈표 Ⅰ-3-5〉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 대상 수 ····· 5
〈표 Ⅱ-1-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 12
〈표 Ⅱ-1-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10.8.31.) ····· 13
〈표 Ⅱ-1-3〉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0 ····· 13
〈표 Ⅱ-1-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 14
〈표 Ⅱ-1-5〉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 ····· 14
〈표 Ⅱ-1-6〉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 15
〈표 Ⅱ-1-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0 ····· 16
〈표 Ⅱ-1-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0 ····· 16
〈표 Ⅱ-1-9〉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0 ····· 17
〈표 Ⅱ-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 17
〈표 Ⅱ-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0 ····· 18
〈표 Ⅱ-1-12〉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2010 ····· 19
〈표 Ⅱ-1-13〉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 19
〈표 Ⅱ-1-14〉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0 ····· 20
〈표 Ⅱ-1-15〉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 21
〈표 Ⅱ-1-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 23
〈표 Ⅱ-1-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아수 ····· 24
〈표 Ⅱ-1-18〉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수 ····· 25
〈표 Ⅱ-1-19〉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 ····· 27
〈표 Ⅱ-2-1〉 2004년 산출 1인당 표준교육비(종일제): 0, 5세 사례 ····· 28
〈표 Ⅱ-2-2〉 2008년 산출 1인당 표준교육비(종일제): 0, 5세 사례 ····· 29
〈표 Ⅱ-2-3〉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1 ····· 30
〈표 Ⅱ-2-4〉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 31

〈표 Ⅱ-2-5〉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 31
〈표 Ⅱ-2-6〉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1 ····· 32
〈표 Ⅱ-2-7〉 서울시 각 구의 영유아 추가 수납액 상한 기준: 2011 ····· 33
〈표 Ⅱ-2-8〉 보육비용 구성 ····· 35
〈표 Ⅱ-2-9〉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 36
〈표 Ⅱ-2-1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 36
〈표 Ⅱ-2-11〉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07~2010 ····· 39
〈표 Ⅱ-2-12〉 보육료 지원 건수: 2007~2010 ····· 40
〈표 Ⅱ-2-13〉 유형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0 ····· 40
〈표 Ⅱ-2-14〉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 2010 ····· 41
〈표 Ⅱ-3-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지정 어린이집 현황: 2010 ·· 44
〈표 Ⅱ-3-2〉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0 ····· 45
〈표 Ⅱ-4-1〉 연차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 2011. 4 ····· 47
〈표 Ⅱ-4-2〉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2011. 4 ····· 47
〈표 Ⅱ-4-3〉 2005~2009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2011. 4 ····· 48
〈표 Ⅱ-4-4〉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결과점수 분포 ····· 49
〈표 Ⅱ-4-5〉 평가인증 차수별 평균점수 현황 ····· 49
〈표 Ⅱ-5-1〉 자격증 취득자의 현직 종사 비율(2005. 4~2010. 6) ····· 51
〈표 Ⅱ-5-2〉 보육교직원 수 ····· 52
〈표 Ⅱ-5-3〉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 52
〈표 Ⅱ-5-4〉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 53
〈표 Ⅱ-5-5〉 교사 관련 사업 규모 ····· 54
〈표 Ⅱ-6-1〉 지방보육정보센터 소요예산 등 ····· 56
〈표 Ⅱ-6-2〉 보육정보센터의 제 특성 ····· 57
〈표 Ⅱ-6-3〉 인력 규모 ····· 57
〈표 Ⅱ-6-4〉 보육정보센터의 사업 ····· 57
〈표 Ⅱ-7-1〉 시·도별 차상위 계층 이하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 규모: 2010 ··· 59
〈표 Ⅱ-7-2〉 농어민 자녀 지원 예산 규모 ····· 60
〈표 Ⅱ-8-1〉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 61
〈표 Ⅱ-8-2〉 종일 돌봄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 63
〈표 Ⅱ-8-3〉 아이돌보미 급여 ····· 64

〈표 Ⅱ-8-4〉 아이돌보미 활용 회원 수 ····· 64
〈표 Ⅱ-8-5〉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 65
〈표 Ⅱ-8-6〉 연령별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 65
〈표 Ⅱ-9-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7~2011 ····· 67
〈표 Ⅱ-9-2〉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1 ····· 67
〈표 Ⅱ-9-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 ····· 68
〈표 Ⅱ-9-4〉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아동1인당 비용: 2011 ··· 69
〈표 Ⅱ-9-5〉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 ····· 69
〈표 Ⅱ-9-6〉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2010-2011 ····· 70
〈표 Ⅱ-10-1〉 주요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지표 ····· 72
〈표 Ⅲ-1-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1 ····· 74
〈표 Ⅲ-1-2〉 2011 시·도 부모모니터링 사업 현황 ····· 77
〈표 Ⅲ-1-3〉 보육모니터링 지표 비교: 2010 ····· 80
〈표 Ⅲ-1-4〉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2011 ····· 86
〈표 Ⅲ-1-5〉 가정보육교사 지원: 취업모 8시간 이용 기준 ····· 86
〈표 Ⅲ-1-6〉 가정보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내용 및 운영방법 ····· 87
〈표 Ⅲ-1-7〉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 87
〈표 Ⅲ-2-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 평균 ··· 88
〈표 Ⅲ-2-2〉 서울특별시 서초구 특수보육시책: 2011 ····· 89
〈표 Ⅲ-2-3〉 경상남도 진주시 특수보육시책: 2011 ····· 89
〈표 Ⅳ-1-1〉 연도별 민간개인·가정 어린이집 영아 보육비용 지원 ····· 92
〈표 Ⅳ-1-2〉 반편성별 지원기준단가 ····· 94
〈표 Ⅳ-1-3〉 기본보육료 미수령 어린이집과 아동 규모 ····· 95
〈표 Ⅳ-1-4〉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 ····· 95
〈표 Ⅳ-1-5〉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 96
〈표 Ⅳ-1-6〉 영아 기본보육료부모 보조금화 방안 동의 여부 ····· 96
〈표 Ⅳ-1-7〉 영아 기본보육료를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 97
〈표 Ⅳ-1-8〉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한 영아 기본보육료 책정이 적절하다는 비율 ·· 98
〈표 Ⅳ-1-9〉 어머니의 취업과 연계하여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동의 여부 ····· 98

〈표 Ⅳ-1-10〉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에 대한 의견 ····· 101
〈표 Ⅳ-1-11〉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 추가 방안에 대한 의견 ····· 101
〈표 Ⅳ-1-12〉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 미준수 시 기본보육료 환수 방식 적절성 ····· 103
〈표 Ⅳ-1-13〉 영아 기본보육료 환수 시 환수금액에 이자 부여 방안 동의 여부 ·· 103
〈표 Ⅳ-1-14〉 영아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 ····· 104
〈표 Ⅳ-1-15〉 응답자 이용 어린이집 유형과 평가인증 여부 ····· 105
〈표 Ⅳ-1-16〉 어린이집 반구분 ····· 105
〈표 Ⅳ-1-17〉 영아 기본보육료 인지 여부 ····· 106
〈표 Ⅳ-1-18〉 영아 기본보육료 수령여부별 지원에 대한 인지 ····· 106
〈표 Ⅳ-1-19〉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받지 않는 이유 ····· 106
〈표 Ⅳ-1-20〉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액수 인지 ····· 107
〈표 Ⅳ-1-21〉 보육료 결제 방법 ····· 107
〈표 Ⅳ-1-22〉 보육료 결제 영수증의 기본보육료 정보 인식 ····· 108
〈표 Ⅳ-1-23〉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후 주 양육자 ····· 108
〈표 Ⅳ-1-24〉 보육료 감면 여부: 부모 응답 ····· 109
〈표 Ⅳ-1-25〉 보육료 지원 자격: 실제 ····· 109
〈표 Ⅳ-1-26〉 평일(월~금) 어린이집 이용 실태 ····· 110
〈표 Ⅳ-1-27〉 주말 어린이집 이용 실태 ····· 110
〈표 Ⅳ-1-28〉 보육비용 대비 보육서비스 수준 점수 ····· 111
〈표 Ⅳ-1-29〉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효과: 보육관계자 응답 ····· 112
〈표 Ⅳ-1-30〉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 부모 응답 ····· 112
〈표 Ⅳ-1-31〉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 어린이집 선택 ····· 113
〈표 Ⅳ-1-32〉 모의 취업상태 ····· 113
〈표 Ⅳ-1-33〉 특별활동 및 기타 비용 수납액 ····· 114
〈표 Ⅳ-1-34〉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 ··· 116
〈표 Ⅳ-1-35〉 양육수당 급여액 증가 시 어린이집 이용 의사 ····· 116
〈표 Ⅳ-1-36〉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할 경우 직장 중단과 자녀 돌봄 의향 ·· 116
〈표 Ⅳ-2-1〉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 신청자격 기준 적절성 ····· 121
〈표 Ⅳ-2-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 121
〈표 Ⅳ-2-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평균 점수 ····· 122

〈표 Ⅳ-2-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및 배점 ····· 123
〈표 Ⅳ-2-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항목별 점수 배점 적절성 ····· 125
〈표 Ⅳ-2-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 평균점수 ···· 126
〈표 Ⅳ-2-7〉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점수 배정 변경 필요성 ··· 127
〈표 Ⅳ-2-8〉 평가인증 점수 하한선을 두는 방안 찬성 비율 ····· 127
〈표 Ⅳ-2-9〉 보육서비스 질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 128
〈표 Ⅳ-2-10〉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 배점의 적절성 평균 ·· 128
〈표 Ⅳ-2-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항목에 대한 가점 적절성 ·· 129
〈표 Ⅳ-2-1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세부 항목에 대한 가점 적절성 평균 점수 ·· 129
〈표 Ⅳ-2-1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80점) 적절성 ····· 130
〈표 Ⅳ-2-1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 130
〈표 Ⅳ-2-1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동점 선정 순서의 적절성 ····· 131
〈표 Ⅳ-2-16〉 민간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의 적정한 비율 ····· 131
〈표 Ⅳ-2-17〉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 132
〈표 Ⅳ-2-18〉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현재 기준의 적절성 ····· 132
〈표 Ⅳ-2-19〉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 ····· 133
〈표 Ⅳ-2-20〉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 적절성: 구간별 정원 ···· 133
〈표 Ⅳ-2-21〉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 적절성: 구간별 지원액 ··· 134
〈표 Ⅳ-2-22〉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 ···· 134
〈표 Ⅳ-2-23〉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사항 ····· 136
〈표 Ⅳ-2-24〉 공공보육 어린이집 추가 기준에의 동의 비율 ····· 137
〈표 Ⅳ-2-25〉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체계 우선순위 ····· 137
〈표 Ⅳ-2-26〉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 138
〈표 Ⅳ-2-27〉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관리체계 필요성 평균점수 ····· 138

그림 차례

〔그림 Ⅱ-1-1〕 유형별 보육 아동 증가 추세: 2005-2010 ····· 17
〔그림 Ⅱ-1-2〕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 22
〔그림 Ⅱ-1-3〕 시·군·구 국공립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 22
〔그림 Ⅱ-2-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순비용과 추가비용 비교: 2004, 2009 ···· 42
〔그림 Ⅳ-1-1〕 기본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 99

부표 차례

〈부표 Ⅱ-1-1〉 2010년 시·군·구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 161
〈부표 Ⅳ-1-1〉 부모 직업 특성-정규직, 비정규직 ····· 169
〈부표 Ⅳ-1-2〉 자녀의 보육교사가 동시에 돌보는 아이 수 인지여부 ····· 169
〈부표 Ⅳ-1-3〉 보육비용 대비 보육서비스와 환경 수준의 적절성 ····· 170
〈부표 Ⅳ-1-4〉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어린이집 이용 ····· 171
〈부표 Ⅳ-1-5〉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어머니 취업활동 ····· 171
〈부표 Ⅳ-1-6〉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추가 출산 ····· 171
〈부표 Ⅳ-2-1〉 선정기준으로의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 172
〈부표 Ⅳ-2-2〉 배점 변경 필요성-평가인증 점수 ····· 172
〈부표 Ⅳ-2-3〉 배점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 172
〈부표 Ⅳ-2-4〉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평가인증 점수 ····· 173
〈부표 Ⅳ-2-5〉 배점의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 173
〈부표 Ⅳ-2-6〉 가점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 173
〈부표 Ⅳ-2-7〉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놀이터 구비 ····· 174

〈부표 Ⅳ-2-8〉 배점 변경 필요성-놀이터 구비 ····· 174
〈부표 Ⅳ-2-9〉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놀이터 구비 ·· 174
〈부표 Ⅳ-2-1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놀이터 구비 ····· 175
〈부표 Ⅳ-2-11〉 배점의 적절성-놀이터 구비 ····· 175
〈부표 Ⅳ-2-12〉 가점 적절성-놀이터 구비 ····· 175
〈부표 Ⅳ-2-13〉 선정기준으로의 적절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175
〈부표 Ⅳ-2-14〉 배점 변경의 필요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176
〈부표 Ⅳ-2-15〉 배점 적절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176
〈부표 Ⅳ-2-16〉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176
〈부표 Ⅳ-2-17〉 배점의 적절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176
〈부표 Ⅳ-2-18〉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 177
〈부표 Ⅳ-2-19〉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건물 소유형태 ····· 177
〈부표 Ⅳ-2-2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177
〈부표 Ⅳ-2-2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건물 소유형태 ····· 178
〈부표 Ⅳ-2-22〉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건물 소유형태 ····· 178
〈부표 Ⅳ-2-23〉 선정기준 감점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 178
〈부표 Ⅳ-2-2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1급 보육교사 비율 ··· 179
〈부표 Ⅳ-2-25〉 배점 변경 필요성-1급 보육교사 비율 ····· 179
〈부표 Ⅳ-2-26〉 배점 적절성: 1급 보육교사 비율 ····· 179
〈부표 Ⅳ-2-27〉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 180
〈부표 Ⅳ-2-28〉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1급 보육교사 비율 ····· 180
〈부표 Ⅳ-2-29〉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180
〈부표 Ⅳ-2-30〉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181
〈부표 Ⅳ-2-3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181
〈부표 Ⅳ-2-32〉 생각하는 점수-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181

〈부표 Ⅳ-2-33〉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 182
〈부표 Ⅳ-2-3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 182
〈부표 Ⅳ-2-35〉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 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 182
〈부표 Ⅳ-2-36〉 배점 적절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 183
〈부표 Ⅳ-2-37〉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 183
〈부표 Ⅳ-2-38〉 배점의 적절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 183
〈부표 Ⅳ-2-39〉 선정기준의 적절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 184
〈부표 Ⅳ-2-40〉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 184
〈부표 Ⅳ-2-4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 184
〈부표 Ⅳ-2-4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 185
〈부표 Ⅳ-2-43〉 배점의 적절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 185
〈부표 Ⅳ-2-4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 185
〈부표 Ⅳ-2-45〉 배점 변경의 필요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 185
〈부표 Ⅳ-2-4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 186
〈부표 Ⅳ-2-47〉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 186
〈부표 Ⅳ-2-48〉 배점의 적절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 18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 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부는 그 동안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보육비용 지원 이외에 기관 미이용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7월부터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 가정 영유아로 확대되고, 이어서 2011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0세와 1세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연령도 영아 전체로 확대되었고 금액도 연령별로 20~10만원으로 차등화되었다. 한편으로는 농어촌 지역 우선으로 보육교사 수당 제도도 도입되었다. 아울러 보육 비용 지원의 전달체계로 전자카드형태의 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2004년 4천억원 규모의 보육예산이 2011년 현재 2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앙정부 이외에 각 지방정부에서도 특수보육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보육지원정책들이 추진되며,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시 또는 아동이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주로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1)]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평가인증제도도 어느 정

---

1)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 재정 지원도 확대되었음. 유치원 교육비 지원 이외에 종일제 교사 및 종일반 부모 비용 지원과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 교사수당도 41만원으로 확대되었음. 유아교육 재정도 2011년 1조 9천억원 정도로 추정됨. 유아교육 비용도 전자카드형태의 이용권 제도를 추진하였음.

도 정착되고 있으며, 부모 참여를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어린이집의 열린 운영에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내 파견보육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부모 비용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며,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한다.

본 연구는 2010년[2]에 이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2010년에 제시한 주요 지표를 산출하여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여 앞으로의 보육정책 방안 및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2011년 주요 정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 정책인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고자 한다.[3]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보육정책을 검토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기본 통계를 생산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과제로, 유아교육정책 부분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어린이집 공급 및 설치 관련 정책, 보육료 지원정책, 교사 인건비 등 교사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 및 평가 등 질 관리 정책 등 9개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한다.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군·구 보육 공급 및 이용률을 산출하여 지역간 보육 공급과 이용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2006년부터 실시한 영

---

2) 서문희·최혜선(2010). 2010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참조
3) 2010년, 2011년 유아교육의 성과와 과제는 별도로 추진

아 기본보육료 지원과 2011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보육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부모 의견조사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기본보육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2011년 7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로 기본보육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영아 부모 2,000명과, 2011년 5~7월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수령이 누락된 적이 있는 영아 부모 634명 명단을 지원 받아서 어린이집 이용 및 기본보육료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화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조사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일반특성	- 부모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 가족 유형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 및 성별, 출생순위 - 낮 동안 돌보아 주는 사람 - 이용 어린이집 유형 - 어린이집 이용 시간 - 서비스 수준 평가
기본보육료 관련	- 기본보육료 및 어린이집 관련 정보 및 인식 - 기본보육료의 효과 - 양육수당과의 대체 효과

조사결과 기본보육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영아 1,081명과 2011년 5~7월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수령이 누락된 적이 있는 영아 부모 437명을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가 약 53%, 여아가 약 48%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 49%, 둘째 40%이었다. 아동이 속해있는 어린이집 반의 연령은 2세반이 약 40%, 1세반이 약 25%, 0세반이 약 12%로 단일연령반인 경우가 약 77%이었다.

응답자 가족의 유형은 핵가족이 약 85%로 대부분이었고 확대가족은 약 13% 있었다.

〈표 Ⅰ-3-2〉 성별과 연령별 조사대상 아동 수

단위: 명

연령	성별		연령			계
	남자	여자	0세	1세	2세 이상	
지급	575	506	147	352	582	1,081
미지급	221	216	53	127	257	437
전체	796	722	200	479	739	1,518

〈표 Ⅰ-3-3〉 조사대상 아동 가족유형 및 출생순위

단위: %(명)

구 분	출생순위				가족유형				계(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확대 가족	핵가족	한부모가족	기타	
지급	49.8	39.5	9.9	0.7	12.3	85.9	1.3	0.5	100.0(1,081)
미지급	46.5	40.3	11.4	1.8	15.6	83.1	0.7	0.7	100.0(437)
전체	48.8	39.7	10.3	1.1	13.2	85.0	1.1	0.5	100.0(1,518)

설문조사에 응답한 부모의 학력은 다음의 <표 Ⅰ-3-4>와 같이 기본보육료 지급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경우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각각 약 46%, 약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각각 약 30%, 약 35%로 많았다.

〈표 Ⅰ-3-4〉 조사 대상 아동 부모 학력

단위: %(명)

구 분	고졸 이하	전문대 졸 (2·3년제)	4년제 대학 이상	대학원 이상	비해당	계(수)
부						
지급	30.2	13.2	47.0	8.1	1.5	100.0(1,077)
미지급	31.0	13.3	45.0	10.1	0.7	100.0(435)
전체	30.4	13.2	46.4	8.7	1.3	100.0(1,512)
모						
지급	34.1	20.1	41.1	4.5	0.2	100.0(1,081)
미지급	36.3	20.7	35.6	6.9	0.5	100.0(437)
전체	34.7	20.3	39.5	5.2	0.3	100.0(1,518)

다.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기본보육료와 공공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가,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본보육료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배점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부록 5 참조).

의견조사 결과 보육 담당 공무원 112명, 보육정보센터 소장 54명, 전문요원 64명, 그리고 학계 전문가 52명 등 총 282명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표 Ⅰ-3-5〉 보육관계자 의견 조사 대상 수

단위: 명

구분	공무원	보육정보센터 소장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학계 전문가	계
수	112	54	64	52	282

라. 간담회 및 자문회의

보육·교육기관 원장, 교사, 부모,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범주와 방법,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해당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관련 선행연구

보육 정책의 성과나 모니터링 관련 연구는 2000년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보육확충 3개년 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어린이집 설치 비용 융자사업, 보육료 지원, 영아 및 유아 기본보조금, 평가인증, 공인 어린이집제도 등에 대한 평가사업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확충 3개년 사업 관련

최초의 정부 성과 평가 사업은 보육확충 3개년 사업 완료 후에 실시한 성과평가이다. 보육확충 3개년 사업은 1995년부터 1997년간 국고지원, 국민연금기금 융자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 공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결과, 어린이집 공급은 민간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등 보육의 다양성 부족, 농어촌 지역적 불균형 등이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보육서비스 행정체계의 불변, 표준보육단가의 부적절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변용찬·서문희·이상헌 외, 1998).

이와 연계하여 서문희와 이상헌(1999)은 보육확충 3개년 사업 중 민간개인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금 융자 사업을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융자사업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사업으로 보육 공급의 양적 확충이나 보육환경 개선 및 국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러나 세밀한 융자 지침 제시 미흡, 융자자 선정과정에서의 설치 예정지역의 보육수요나 융자자의 원금 상환능력을 고려한 엄밀한 심사 부족, 상환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 융자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보육 공급 구조를 개인 공급자 우위 구조로 만드는데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이면서도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수익사업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나. 보육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변용찬 등(2001)은 부모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전달체계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적절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6개의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의 규

모, 대상선정 기준, 지원 수준, 지원 방식 등은 적절성이 낮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문희와 이상헌(2001)은 시설별 보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전체 사업 및 구체적인 세부사업별로 적절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개발, 평가하여,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적절성 및 형평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보육 및 양육 비용 지원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꼬, 2009)에서 232개 지방정부 특수시책과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출산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이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다자녀 가구 양육수당이나 출산 수당이 해당 출생순위 아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DI(조병구·조윤형, 2007)는 2006년에 도입된 영아 기본보조금[4]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영아 기본보조금이 일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다는 사실과 도입 전후의 자료가 있음을 이용하여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아 기본보조금은 어린이집들 중 규모가 작고 영아보육에 특화해왔던 가정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켜 프로그램도 늘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준수하며, 교사에 대한 처우도 향상시키는 등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보조금을 바라고 시장에 진입하는 어린이집의 다수가 가정어린이집이라는 점이 시사하듯이 영아보육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아기본보조금은 아동모의 노동시장 참여나 어린이집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소득 1~2 분위 가구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나, 전체 보육비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 3~5분위의 보육비 지출을 현저하게 늘렸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이 어린이집 운영 개선과 교사 급여 상승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모 만족도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된다는 증거는 희박하였다고 보고하였다(서문희·김은영·최혜선, 2007).

---

4) 이후 기본보육료로 명칭이 변경됨.

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제1차 평가인증 시행에 대하여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서문희·김온기·김명순 외, 2009). 평가자료로는 주로 원장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수단으로서의 유용함을 규명하였다.

라. 서울·부산 공인 어린이집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최혜선, 2010)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비하여 부산 공인어린이집의 선정 조건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 서울형 등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로는 김재완(2009)이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평가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로 서울형 어린이집 기준·평가 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질적 향상 및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의 체계성과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정부 평가인증과의 중복성, 공인 제도 주요 운영체계 등 기타 개선점이 요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갈현숙과 김송이(2010)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인 과정,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노동조건 등은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으나 여러 가지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임에서 오는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공인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보육정책을 검토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본 통계를 생산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과제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보육정책을 9개 주제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기본통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한계가 있다. 검토한 9개의 보

육정책은 각각이 하나의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정책제언도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심층 검토 주제 중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과제로,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실제 지원은 늦어져서 11월 말 현재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유아교육정책 부분은 별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영유아 정책임에도 보육과 유아교육을 동시에 다루지는 못하였다.

Ⅱ. 보육정책의 현황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보육사업 현황을 2010년 보육 자료와 2011년 정책 및 예산 변화 중심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정책 개선방안 모색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육 관련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보육재정 및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시설보육 분야에서 보육료 지원, 보육재정,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시간연장형 보육사업, 평가인증제도와 보육인력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기관 미이용 자녀 양육수당을 포함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민 자녀 보육비용 지원, 여성가족부의 가정내 보육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검토하였다.

1. 어린이집의 설치와 이용

먼저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을 전국 시·도 단위로 분석하고자 하며[5], 이어서 어린이집 이용아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급 관련 제도

제도상 어린이집 종류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공립어린이집은 시·군·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공립어린이집 건축은 시·군·구 소관업무인데, 국비지원은 건축비, 기자재구입비에 한한다. 건축비 부담비율은 중앙, 시·도, 시·군·구가 50:25:25이다.[6] 건축비 지원 어린이집 규모는 개소당 330㎡기준이며 최대 396㎡까지 지원 가능하다.

---

5) 시・군・구 단위 분석은 부록 1에 제시함.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함.

지원단가는 ㎡당 1,201,300원이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의무 대상을 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돕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7] 또한 무상 지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지원한다.[8]

개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제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어린이집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설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1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9]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7) 융자금은 최고 7억원이며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 대출금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2.0%이다.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8) 시설전환비는 최고 2억원(사업주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유구비품비는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임. 소요비용의 80~60%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 장애아 시설은 80%를 지원함.

9)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양방향 비상계단 설치·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자동화재탐지기 설치・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임.

나.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005년 이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2011년은 약 270억 정도로 목표량은 16개소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표 Ⅱ-1-1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존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2008년 1월에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수준은 저조하다.

〈표 Ⅱ-1-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공립 신축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10,948	1,982	2,706
	개소수	400	110	112	50	46	10	16
리모델링	예산	-	-	4,925	950	1,050	475	615
	개소수	-	-			45	19	25
장애아 전담 신축	예산	3,445	2,599	2,166	714	476	238	475
	개소수	30	12	10	3	2	1	2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예산 내부자료.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10]은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용된다. 2009년 3월 e-보육통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아동은 1,831개 어린이집에 118,478명으로 어린이집당 평균 6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허수이기는 함.

〈표 II-1-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현황('10.8.31.)

단위 : 개

구분	계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09								
시설설치	9	1	1	1	1*	2	3	1
장난감버스	1	-	-		1			
2010								
시설설치	5	-	-	1		2	2	
장난감버스	5	-	-		2	1	2	

주: *는 공동육아방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보육예산 설명자료.

정부가 영유아 수가 소수인 산간, 도서, 농어촌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장난감, 교재교구를 실은 차량이 해당 지역에 찾아가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 총 사업수를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나름의 소외지역 아동의 보육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47개 동 453개 읍·면으로 총 500개소이었으나, 2010년 말에는 미설치 지역이 28개 동 443개 읍·면으로 총 471개 지역으로 29개 읍·면·동이 감소하였다.

〈표 II-1-3〉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현황: 2010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	28	2	5	-	1	3	2	1	6	-	-	-	2	2	2	1	1
읍면	443	-	-	1	9	-	-	4	12	25	32	41	65	79	94	81	-
계	471	2	5	1	10	3	2	5	18	25	32	41	67	81	96	82	1
2009	500	4	9	3	23	4	2	8	26	42	70	90	132	162	205	172	1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09 e-보육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2) 직장 어린이집 설치

2011년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824개소이다. 이 중에서 68.1%인 56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는 37.4%인 308개 사업장이고 그 이외는 보육수당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는 형태로 대신하고 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97.3%가 의무 이행중이며, 학교는

76.7%, 기업은 57.5%가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는 국가기관이 82.0%로 가장 높고, 자자체가 55.8%이며, 학교와 기업은 30% 수준이다.

〈표 II-1-4〉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의무이행률

단위: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전체	824	561	308	206	47	263
(비율)	(100.0)	(68.1)	(37.4)	(25.0)	(5.7)	(31.9)
국가기관	55	50	41	-	9	5
(비율)	(100.0)	(90.9)	(82.0)	-	(18.0)	(9.1)
지자체	129	129	72	56	1	-
(비율)	(100.0)	(100.0)	(55.8)	(43.4)	(0.8)	-
학교	73	56	22	30	4	17
(비율)	(100.0)	(76.7)	(30.1)	(41.1)	(5.5)	(23.3)
(공사)기업	567	326	173	120	33	241
(비율)	(100.0)	(57.5)	(30.5)	(21.2)	(5.8)	(42.5)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표 II-1-5〉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의무 이행률	시설 설치율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서 울	232	187	116	61	10	45	80.6	50.0
부 산	54	35	16	11	8	19	64.8	29.6
대 구	29	18	6	8	4	11	62.1	20.7
인 천	34	26	13	12	1	8	76.5	38.2
광 주	26	18	7	9	2	8	69.2	26.9
대 전	41	35	27	3	5	6	86.4	65.9
울 산	26	17	8	7	2	9	65.4	30.8
경 기	139	92	60	22	10	47	66.2	43.2
강 원	19	14	2	10	2	5	73.7	10.5
충 북	27	16	8	8	0	11	59.3	29.6
충 남	38	20	8	10	2	18	52.6	21.1
전 북	28	20	4	16	0	8	71.4	14.3
전 남	22	12	7	5	0	10	54.5	31.8
경 북	48	24	11	12	1	24	50.0	22.9
경 남	56	23	11	12	0	33	41.1	19.6
제 주	5	4	4	0	0	1	80.0	80.0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지역별로는 의무이행률은 대전, 서울, 제주가 80% 이상으로 높고, 충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이 낮은 편인데,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제주도가 5개 사업장 중 4개소 설치로 가장 높고 대전이 66%, 서울이 50%, 경기가 43% 수준이며 이외 지역은 비교적 낮다.

미이행 사업장은 31.9%인 263개소인데, 미이행 사유는 예산부족(57개소, 21.7%), 보육수요 부족(112개소, 42.6%), 장소 미확보(45개소, 17.1%) 순이다. 보육수요 부족이라는 사업장은 수당으로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6〉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구 분	이행추진중 (설치중 등)	예산부족 (비용부담)	장소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0.4	21.7	17.1	42.6	18.3	100.0(263)
국가기관	0.0	20.0	0.0	0.0	80.0	100.0(5)
학교	5.9	11.8	17.6	52.9	11.8	100.0(17)
기업	-	22.4	17.4	42.8	17.4	100.0(241)

주: 기타/무응답은 검토 중, 노사협의 중, 필요성 부재, 무응답 등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3)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규모 증가 추세

2010년 12월 현재 38,02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28만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 중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2.0%이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09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어린이집의 수는 전체 어린이집의 9.2%로 소수이고,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2010년 12월 현재 민간개인어린이집이 13,789개소로 37.8%이고 가정어린이집이 19,369개소로 50.0%이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은 2009년 13,433개소에서 350여개 증가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은 2009년 17,359개소에서 2,000여개 정도가 증가하였다(표 Ⅱ-1-7 참조).

보육 아동은 2009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3만 8천여명 정도로 전체 보육 아동의 10.8%이고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17만명으로 13.9%인데 비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

어린이집 67만 2천여명과 가정어린이집 28만1400여명으로 모두 95만3천명 수준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74.5%이다(표 Ⅱ-1-8 참조).

〈표 Ⅱ-1-7〉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1995-2010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비율)	(100.0)	(5.3)	(3.9)	(2.3)	(36.3)	(50.9)	(1.1)	(0.2)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Ⅱ-1-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1995-2010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29
(비율)	(100.0)	(10.8)	(8.9)	(4.0)	(52.5)	(22.0)	(1.7)	(0.1)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그림 Ⅱ-1-1>로 보면 2005년 기본보조금이 도입된 이후 가정어린이집 아동의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보육 이용 아동 현원은 정원 대비 82.2%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89.5%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77% 수준으로 가장 낮다(표 Ⅱ-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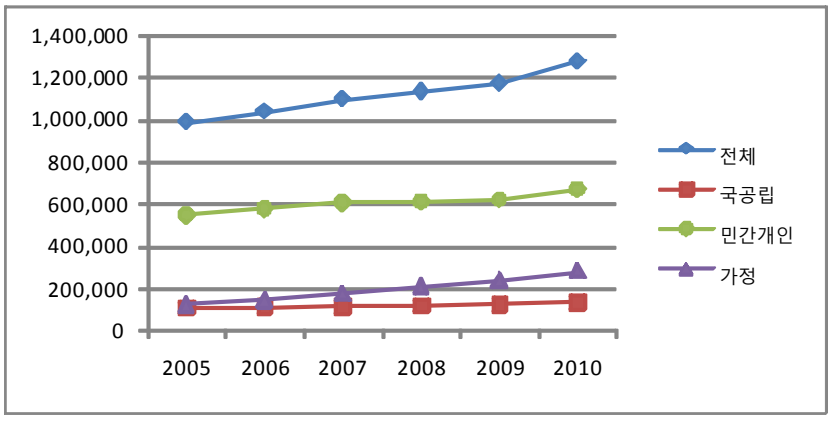

[그림 II-1-1] 유형별 보육 아동 증가 추세: 2005-2010

〈표 II-1-9〉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0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1,556,808	153,792	143,841	62,698	828,035	2,226	337,900	28,316
현원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비율)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표 II-1-10〉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전체	8,344	24,567	537,822	8,373	24,908	537,361	8,388	25,670	538,587
공립	4,480	6,789	119,128	4,490	6,873	125,305	4,498	7,115	126,341
사립	3,861	17,778	418,694	3,880	18,021	411,825	3,887	18,541	412,0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유치원현황.

한편, 유치원은 2010년 4월 통계로 전국 8,388개원이 설치되어 53만 8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지만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전체 원아의 76.5%에 해당된다(표 II-1-10 참조). 공립 유치원의 상당수는 농어촌 면지역에 초등학교 병설로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35만

8천명 중 50.5%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이는 2009년 41.6%에서 증가한 것이다. 유아는 전체 유아 137만 7천여명 중 어린이집 41.6%, 유치원 39.1%로 총 80.7%의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3만5천명 중 61.7%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기관 이용률은 2, 3세 70%, 4세 80%, 5세 90%이다(표 Ⅱ-1-11 참조).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영유아가 막내 자녀인 모의 취업률은 35.8%이고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61.6%로, 모취업률보다 기관 이용률이 더 높다. 특히 영아는 모의 취업률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특히 0세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은 모취업과 상관없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일제 어린이집이 일하는 부모의 자녀 보육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지만, 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도 어린 연령부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아는 81%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을 보이는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아는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 단지 만5세 유아의 4.4%만이 아무 곳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서문희·김은설·최진 외, 2009).

〈표 Ⅱ-1-1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0

단위: 명, %

구분	인구수[1)]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2)] (2009)
0세	448,516	125,133	-	-	27.9	-	24.7
1세	443,963	229,486	-	-	51.7	-	29.2
2세	465,564	331,637	-	-	71.2	-	39.2
0~2세 소계	1,358,043	686,256	-	-	50.5	-	29.9
3세	493,452	243,264	111,482	354,746	49.3	71.9	44.4
4세	448,200	180,542	181,441	361,983	40.3	80.8	44.8
5세	435,281	149,278	244,654	393,932	34.3	90.5	46.0
3~5세 소계	1,376,933	573,084	537,557	1,110,641	41.6	80.7	44.9
0~5세 전체	2,734,976	1,148,674	537,557	1,686,231	42.0	61.7	35.8

주: 1) 인구수는 2010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3) 어린이집 자료는 2010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0년 4월 통계로 6세 이상아는 제외하였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치원현황.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4)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의 지역 차이

가)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지역규모별 차이를 나타낸다. 어린이집 정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38%, 37%, 25%의 순이고, 이용률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분포한다. 이동 인구 대비 농어촌에 정원 및 현원 분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 정원 분포를 보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대도시에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에는 가정어린이집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농어촌에는 법인어린이집이 50%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용아동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

〈표 II-1-12〉 시설유형별 정원과 현원 지역 분포: 2010

단위: %,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정원								
대도시	37.9	52.1	27.9	32.8	38.4	48.5	33.9	52.5
중소도시	36.8	26.8	19.3	26.1	37.2	39.4	50.1	33.6
농어촌	25.3	21.1	52.8	41.1	24.4	12.1	16.0	13.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56,808)	(153,792)	(143,841)	(62,698)	(828,035)	(2,226)	(337,900)	(28,316)
현원								
대도시	39.0	52.5	28.9	33.8	39.7	48.4	34.7	54.4
중소도시	36.9	27.5	20.0	27.4	37.3	40.4	49.5	33.1
농어촌	24.1	19.9	51.2	38.8	23.0	11.2	15.9	1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1,898)	(281,436)	(21,901)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표 II-1-13〉 지역규모별 시설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대도시	84.7	90.2	82.1	84.0	83.8	85.1	85.2	80.1
중소도시	82.4	91.8	82.0	85.6	81.3	87.5	82.2	76.3
농어촌	78.2	84.8	76.8	77.0	76.7	78.9	82.8	69.4
전체	82.2	89.5	79.3	81.5	81.1	85.3	83.3	77.3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표 Ⅱ-1-12>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지역규모별 분포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높다. 특히 농어촌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 비율은 현원율이 70% 미만이다.

나) 시·도별

다음은 시·도 단위 보육공급과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Ⅱ-1-14>는 2010년 시·도 단위의 어린이집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비율로 시·도 단위 보육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 Ⅱ-1-14〉 시·도 단위 어린이집 정원 비율 평균: 2010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전체	2,734,976	1,556,808	1,279,910	56.9	46.8	82.2
서울	502,633	236,339	206,581	47.0	41.1	87.4
부산	153,080	79,526	65,822	52.0	43.0	82.8
대구	123,208	76,276	61,765	61.9	50.1	81.0
인천	152,329	75,533	65,075	49.6	42.7	86.2
광주	85,822	60,833	48,879	70.9	57.0	80.3
대전	87,180	50,719	42,105	58.2	48.3	83.0
울산	66,090	33,091	27,350	50.1	41.4	82.7
경기	734,996	387,247	320,056	52.7	43.5	82.6
강원	75,851	51,927	41,292	68.5	54.4	79.5
충북	85,391	58,275	45,983	68.2	53.8	78.9
충남	119,513	71,851	58,305	60.1	48.8	81.1
전북	96,178	72,750	56,531	75.6	58.8	77.7
전남	95,123	66,067	52,903	69.5	55.6	80.1
경북	134,446	88,960	69,395	66.2	51.6	78.0
경남	188,640	118,204	93,059	62.7	49.3	78.7
제주	34,496	29,210	24,809	84.7	71.9	84.9
2009	2,736,539	1,482,416	1,175,049	54.2	42.9	79.3

주: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2009).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전국적으로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56.9%로 2009년 54.2%에서 2.7%p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이용률은 46.8%로 2009년 42.9%에서 3.0%p 증가하였다. 정원충족률은 82.2%로 이 역시 2009년 79.3%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보육공급률은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7.0%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84.7%로 가장 높다. 아동 대비 보육이용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가 45% 미만으로 낮고 제주도가 71.9%로 가장 높다.[11)]

보육정원 대비 현원인 보육충족률은 지역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전북이 77.7%로 가장 낮고 공급률이 가장 낮은 서울이 87.4%로 가장 높다.

다) 시·군·구별

시·도별 시·군·구 보육 공급률과 이용률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급률 평균은 62.7%이다. 최대는 98.5%, 최소 31.6%이다 전체 시·군·구 평균은 2010년 58.5%에서 다소 증가한 것이다.

〈표 II-1-15〉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단위: %

구분	보육 공급률			보육 이용률			국공립 공급률			국공립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62.7	31.6	98.5	50.5	11.6	78.1	7.0	0.0	59.1	5.8	0.0	36.6
서울	49.4	31.6	74.5	42.9	27.9	63.0	12.4	5.1	33.2	11.3	4.9	27.7
부산	55.4	39.2	74.0	45.2	34.6	59.4	9.7	2.8	25.2	8.4	2.4	20.2
대구	64.9	54.1	98.3	52.5	44.6	78.1	2.5	0.8	5.6	2.1	0.6	4.8
인천	48.1	37.6	55.1	41.3	31.4	47.9	8.3	2.3	20.5	7.0	2.2	18.7
광주	70.6	61.9	80.5	55.8	50.6	62.7	3.5	2.0	5.8	2.8	1.4	4.4
대전	58.9	53.6	64.2	49.0	43.1	54.1	2.2	0.2	4.9	2.0	0.2	4.4
울산	50.0	47.3	56.1	41.5	39.8	45.7	3.1	1.4	4.1	3.0	1.3	3.8
경기	57.9	37.8	83.2	47.2	34.8	64.9	6.1	1.4	16.0	5.6	1.3	14.4
강원	64.6	44.2	84.2	51.9	39.1	65.6	11.6	2.6	41.7	10.0	2.1	36.6
충북	68.3	55.5	91.3	54.2	41.2	67.3	7.9	0.9	22.9	7.0	0.7	20.6
충남	65.3	48.9	97.7	52.3	41.6	67.9	4.8	0.0	10.9	3.9	0.0	7.8
전북	68.9	38.7	98.5	54.2	31.7	77.3	5.7	0.0	14.4	4.8	0.0	12.7
전남	67.7	42.7	95.0	52.0	33.3	76.5	4.9	0.0	15.7	3.8	0.0	12.4
경북	62.1	34.0	79.5	48.8	31.0	61.2	11.2	0.0	31.0	9.2	0.0	24.2
경남	62.8	36.5	82.7	46.3	11.6	63.4	12.0	1.3	59.1	7.1	1.1	22.9
제주	88.7	80.9	96.4	73.8	70.2	77.4	5.6	2.6	8.6	5.2	2.5	7.9
2009	58.5	24.6	96.8	45.6	22.0	75.8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11) 보육 공급과 이용율 산출시 영유아 인구수는 0~5세인 반면에 보육아동은 만6세 이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간 과대 추정되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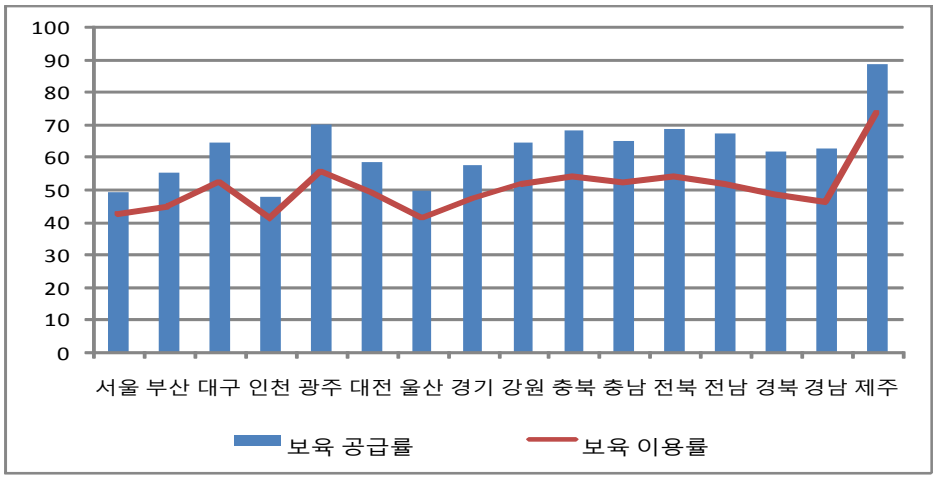

〔그림 Ⅱ-1-2〕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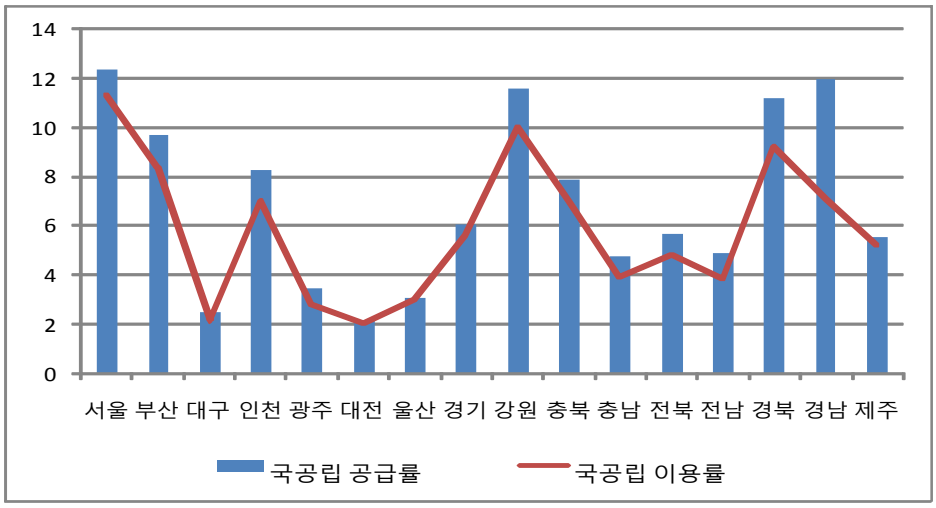

〔그림 Ⅱ-1-3〕 시·군·구 국공립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시·도별로 시·군·구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88.7%이다.

국공립은 어린이집 공급률 시·군·구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아동수 대비 12.4%이며 이용률도 서울이 11% 수준으로 가장 높다.

다. 보육 아동 특성

1) 연령분포

<표 Ⅱ-1-16>은 어린이집 단위 시·도 및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만2세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3세, 1세, 4세 순이다.

〈표 Ⅱ-1-16〉 보육아동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 (아동수)
전체	9.8	17.9	25.9	19.0	14.1	11.7	1.6	100.0 (1,279,910)
시·도								
서울	8.4	17.2	25.0	19.0	14.5	12.5	3.4	100.0 (206,581)
부산	8.0	18.0	28.8	19.5	12.5	10.8	2.4	100.0 (65,822)
대구	8.0	17.4	27.5	21.7	13.9	9.4	2.1	100.0 (61,765)
인천	9.2	18.3	27.4	19.2	14.0	11.1	0.8	100.0 (65,075)
광주	11.3	17.3	23.3	18.0	14.6	14.2	1.3	100.0 (48,879)
대전	11.4	20.9	27.9	18.6	11.5	9.0	0.6	100.0 (42,105)
울산	8.0	19.0	31.8	21.2	11.7	7.5	0.8	100.0 (27,350)
경기	11.9	18.6	26.0	18.4	13.5	11.0	0.7	100.0 (320,056)
강원	6.8	15.9	24.4	20.0	17.7	14.3	1.0	100.0 (41,292)
충북	7.2	16.3	24.4	19.8	16.5	14.8	1.0	100.0 (45,983)
충남	7.9	16.7	24.9	20.2	16.3	13.2	0.8	100.0 (58,305)
전북	10.5	17.2	23.0	16.2	15.1	14.4	3.5	100.0 (56,531)
전남	8.5	16.2	23.2	18.7	16.5	15.5	1.4	100.0 (52,903)
경북	10.0	17.9	26.6	19.6	13.6	10.5	1.8	100.0 (69,395)
경남	11.1	19.5	28.1	18.4	11.9	9.6	1.5	100.0 (93,059)
제주	10.7	19.1	22.4	20.2	16.9	9.9	0.8	100.0 (24,809)
시설유형								
국공립	2.0	11.1	21.1	22.9	21.9	18.8	2.2	100.0 (137,604)
법인	2.8	11.4	23.0	22.9	19.7	17.1	3.1	100.0 (114,054)
법인외	2.1	10.0	20.7	23.0	20.4	17.5	6.3	100.0 (51,126)
민간개인	4.6	13.5	26.6	23.7	16.6	13.5	1.5	100.0 (671,891)
직장	3.0	15.5	24.3	24.8	18.9	12.9	0.7	100.0 (21,901)
가정	30.6	36.1	28.9	3.2	0.6	0.4	0.2	100.0 (281,436)
부모협동	2.8	8.4	22.5	24.1	22.3	18.7	1.3	100.0 (1,898)
2009	9.0	17.0	23.0	19.0	17.0	13.0	2.0	100.0 (1,175,049)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지역별로는 전라권, 강원, 충청권이 만5세아 비율이 높고,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영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이용아동 중 94%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4.4%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0세아의 비중이 30% 이상이다.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다.

2)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2010년 12월 보육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30,319명으로 2009년 26,412명에서 증가하였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가 62,137명이므로 이들의 48.8%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아동의 비율이 40%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2.4%인데 지역규모별로 농어촌은 4.2%이고 도시는 1.7~1.8%로 도농간의 차이가 크다. 특히 전라도가 4.6~4.7%이다(표 Ⅱ-1-17 참조).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30,319명 중 법인이 13%, 국공립이 11%이고, 민간개인 49.7%, 가정 19.4%로 전에 보육아동의 유형별 분포에 비하여 법인, 국공립, 법인외 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높고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은 다소 낮다.

〈표 Ⅱ-1-17〉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아수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보육아동 대비 비율
전체 (비율)	30,319 (100.0)	3,412 (11.3)	3,952 (13.0)	1,903 (6.3)	15,069 (49.7)	6 (0.02)	5,885 (19.4)	47	2.4
지역규모									
대도시	8,687	1,183	438	284	4,942	4	1,803	18	1.7
중소도시	8,613	622	363	270	4,675	1	2,654	18	1.8
농어촌	13,019	1,607	3,151	1,349	5,452	1	1,428	11	4.2

(표 Ⅱ-1-17 계속)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보육아동 대비 비율
시·도									
서울	3,403	759	50	148	1,864	2	566	92	1.6
부산	1,402	201	66	36	844	-	253	14	2.1
대구	1,142	42	153	35	647	-	264	2	1.8
인천	1,065	104	22	23	641	-	275	1	1.6
광주	805	60	154	27	395	-	158	-	1.6
대전	682	32	49	14	342	2	238	11	1.6
울산	636	49	14	6	455	-	112	5	2.3
경기	5,127	546	107	182	2,762	1	1,508	-	1.6
강원	1,144	175	323	125	361	1	157	21	2.8
충북	1,323	131	370	94	598	-	130	2	2.9
충남	2,448	160	549	196	1,095	-	427	-	4.2
전북	2,080	146	528	342	732	-	332	21	3.7
전남	2,408	219	882	291	756	-	259	-	4.6
경북	3,242	469	320	167	1,806	-	473	1	4.7
경남	2,936	298	222	158	1,583	-	670	7	3.2
제주	476	21	143	59	188	-	63	5	1.9
2009	26,412	2,855	3,438	1,697	13,234	6	5,103	79	2.2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표 Ⅱ-1-18〉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시설수 대비 비율
전체	12,063	1,166	928	488	5,810	5	3,619	31.7
대도시	4,220	514	184	130	2,212	3	1,159	30.1
중소도시	4,252	291	147	88	2,022	1	1,685	26.2
농어촌	3,591	361	597	270	1,576	1	775	46.3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을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총 12,063개소로 전체 시설수 대비 31.7%이다. 지역규모별로는 특히 농어촌 어린이집은 46.3%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육한다. 12,063개 어린이집에서 30,319명의 아동을 보육하므로 1개 어린이집당 평균 3명 미만을 보육한다고 하겠다.

라. 성과와 과제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은 총량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중 41.6%, 유아는 전체 유아 중 총 82.0%의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명 중 61.6%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12)]

이러한 보육 공급과 이용 부분에서 성과는 높은 기관 이용률이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데, 이는 영아 기본보육료 지급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확충에서 상당부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는 성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아 양육에 대한 철학과 부모의 역할 정립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공급상 구조적으로 시설 설치·운영 주체 유형과 지역적 편차는 문제가 된다. 보육서비스 공급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정부가 보육의 질과 부모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 없는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의 양적 확충 정책의 결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부담과 민간자원 활용 논리로 인하여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신규 시설 설치 목표치마저 낮추었으므로[13)]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없이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 현장에 대한 직접지원이 부모 보조금 지원에 비해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정부통제, 규모의 이익, 전국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 교사 훈련의 효과성,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OECD, 2006), 이러한 효과는 공공성 높은 운영으로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가정보육을 포함하여 다수의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

---

12)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외에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유아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단지 4.4%에 불과함.

13) 2009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은 38개소, 2010년 10개소, 2011년 16개소임.

군·구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지자체 소유부지 활용, 무상기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구는 건축비의 25%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도 부지매입비, 설계 및 타당성 조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면적 330㎡와 단가 1,201,300원/㎡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 어린이집 신축 시 연면적은 평균 597.74㎡로 정부지원 기준 396㎡보다 크다. 2009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39건 중 정부지원 기준 396㎡를 초과하여 신축하는 경우가 23건, 59%이었다. 또한 건축비 단가도 국고 지원단가가 실제 소요 단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 신규 설치 전체 비용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1.6%~50%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할 경우는 2.7%~50%이다(표 Ⅱ-1-19 참조).

〈표 Ⅱ-1-19〉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

단위: 개소, %, 천원

구분	개소수	비율	설치비용		
			평균사업비 (부지매입비 제외)	평균국비 (부지매입비 제외)	평균지방비 (부지매입비 제외)
합계	39	100.0	1,319,601 (1,072,050)	195,795 (195,795)	1,123,806 (876,255)
396㎡ 이하	17	41.0	504,618 (469,432)	193,936 (193,936)	310,682 (275,496)
396㎡ 초과	22	59.0	1,886,545 (1,491,263)	197,088 (197,088)	1,689,457 (1,294,175)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보육예산 설명자료.

따라서 시·군·구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원 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야 한다. 2009년 국공립시설 신축사업의 평균 단가는 1,886,469원/㎡, 부지매입비 제외 시 1,660,051원/㎡으로 현행 단가 1,201,300원/㎡보다 57%p가량 높다. 부지매입비 제외시에도 38.2p%가 높다. 시설당 평균 1,124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시 876백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있으므로, 국고보조율의 차등 적용, 지원단가 현실화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비 지원 시설 규모 제한도 상한 하한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

2. 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의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14)]

가. 보육비용 개념과 실제

1)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99년 이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한 것은 두 차례이다.

2004년에는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조세연구원(2005)에 의뢰하여 표준 보육 및 교육단가 산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세연구원에서 산출된 표준보육료·교육비는 저렴한 수준으로 건축비를 포함하였고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는 인력의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춘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일정 수준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안이 0세아 806,000원, 5세아 271,843원이다.

〈표 II-2-1〉 2004년 산출 1인당 표준교육비(종일제): 0, 5세 사례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0세	686,566	942,673	806,000	1,105,831	790,287	1,084,150	788,973	1,076,483	784,796	1,073,986	780,965	1,065,728	773,788	1,054,838
5세	-	-	271,843	355,257	247,646	322,930	249,503	320,254	254,642	315,912	246,128	314,758	238,569	305,245

자료: 박기백·김현숙·김우철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14) 우리나라 육아 비용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농어민 자녀 보육·교육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조세지원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임.

〈표 II-2-2〉 2008년 산출 1인당 표준교육비(종일제): 0, 5세 사례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0세	668,500	1,111,400	738,400	1,222,300	709,900	1,177,100	711,300	1,172,000	705,200	1,163,000	704,800	1,161,300	696,200	1,149,300
5세	-	-	317,100	450,400	284,600	404,100	284,200	399,600	277,400	391,000	276,100	388,800	267,200	377,100

자료: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이후 김현숙은 2008년에 복지부 의뢰로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산출한다. 2004년이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을 통합한 비용 산정이며, 영아 관리비가 과다 책정되었고, 개인적 재정투자와 융자, 임대 등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출한 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안이 0세아 738,400원, 5세아 317,000원이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기농 식자재를 쓰며 교재교구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고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두 연구를 비교하여 영아는 많이 낮아졌고 유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

2) 보육료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보육료가 다르다. 그러나 0~2세 영아 보육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어 있다.

<표 Ⅱ-2-3>은 2011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단가 차이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산출된 표준보육단가를 보면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가 더 높은데, 시·도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보면 일부 지역은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이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 보다 더 높다.

〈표 II-2-3〉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1

단위: 천원

시・도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3세	만4세이상	만3세	만4세이상
서울	만0세: 394 만1세: 347 만2세: 286 만3세: 197 만4세 이상: 177	251	246	251	246
부산		244	222	263	243
대구		243	224	251	245
인천		257	243	270	258
광주		242	224	256	245
대전		240	225	266	266
울산		247	232	261	244
경기		275	253	278	278
강원		238	222	255	249
충북		250	225	278	272
충남		254	276	241	258
전북		237	214	237	214
전남		237	220	256	246
경북		242	217	263	247
경남		236	221	254	247
제주		223	215	246	246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3) 보육지원단가

정부는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마지막 근거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 체계이다. 이 단가의 항목별 구성비는 <표 Ⅱ-2-4>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별 비용 구성은 실제 의미를 갖지 못한다.

<표 Ⅱ-2-5>는 2004년 이후 연도별 지원 기준액이다. 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을 반영하여 만4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표 II-2-4〉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단위: %, 원

구분	2세 미만아반	2세아반	3세 이상아반	79명 시설 평균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66.6	59.6	38.1	50.0
보육아동급식비	21.2	25.7	39.4	31.8
교재교구비	3.3	4.0	6.1	4.6
시설관리운영비	5.3	6.4	9.7	4.7
차량유지비	3.6	4.4	6.7	5.4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보육료 수납 총액	12,815,715	14,836,905	27,638,121	125,403,888
시설별 지원	7,457,745	7,380,560	8,247,674	46,961,887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	76.6(42.1)	73.0(39.8)	56.1(29.3)	65.2(34.9)
보육아동급식비	13.4	17.2	30.3	23.0
교재교구비	2.1	2.7	4.7	3.6
시설관리운영비	5.6	7.2	8.8	7.7
차량유지비	2.3	2.9	1.3	2.0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주: 보건복지부(1999).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2-5〉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비고
2004	257		212	131		
2005	299		247	153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2006	350	308	254	158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7	361	317	262	180	162	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2008	372	327	270	185	167	
2009	383	337	278	191	172	
2010	383	337	278	191	172	
2011	394	347	286	197	177	

주: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4) 기타 필요경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을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별 실태는 <표 II-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6〉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1

시·도	입소료	현장학습비	기타필요경비
서울	연 5만원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결정 - 어린이집원장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위임불가	
부산	연 8만원	연 10만원	월 8만원
대구	연 8만원	연 10만원	월 8만원
인천	- 정부지원시설 연 8만5천원 - 민간·가정·부모협동 연 10만원	- 정부지원시설: 만0~1세 월 5만5천원, 만2~5세 월 7만원 - 민간·가정·부모협동시설 : 만 0~1세 월 7만원, 만2~5세 월 9만원	
광주	연 8만원(재원아 2만원)	연 23만원 (행사비 5만원)	월 9만원
대전	연 9만원(1회) (재원아 2만원)	연 14만4천원	월 8만원
울산	연 8만1천원 (재원아 2만2천원)	연 18회 실비수납	월 8만원
경기	연 10만원 (재원아 입소료 50%)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 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납	
강원	7만원(재원아 3만원)	실비로 결정	월 7만원 (수납한도액 이내 실비)
충북	연 9만원	연 10만원	월 8만원
충남	연 8만원(재원아 3만원)	연 16만원	월 12만원
전북	연 5만원(재원아 2만원)	시 월 11만6천원 군 월 8만4천원 (현장학습, 차량운영, 시간연장, 간식비 포함)	월 9만5천원
전남	연 8만원(재원아 2만원)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포함	연 12만원 이내	-특별활동비 연 8만원 (※ 과목당 3만원원이내 준수철저) -기타필요경비 연 24만원 (※재료비, 건강진단비, 앨범대, 캠프비, 재롱발표 및 체육대회, 소풍비, 특별활동비, 우유급식비 포함)
경북	연 8만원 (동결)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포함	1회 2만원 (동결) ※ 입장료, 교통비 등 (단 희망자에 한함)	월 9만원
경남	연 8만원	연 10만원	월 7만원(특별활동비)
제주	연 6만원(재원아 5만원) ※ 상세내역 고지)	연 5만원 이내	월 7만5천원 이내 ※ 시설운영위원회, 학부모 협의하여 결정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표 Ⅱ-2-7>은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수납액 한도이다. 서울시는 입소료는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현장학습비는 연 15~25만원, 특기적성비는 8~26만원으로 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기적성비는 강남구가 26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와 동작구가 18만원이며,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8만원, 구로구·노원구·성북구가 9만원 선으로 10만원 미만이다. 특기적성 과목에 대한 제한은 서대문구·성북구·영등포구·은평구가 3과목, 강동구가 5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동작구는 과목 제한이 없다.

〈표 II-2-7〉 서울시 각 구의 영유아 추가 수납액 상한 기준: 2011

구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구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강남구	27만원	26만원 (서울형 15만원)	서대문구	18만원	8만원 (1인당 3활동 이내, 재료비 포함)
강동구	15만원	18만원 (5과목 이내)	서초구	20만원	17만원
강북구	20만원 (매 현장학습시 정산 및 수납)	15만원	성동구	24만원	13만5천원
강서구	20만원	12만원	성북구	15만원 (연 10회 이내)	9만원 (월 3과목 이내)
관악구	18만원	국공립 9만원 민간·가정 12만원	송파구	월 3만원	15만원
광진구	24만원	14만원	양천구	20만원	12만원 (학부모와 협의)
구로구	25만원	9만원 (부모협의 결정)	영등포구	22만원	11만원 (연령별 3과목 이내)
금천구	15만원	8만원	용산구	19만원	11만원
노원구	20만원	9만원	은평구	영아 18만원 유아 20만원	10만원 (월 3과목 이내)
도봉구	18만원	10만원	종로구	20만원	10만원
동대문구	15만원	학부모와 협의(실비)	중구	18만원	10만원
동작구	20만원	18만원 (과목수 미제한)	중랑구	18만원	10만원
마포구	20만원	9만원 (교재 교구비 포함)			

주: 입소료는 5만원으로 통일
자료: 각 구청 웹 사이트에서 인출.

나. 보육비용 지원 제도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재정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및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15]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인건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되고, 이러한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비인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는 임금을 지원한다. 원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보육아동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원 49인이하는 월 120만원, 현원 50~99인이하는 월 320만원, 현원 100인이상은 월 480만원을 지원한다.

---

15)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또한 운영비는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고용주 지원으로 간주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민간어린이집 지원

가) 영아 기본보육료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16] 지원액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영아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시 이를 이용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성격은 강화되었다.[17]

〈표 II-2-8〉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2010년			2011년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보육료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16)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시설별로 40만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고,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음. 2009년부터는 기본보조금을 기본보육료로 명칭을 수정함.

17) 정부 예산상 항목은 보육료지원임.

〈표 Ⅱ-2-9〉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단위: 명, %

구분	보육료 지원 영아	보육료 미지원 영아	소계	보육아동 대비 비율
영아전체	346,028	162,686	509,430	74.2
0세	75,610	36,549	112,159	89.6
1세	118,822	51,679	170,501	74.3
2세	151,596	74,458	226,054	68.2
(장애아)			(716)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나)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 일반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시설 규모별로 연간 50~120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어린이집에도 지원한다. 2011년부터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한 시설에만 지원한다.

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중앙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18)]

〈표 Ⅱ-2-1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정원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보육예산 설명자료.

기본 신청 기준은 평가인증 유효, 전년도 하반기 6개월 간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 최근 3개월 간 유아현원이 현원의 평균 30%이상 유지이며 이외에 놀이터 설치여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

18) 동시에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화·특성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하고자 하였음. 2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운영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자율형 어린이집은 희망자가 소수이어서 실시되지 않았음.

형태, 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비율, 시·도별 특성화 지표 등이 점수로 환산되어 반영된다. 총점 80점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어린이집에는 규모에 따라 일정액이 어린이집 정원 구간별로 지원된다 (표 Ⅱ-2-10 참조).

이에 앞서서 지방정부 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하였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부산시도 '09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보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9]

3) 부모 보육료 지원

가) 지원 기준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은 정부가 정한 지원단가에 의한다. 지원단가는 영아는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하지만 유아는 만 3, 4세 197,000원, 만 5세 177,000원으로 지방정부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당초에 특정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4년 이후 확대하여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고,[20]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09년 6월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

---

19)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20)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도시가구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층을 구성하여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100%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음.

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2010년에는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480만원이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 약 15,000여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여 약 27,000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게 되었다.

무상보육으로는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21] 2011년 현재에는 보육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12년부터 만5세아 공통과정 운영 및 무상교육·보육 방침이 결정되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두자녀 이상 가구의 대상 아동은 전액 지원된다. 즉, 차등지원과 만5세아 무상 등 부모 부담 지원은 유아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실시되었다.

또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22]인 자의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어린이집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23]

---

21)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22)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미만임

23) '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도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08년부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함. 2012년부터 복지부로 이관됨.

단, 5세아는 50%이다. 어린이집 미이용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45%는 2010년 35%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나) 지원 실적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87만 9천여명인데 연령별는 만 2~4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인다. 2008년까지는 0세아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2009년은 0~5세 중 만5세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표 Ⅱ-2-11 참조). 이는 어린이집 이용 0세아의 부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맞벌이가 많아서 지원 소득기준 범주를 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모 중 소득의 25% 감액으로 지원을 받게 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Ⅱ-2-11〉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07~2010

단위: 명, %

구 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이상	계
2010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25,133	229,486	331,637	243,264	180,542	169,848	1,279,91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87,934	160,377	222,257	162,554	124,337	121,421	878,880
보육료 지원 비율(B/A)	70.3	69.9	67.0	66.8	68.9	71.5	68.7
2009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07,525	198,831	268,038	227,966	193,934	26,375	1,022,66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72,730	138,265	175,710	148,448	129,914	14,836	672,087
보육료 지원 비율(B/A)	67.6	69.5	65.6	65.1	67.0	56.3	65.7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36,198	960,17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19,653	592,256
보육료 지원 비율(B/A)	53.5	62.0	62.8	63.2	63.8	54.3	61.7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61,318	920,371
보육료 지원 아동수(B)	34,985	78,245	141,917	154,957	139,376	37,356	586,836
보육료 지원비율(B/A)	50.8	63.8	63.9	65.1	67.2	60.9	63.8

주: 방과후 포함됨. 5세 이상은 2010년의 경우 무상보육 대상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차등보육료 이외 만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영유아 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건이었으나 2010년 12월 기준

으로 87만9천여건으로, 이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대비 68.7%이다. 만5세아는 만5세 아동 중 63.4%가 지원 대상이다(표 Ⅱ-2-12 참조).

〈표 Ⅱ-2-12〉 보육료 지원 건수: 2007~2010

단위: 명, 건, %

구분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	두자녀 이상	장애아	총계
2010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130,632	149,278	-	-	1,279,910
보육료 지원 건수(B)	755,100	94,621	14,221	14,938	878,880
비율(B/A)	66.8	63.4	-	-	68.7
2009년					
전체 보육 아동수(A)	1,022,669	152,380	-	-	1,175,049
보육료 지원 건수(B)	672,087	107,951	(60,704)	15,083	795,121
비율(B/A)	65.7	70.6	-	-	67.7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5,323	-	-	1,135,502
보육료 지원 건수(B)	592,256	122,858	(108,500)	15,644	730,758
비율(B/A)	61.7	70.1	-	-	64.3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9,562	-	-	1,099,933
보육료 지원 건수(B)	586,836	145,303	(109,599)	17,615	749,754
비율(B/A)	63.8	80.9	-	-	68.2

주: 농림부 지원이 제외됨. 2008년까지 두 자녀는 중복지원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표 Ⅱ-2-13〉 유형별 보육료 지원 아동: 2010

단위: 명, %

구 분	기준	수	비율
보육 아동		1,279,910	100.0
지원 아동		878,880	68.7
법정	차상위계층 이하, 한 부모 가족,	30,753	2.4
100%	소득 하위 50%	458,162	35.8
60%	소득 하위 50%초과 -60%이하	66,704	5.2
30%	소득 하위 60%초과-70%이상	51,745	4.0
두자녀 60%	소득 하위 50%초과-60%이하	77,792	6.1
두자녀 30%	소득 하위 60%초과-70%이하	64,418	5.0
장애아		14,938	1.2
만5세	소득하위 70% 이하	103,832	8.1
방과후	소득하위 70% 이하	10,536	0.8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다음 <표 Ⅱ-2-14>는 2010년 12월 현재 보육아동의 보육료 지원유형별 백분율을 나타낸다. 지원 유형별로는 하위 50% 이하 면제 아동이 38.2%이고 두 자녀로 지원 받는 아동이 11.1%이며 9.2%가 감면 대상이다.

지역별로 전체 및 유형별 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이 차이를 보인다. 지원아동 비율이 부산,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북의 지원아동이 75%를 넘는 수준인데 비하여 서울은 54% 수준이고, 울산과 경기도가 62% 수준으로 비율이 낮다.

〈표 Ⅱ-2-14〉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 2010

단위: %(명)

구분	하위50% 면제	둘째 이상 면제	차등 감면	장애아 면제	만5세 면제	방과후	계	(아동수)
전체	55.6	16.2	13.5	1.7	11.8	1.2	100.0	(878,880)
서울	54.2	13.7	13.7	2.0	13.4	3.0	100.0	(113,204)
부산	57.7	14.2	13.1	2.0	11.0	2.0	100.0	(50,248)
대구	60.5	14.3	11.8	2.5	9.7	1.3	100.0	(47,865)
인천	57.8	15.0	14.1	1.3	11.3	0.5	100.0	(48,338)
광주	58.2	15.0	10.2	2.0	14.0	0.7	100.0	(37,628)
대전	59.5	16.2	13.4	1.3	9.3	0.4	100.0	(30,017)
울산	51.9	19.8	17.8	3.0	7.4	0.2	100.0	(17,675)
경기	53.6	18.0	15.1	1.4	11.4	0.4	100.0	(204,972)
강원	53.6	16.6	13.7	1.1	14.1	0.9	100.0	(30,921)
충북	52.5	17.5	13.7	1.2	14.4	0.7	100.0	(33,685)
충남	53.5	17.4	14.2	1.4	12.9	0.6	100.0	(40,797)
전북	58.6	13.6	9.3	1.4	14.0	3.1	100.0	(43,666)
전남	56.4	15.7	10.3	2.0	14.8	0.8	100.0	(40,975)
경북	56.3	16.4	13.3	2.3	10.3	1.4	100.0	(52,886)
경남	53.9	18.7	15.1	1.6	9.5	1.1	100.0	(68,416)
제주	64.6	14.3	9.1	1.6	9.9	0.5	100.0	(17,587)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다. 성과와 과제

보육료 지원 대상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어 2010년 68.7%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취업모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면액을 부부 중 낮은 소득 25%에서 합산 소득의 25%로 확대하여 취업모를 배려하는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였고, 또한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전액 지원을 결정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질적 수준과 비용 지원 연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와 과제가 남아 있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순비용 감소는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영향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만으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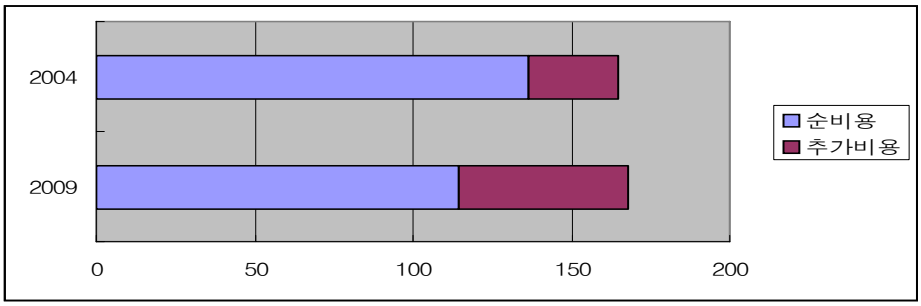

〔그림 II-2-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순비용과 추가비용 비교: 2004, 2009

보육비용과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용 관련 용어 중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표준보육비용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기적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은 물론 기준도 제각각이다. 지역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일정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평가인증 지표를 통하여 통합적 표준보육과정 준수를 중요시하며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원 단가, 표준보육비용간의 격차가 있다. 만5세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 175,000원, 보육료 상한액 24만원 내외, 표준보육비용 28만원 선이다. 이는 실제 비용과 지원단가간의 격차로 전액지원의 체감도를 낮춘다. 지원 단가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시설유형별 상한액 차이도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다.

넷째, 보육비용이 이용시간 언급없이 단일 종이 제시되고 있어서 획일화된 보육비용 지원구조를 개선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정책과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우선 일정 소득 기준선을 중심으로 그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그 이상은 전혀 지원이 없는 전액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정책은 부모들의 전액 지원 대상 기준선 이하로 들어오려는 비정상적 행태를 낳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보육바우처 시스템 도입시 바우처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설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듯하지만 부모보조금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부모보조금은 시설보조금에 비하여 교사 처우, 보육서비스의 질과의 강력한 연계에 한계가 있다.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과의 연계도 취약하다. 올해부터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였으나, 이 정도로 비용 지원이 질과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시간연장형 보육

가. 제도

정부는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원은 2010년 현재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인건비지원 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아동 3명이상 보육 시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연장근무수당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다. 30만원은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을 나타낸다.

2010년 약 6,500개였던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올해 9,000개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5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억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또한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0,000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소득하위 70%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나. 현황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지정 어린이집수는 6,535개소이고 미지정 시설이 1,717개소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6% 정도가 시간연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아동수는 41,654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율은 시·도별로 최고 제주 8%, 대전, 전북, 경남이 4%가 넘는다.

〈표 II-3-1〉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지정 어린이집 현황: 2010

단위: 명, 개소, %

시·도	이용 아동 수					지정 어린이집수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보육아동 대비 비율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어린이집 대비 비율
전체	37,309	3,400	945	41,654	3.3	6,535	207	230	6,972	3.0
서울	6,493	467	291	7,251	3.5	1,281	75	94	1,450	2.8
부산	1,424	86	83	1,593	2.4	242	1	17	260	2.6
대구	1,412	115	20	1,547	2.5	270	-	3	273	2.5
인천	1,483	73	61	1,617	2.5	232	-	8	240	2.9
광주	1,192	154	43	1,389	2.8	171	6	10	187	2.4
대전	1,641	76	20	1,737	4.1	305	2	3	310	3.6
울산	489	23	30	542	2.0	118	17	7	142	2.8
경기	8,353	669	246	9,268	2.9	1,430	4	52	1,486	3.5
강원	952	209	19	1,180	2.9	175	4	4	183	2.6
충북	1,276	87	0	1,363	3.0	255	2		257	2.4
충남	1,337	111	0	1,448	2.5	274	7		281	2.9
전북	2,034	247	13	2,294	4.1	340	3	5	348	2.7
전남	1,768	21	26	1,815	3.4	353	7	4	364	2.1
경북	2,046	147	29	2,222	3.2	293	3	6	302	2.9
경남	3,833	436	60	4,329	4.7	578	13	16	607	3.5
제주	1,576	452	4	2,032	8.2	218	63	1	282	2.1

주: 이용아동은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이용아동도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표 II-3-2〉 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0

단위: 명, 개소, %

시・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전체 대비 비율
아동 수					
전체	37,309	3,400	945	41,654	3.3
지정	31,371	558	945	32,874	2.6
미지정	5,938	2,842	-	8,780	0.7
어린이집 수					
전체	8,252	929	230	9,411	4.6
지정	6,535	207	230	6,972	3.0
미지정	1,717	722	-	2,439	1.6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다. 성과와 과제

시간연장형 보육은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건비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탄력성이 높은 정책으로, 2010년 주요 제도적 성과라 하겠다. 2011년에는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형 교사수를 6,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7% 수준으로 조사되어 실제 보육아동 3.3%의 두 배 정도가 된다. 특히 취업모는 10%가 상시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수요가 실제 상시 이용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지 않다.

또 하나 시간연장형 보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육아동의 수이다. 9,411개의 시설에서 41,654명 아동을 보육한다는 것이 나타내듯이 시간연장형 보육아동이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을 지원하는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첫째,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이나 남아 있는 극소수 아동의 정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밤에 교사 1인에 아동 1~2명이 남는 시간

연장형 보육은 아동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원장의 보고 이외의 점검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시간연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향후에는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 평가인증

가. 제도

평가인증제도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2009년까지 1주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제2주기로 제1주기와는 다소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 2주기 평가인증은 평가지표의 축소, 달성도 높은 항목 통합, 항목신설 등의 변경을 추진하였고, 법적 기본사항(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확인을 추가하였으며, 평가인증 신청에서 인증 결정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고[24] 인증의 객관성 및 기준 점수를 강화하였으며, 각 지역의 사전조력 인프라를 통해 인증어린이집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25]

평가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는 인증, 그렇지 못하면 인증유보로 결정된다. 총점 및 영역별 기준점수는 2.25점(3.00만점)이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24) 평가인증 과정은 2005년 시범운영 초기에는 9~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6~7개월의 조정되었고, 2011년부터 6개월로 조정되었음.

25) 평가인증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의 과정을 거침. 인증점수는 자체점검 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임. 심의의견은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노력, 보고서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우수사례 및 부적절 사례, 보고서 간 대비오차로 구성함.

국 웹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 인증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임 원장은 교체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원장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인증사무국에서 매 심의마다 인증 기준 통과 어린이집 명단만을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되며, 결과는 주로 지방정부가 교사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의 준거로 활용한다.

나. 현황

신규 및 재평가를 포함하여 2011년 4월 기준으로는 어린이집의 70%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표 II-4-1〉 연차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 2011. 4

단위: 개소, %

구분	신청 건			인증통과 어린이집		
	신청소계	신청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인증통과 소계	인증통과 누계	전체대비 누계비율
2005(시범실시)	1,089	-	-	650	-	-
2006(1～4기)	4,420	5,509	16.4	2,804	3,454	10.3
2007(1～4기)	6,359	11,868	35.4	4,181	7,635	22.8
2008(1～4기)	7,776	19,644	58.6	5,464	13,099	39.1
2009(1～4기)	9,440	29,084	86.8	7,156	20,255	60.5
2010(1~)	8,344	37,428		5,942	26,344	70.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1). 어린이집평가인증사업 내부자료.

〈표 II-4-2〉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 2011. 4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A)	38,021	2,034	1,468	401	19,367	74	14,677
인증(C)	26,344	1,916	1,422	260	12,432	27	10,287
인증률(C/A)	69.3	94.2	96.9	64.8	64.2	36.5	70.1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체포기,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1.4.21).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신청 건수는 29,084건으로 어린이집 수 대비 86.8%이고, 인증 통과어린이집은 20,25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60.5%이었는데, 2011년 4월 기준으로는 70%로 증가한 것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법인어린이집의 인증률이 96.9%로 가장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 94.2%, 민간어린이집 7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3월 현재 인증어린이집 비율은 시·도별로는 광주 89.8%, 전북 87.8%, 부산 85.0%의 순으로 높다.

〈표 II-4-3〉 2005~2009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2011. 4

단위: 개소, %

지역	어린이집 수(A)	인증어린이집 수(B)	비율(B/A)
전체	38,021	26,344	69.3
서울특별시	5,870	4,492	76.5
부산광역시	1,689	1,436	85.0
대구광역시	1,544	1,142	74.0
인천광역시	1,857	1,518	81.7
광주광역시	1,192	1,070	89.8
대전광역시	1,535	1,051	68.5
울산광역시	754	504	66.8
경기도	11,273	6,328	56.1
강원도	1,085	839	77.3
충청북도	1,112	805	72.4
충청남도	1,687	1,064	63.1
전라북도	1,531	1,344	87.8
전라남도	1,135	887	78.1
경상북도	1,998	1,504	75.3
경상남도	3,234	1,948	60.2
제주도	525	412	78.5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진취소,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1.4.21).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06년 1기부터 2009년 4기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점수분포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인증어린이집 중 95점 이상이 11.8%, 95점 미만 90점 이상이 26.2%이고, 반면에 80점 미만은 17.0%이다.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 중 40%가 90점 이상을 받는 등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75점 이하도 4.8%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들 간의 점수 차이도 크다(표 Ⅱ-4-4 참조).

평가지표가 개선된 2주기 평가에서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 점수는 신규 인증 88점, 재인증 90.5점으로 오히려 1주기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Ⅱ-4-4〉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결과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불인증	계(수)
	95점이상	90~94.99	85~89.99	80~84.99	75~79.99	73.33~74.99	73.32점 이하	
전체	11.8	26.2	24.7	18.5	12.2	4.8	1.7	100.0(20,567)
인증어린이집 누적	12.4	39.9	65.7	84.5	96.2	100.0	na	100.0(19,605)

주: 2006년 1기 ~ 2009년 4기까지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1). 어린이집평가인증사업 내부자료.

〈표 Ⅱ-4-5〉 평가인증 차수별 평균점수 현황

구분	제1차 평가인증 (2005~2009)	제2차 평가인증(2010)	
		신규인증	재인증
평균점수	87.39점	88.08점	90.52점
인증통과율	83.8%	71.2%	85.1%

주: 인증통과율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수/참여어린이집수×100%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1). 어린이집평가인증사업 내부자료.

다. 성과와 과제

2010년부터는 제2주기 평가인증으로 평가지표와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70%를 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평균 점수 역시 1주기 평균 87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2주기 평가인증은 물론 평가인증 제도 자체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평가인증제도는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보공개와 결과 활용 및 재정 지원과의 연계이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어린이집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고, 어린이집 선택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러므로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여 공개하거나 또는 항목별 원점수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서 부모들이 평가 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평가자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이다. 2011년부터 교재교구와 평가인증을 연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점차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의 연계로부터 기본보육료나 차등보육료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로 호주 평가인증은 각 영역별로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고,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미인증 어린이집 이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국은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에 따라서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무모에게 5쪽 정도를 총평 및 항목별 평가 등급(A~D)과 평가 내용 전문 검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검사 보고서를 Ofsted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6]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가. 제도

보육인력은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대 아동수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다. 아동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와 겸직이 가능하고, 영양사와 간호사는 아동 100인 이상 시설에, 취사부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27]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예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

26) 호주와 영국의 평가(인증) 결과 공개 사례는 서문희・김온기・이정원 외(2010)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27) 보육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은 본 글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첫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대학, 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 한 달에 2주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하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는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어린이집에 15일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보육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로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한다.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하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5일 근무에 월 130만에 교통비와 퇴직금 적립은 각각 10만원, 퇴직적립금 6만5천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나. 현황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수는 2010년까지 51만 5천여명이며 급수별로는 1급이 28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2급이 20만 1천여명, 3급이 2만 8800여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34.2%로 1급 28.1%, 2급 35.0%, 3급 56.5%이다.

〈표 II-5-1〉 자격증 취득자의 현직 종사 비율(2005. 4~2010. 6)

단위 : 명, %

구분	자격증 발급건수	자격증 취득자	현직 종사자	비율
어린이집 원장	146,333	138,732	37,601	27.1
보육교사				
전체	578,977	515,321	166,938	32.4
1급	291,652	285,031	80,219	28.1
2급	230,960	201,478	70,437	35.0
3급	56,345	28,812	16,281	56.5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1). http://www.kcpi.or.kr

원장도 자격취득자 수는 2010년 말 현재 13만 8700여명이며 현직 종사자는 27.1%인 37,601명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 12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22만 9천명이다. 보육교사가 166,937명이고, 특수교사 1,248명, 치료사 532명, 간호(조무)사 자격자가 833명이고 영양사가 649명이며 취사부 및 조리사가 14,467명이며, 이외 기타 인력이 6,000여명 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중복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표 II-5-2〉 보육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전체	229,084	37,601	166,937	1,248	532	649	833	850	14,467	**5,967**
국공립	20,980	2,023	14,497	433	115	82	139	136	2,542	**1,013**
법인	17,368	1,462	12,075	572	329	85	114	156	1,843	**732**
법인외	7,708	878	5,094	47	17	40	50	100	892	**590**
민간	104,531	13,639	79,746	184	69	377	469	352	6,789	**2,906**
가정	73,895	19,127	52,186	7	2	3	8	43	1,883	**636**
부모협동	398	73	269	1	-	3	-	4	38	**10**
직장	4,204	399	3,070	4	-	59	53	59	480	**80**

주: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가 모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2010년 말 현재 현직 보육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가 조금 안 되는 48.0%이고 2급이 42.2%이며 3급 교사가 9.8%이다.

〈표 II-5-3〉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 자격별 수				비율			
	3급	2급	1급	계	3급	2급	1급	계
전체	16,281	70,437	80,202	166,920	9.8	42.2	48.0	100.0
국공립	183	3,777	10,535	14,495	1.3	26.1	72.7	100.0
법인	259	3,745	8,069	12,073	2.1	31.0	66.8	100.0
법인외	174	1,565	3,353	5,092	3.4	30.7	65.8	100.0
민간	7,986	35,652	36,100	79,738	10.0	44.7	45.3	100.0
부모협동	16	86	167	269	5.9	32.0	62.1	100.0
가정	7,627	24,727	19,829	52,183	14.6	47.4	38.0	100.0
직장	36	885	2,149	3,070	1.2	28.8	7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어린이집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70.0%,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72.2%가 1급 교사이고, 법인, 법인외, 부모협동 어린이집 교사도 1급 교사가 62~67% 수준이다. 반면에 보육교사 3급은 민간개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10.0%, 14.6%로 높다.

다음 지역별 차이는 1급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강원, 전남, 제주로 55.0%가 넘고 부산과 울산, 충남, 전북 등이 각각 50%를 넘는다. 3급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 경기, 경남, 경북으로 각각 10%가 넘는다(표 Ⅱ-5-4 참조).

〈표 Ⅱ-5-4〉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 자격자 수				비율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시·도	80,202	70,437	16,281	166,920	48.0	42.2	9.8	100.0
서울	13,464	11,355	2,577	27,396	49.1	41.4	9.4	100.0
부산	4,755	3,305	640	8,700	54.7	38.0	7.4	100.0
대구	4,035	3,238	871	8,144	49.5	39.8	10.7	100.0
인천	3,851	3,680	762	8,293	46.4	44.4	9.2	100.0
광주	3,414	2,443	439	6,296	54.2	38.8	7.0	100.0
대전	2,634	2,791	430	5,855	45.0	47.7	7.3	100.0
울산	1,850	1,336	352	3,538	52.3	37.8	9.9	100.0
경기	18,459	19,542	5,431	43,432	42.5	45.0	12.5	100.0
강원	2,654	1,808	226	4,688	56.6	38.6	4.8	100.0
충북	2,666	2,351	391	5,408	49.3	43.5	7.2	100.0
충남	3,362	2,894	431	6,687	50.3	43.3	6.4	100.0
전북	3,673	2,925	653	7,251	50.7	40.3	9.0	100.0
전남	3,488	2,456	311	6,255	55.8	39.3	5.0	100.0
경북	4,501	3,795	963	9,259	48.6	41.0	10.4	100.0
경남	5,639	5,400	1,537	12,576	44.8	42.9	12.2	100.0
제주	1,757	1,118	267	3,142	55.9	35.6	8.5	100.0

주: 급수에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가 모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교사 관련 지원 사업 규모는 보수교육은 2010년, 2011년 모두 26,118명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으로 그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체교사는 2010년과 2011년 모두 450명으로 변화가 없다. 농어촌 교사 특별근무수당 대상자는 2010년 27,344명이다. 이는 2011년에 다소 증가하였다(표 Ⅱ-5-5 참조).

〈표 Ⅱ-5-5〉 교사 관련 사업 규모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0		2011	
	수	예산	수	예산
보수교육	26,118 (39,000)	1,248	26,118 (52,000)	1,248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7,344	18,047	37,414	23,706
대체교사	450	2,891	450	2,980

주: ( )는 인터넷 강의 이수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사가 장시간 보육에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최근 전국조사인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26만원이며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9.5시간으로 산출되었다.[28]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긴 것은 기본적으로 보육이 취업모 자녀 등 장시간 보육 요구가 있는 아동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시간 규정 부재로 인하여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과 아동의 보육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종일제 장시간 보육하여야 하는 부담, 상시 대체 인력의 부재 등도 교사 근무환경 약화의 요인이 된다.

다. 성과와 과제

2004년 보육정책 확대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주로 부모 보육료 부담 완화에 집중되었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첫째, 2010년부터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금액이나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 수당은 전국 교육교사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방정부 사업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도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지방정부가 낮은 교사 급여 보전의 수단으로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이를

28) 이후 약간 상향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이는 유사직종인 국공립유치원교사 총 급여 6호봉 기준 250만원 수준(김현숙·신은수·유영의 외, 2007)이고, 25~29세 전문대졸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0만6천원 수준임(고용노동부, 2010).

중앙정부 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도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2011년 41만원과 비교되므로 지원 수준의 점진적 조정도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450명 규모에서 증가되지 않았다. 또한 보육교사가 연가를 주중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사용상 불편사항이다. 대체교사 제도는 당분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교육은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지원금이 질 높은 보수교육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어렵다.

넷째,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나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내내 아동과 함께할 경우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전업모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종일제로 운영하는 중국 유아원의 경우에도 성인대 아동 비율은 6명 정도로 반당 교사 2인에 보조인력 1인을 둔다. 또한 스웨덴,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서비스는 엄마의 취업이나 가정 사정 등에 따라 비용 지원은 차등을 둔다.

6. 보육정보센터 운영

가.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육아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교육, 평가인증 조력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보육정보센터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위탁운영 근거를 둔고 있다.

나. 운영 현황

1995년 지방보육정보센터 3개소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시·도 17개[29],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41개소 설치·운영 중이다. 중앙정부는 시·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그동안 시·군·구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3개소 설치를 지원하였다.

시·도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은 개소당 1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육아지식 정보제공, 어린이집 이용자 교육, 평가인증 조력지원 대상 확대,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표 Ⅱ-6-1 참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장소는 지자체 건물에 13개소이고 복지관, 어린이집, 육아지원기관 병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운영방법은 대부분이 위탁 운영이고 직영하는 곳이 단 한 군데이다(표 Ⅱ-6-2 참조).

보육정보센터 인력은 총 7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전문요원이 180명으로 가장 많고 전산원, 영양사, 특수교사가 20~30명 정도이다(표 Ⅱ-6-3 참조).

이들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은 정보사업, 상담사업, 조직사업, 취약보육 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6-4 참조).

〈표 Ⅱ-6-1〉 지방보육정보센터 소요예산 등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예산	1,640	1,640	2,840
정보센터 수	17	17	17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29) 경기도 2개소, 기타 시도 각 1개소임.

〈표 Ⅱ-6-2〉 보육정보센터의 제 특성

단위: 개소

구분	계	설치장소					운영방법	
		지자체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기타		직영	위탁
					병설 (육아지원기관)	그외		
수	57	13	4	6	11	29	1	56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표 Ⅱ-6-3〉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계	센터장	보육 전문요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특수 교사	기타
전체	780	56	180	29	0	22	6	22	465
남	23	6	3	5	0	0	0	0	9
녀	757	50	177	24	0	22	6	22	456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표 Ⅱ-6-4〉 보육정보센터의 사업

구분	내용
정보사업	홈페이지 내 보육정보 탑재, 연구자료·홍보자료 발간, 통계조사 실시, 원장·교사·부모 등을 위한 교육
상담사업	설치·운영/교사/부모/특수보육/아이사랑카드 관련 온라인·방문·전화 상담
조력사업	현장직접조력, 우수어린이집 방문, 참여설명회·지표교육·조력전문가 교육 등의 교육, 조력관련자료 개발, 교육 컨설팅
취약보육지원사업	장애아/다문화/영아/시간연장형 보육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사지원, 자료배포
육아지원사업	자료실·놀이실 운영(놀잇감·도서대여 등), 발달검사 실시·부모교육 등 육아정보지원, 가족참여활동·행사·공연 실시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2011). 2010년 전국보육정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다. 성과와 과제

2010년의 성과로는 시·도 보육정보센터 예산 확보를 늘려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지방정부 재정 상태에 따른 지역 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는 다음의 구조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체계의 미비이다.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물론 중앙보육정보센터도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적 구조라기보다는 협력적 체계를 유지하

고 있다.

둘째, 지역간 균형 배치 미비이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그 동안 시·군·구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다수는 서울, 경기도에 설치되는 등 지역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향후 기능 정립이 요구되며, 시·도와 시·군·구 센터간의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 제도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자에게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이며, 월 10만원이 아동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2011년 양육수당은 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액수도 0세아 20만원, 1세아 10만원 2세아 10만원으로 차등화되었다.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

농어민 양육수당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으로[30]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어린이집 이용시는 정부지원단가의 70%, 어린이집 미이용은 정부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한다. 만5세는 각각 100%, 50%를 지원한다. 수혜자는 어린이집 이용자

30) 2자녀는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임.

가 연 평균 22천명, 어린이집 미이용자가 연 평균 19천명 정도이다.

나. 양육수당 지원 실적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2010년에는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5만 1,800여명이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0~1세 아동 대비 5.8%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5세 미만아동의 상대빈곤률을 10.4% 정도로 추정할 경우(보건복지부·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6) 대상자의 약 반 이상이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는 9만8천명[31]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산정하였다. 소요예산은 2010년 657억원에서 2011년 897억원으로 36.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전북이 10%가 넘는 반면에 서울은 3.5%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기도도 4.% 수준이다.

〈표 II-7-1〉 시·도별 차상위 계층 이하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 규모: 2010

단위: 명, %

구분	0세		1세		전체	
	수	0세아 수 대비 비율	수	1세아 수 대비 비율	수	0~1세아 수 대비 비율
전국	24,447	5.5	27,391	6.2	51,838	5.8
서울	2,572	3.0	3,393	4.1	5,965	3.5
부산	2,001	7.8	2,138	8.7	4,139	8.2
대구	1,875	9.6	2,291	11.7	4,166	10.7
인천	1,686	6.8	2,054	8.3	3,740	7.6
광주	1,054	7.8	1,134	8.3	2,188	8.1
대전	1,219	8.9	1,220	8.7	2,439	8.8
울산	383	3.5	465	4.3	848	3.9
경기	4,572	3.9	4,960	4.2	9,532	4.0
강원	706	5.9	867	7.2	1,573	6.5
충북	898	6.3	1,057	7.6	1,955	6.9
충남	1,060	5.4	1,156	5.9	2,216	5.6
전북	1,569	10.2	1,520	9.9	3,089	10.0
전남	1,236	7.8	1,278	8.2	2,514	8.0
경북	1,498	6.7	1,744	7.9	3,242	7.3
경남	1,519	4.9	1,686	5.5	3,205	5.2
제주	599	11.1	428	7.8	1,027	9.4
법정 보육비 면제 아동수	2,463		5,171	7,634	7,634	

주: 1) 법정저소득층 아동에는 한부모 가족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동, 모부자 시설, 미혼공동생활가정, 여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입소 아동도 포함됨
2) 비율은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2010)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31) 영아는 0세 77.8%, 1세 64%, 2세 44.7%를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으로 가정하고 420,000명, 1세 330,00명, 2세 230,000명으로 추정

농어민 자녀 지원액은 2010년 812억원이고 2011년 예산은 619억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설 이용자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표 II-7-2〉 농어민 자녀 지원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15,506	81,296	81,296	61,92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다. 성과와 과제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책적으로 부모들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2010년에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 수당을 받은 아동 규모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11만 4천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집행률이 65% 정도이었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양육수당 단가는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월 10만원 2010년 지원 수준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의 대체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제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32]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액 상향조정 시에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수준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고, 영아 지원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아로의 대상 확대가 논의될 경우,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32)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일하는 영아의 모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프랑스는 6세미만 아동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AP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수당 대상 확대는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다소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Piketty, 1998).

8. 가정내 파견보육사업: 아이돌보미

우리나라 가정내 보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부모의 요구와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 일자리로 가정내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에는 종일돌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도

1) 사업 수행 및 관리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0세~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가 일정 가구 소득 이하의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이 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며,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영리 단체 등 아이 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정 기관과 지원기관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거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된다. 2011년 현재 아이돌보미 국고 지원 예산은 401억원 규모이다.

〈표 II-8-1〉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예산(추경)	2010년 예산(A)	2011년 예산(B)	증감 (B-A)	B/A
예산액	15,644 (22,540)	20,147	40,189	20,042	199.5

자료: 여성가족부(각 년도).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2) 서비스 유형 및 비용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에 수요에 대응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에게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한 서비스로 ① 농어촌 및 도시 야간에 긴급돌보미 배치, ②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 기관에 파견, ③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 다자녀 가구[33], 장애부모,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2명 이상 양육가정, 장기 질병 가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720시간 지원이 가능하고, 취업준비, 교육, 긴급한 양육 공백 등 지원 사유에 해당하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 240시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시간제 서비스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5,000원인데,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 가형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나형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상 100%이하로 본인 부담이 4,000원이며 그 이상은 5,000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는 ①「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취업 한부모 가정 자녀, ② 그 외 취업 한부모 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③ 맞벌이 가정, ④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중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⑤ 그 외 가정으로 양육자의 취업준비(면접, 교육활동),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의 순이다.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수는 1인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이용자 가정과 협의하여 형제·자매를 함께 돌볼 수 있다.

종일돌봄은 생후 3개월이상 12개월 이하 0세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은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비취업모의

33)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임.

경우 다자녀 가구, 장애부모의 경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이다. 기본요금은 1일 10시간, 주 5일, 한 달 20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으로 100만원이고,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월 120~200시간 이용 시에는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를 감하며, 월 20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다형 이용요금을 적용한다.

〈표 II-8-2〉 종일 돌봄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월200 시간 기준)	본인부담	소득 기준				
				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가형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소득하위 50%	253만원	293만원	327만원	358만원
나형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소득하위 60%	326만원	376만원	421만원	461만원
다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소득하위 70%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초과	100만원	0	10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2010).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3) 아이돌보미 자격 및 교육

아이돌보미는 결격사유가 없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이다.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 중 만 65세 이상 돌보미는 매년 재면접을 실시하여 활동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최대 만 7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돌보미 교육은 교육시간이 일반은 기본소양교육 30시간과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 서비스 교육 50시간으로 총 80시간이며, 교육 시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은 여성새일센터 등 시·도가 지정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다.

4) 아이돌보미 근무조건 및 활동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숙제점검,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등을 수행한다.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시간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고, 주말, 심야 시간대에는 추

가 수당을 받는다. 교통비는 실비 지급된다. 시간제 아이돌보미는 보육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은 증액된다.

〈표 II-8-3〉 아이돌보미 급여

아동 수	기본	심야, 주말(전염성 질병 아동돌봄 포함)
1명 돌봄 수당	5천원	6천원
2명 이상 돌봄 수당	1명 돌봄 수당*0.75*아동수	

주: 심야는 PM 9:00 ~ AM 8:00, 주말은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의미함.
교통비는 실비(대중 교통 이용료/실비 상한선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자율 결정) 기준으로 지원(다형가정은 교통비 별도 부담)
자료: 여성가족부(2010).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긴급돌보미는 월 80시간 기준으로 60만원이고, 영아 종일제 돌봄은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이며 한 가정에 3개월 이상 종일제 근무 시 월10만원 활동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통비는 실비 이외에 활동 기피 지역 파견 및 22시~06시 사이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경우에는 3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나. 아이돌보미 실적

이이돌보미를 활용하는 회원은 2010년 7,262명이다. 2007년 이래 해마다 목표를 초과달성해 왔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한 가정은 57,748가정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연계한 건수 및 가정 수를 보면 2010년에 14만4천가정에서 123만4천여건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이용 유형별로는 약 58%가 가형이며, 13%가 나형이고, 27%가 다형이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시행 첫해인 2010년에 482건이었는데, 57%가 소득하위 50% 이하이고 소득 하위 70% 이상은 32%로 나타났다.

〈표 II-8-4〉 아이돌보미 활용 회원 수

단위: 명

아이돌보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	799	2,049	6,318	5,477
실적	2,177	2,518	7,774	7,262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각 년도)

〈표 Ⅱ-8-5〉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단위: 가구, 건, %

구 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2009	누계	62,248	20,048	16,867	99,163	668,229	148,010	135,615	951,854
	비율	62.77	20.22	17.01	100.0	70.20	15.55	14.25	100.0
2010	누계	80,786	22,788	40,486	144,060	737,550	160,056	336,904	1,234,510
	비율	56.08	15.82	28.10	100.0	59.74	12.97	27.29	100.0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각 년도)

〈표 Ⅱ-8-6〉 연령별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단위: 가구, 건, %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8세	만9세~12세	계
2009	누계	147,759	222,424	181,965	145,853	123,145	121,508	242,443	95,325	1,280,458
	비율	11.54	17.37	14.21	11.39	9.62	9.49	18.93	7.44	100.0
2010	누계	115,393	260,560	255,170	217,117	186,280	164,052	360,489	138,888	1,697,949
	비율	6.80	15.35	15.03	12.79	10.97	9.66	21.23	8.18	100.0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각 년도)

다. 성과와 과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은 종일 돌봄지원제도를 도입,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지원자 선정 및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이돌보미 파견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올해 들어서 아이돌보미 파견 기관이 확대되었으나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주로 비용 지원 대상자인 가형과 나형 중심으로 파견되고 있고 예산 미지원 대상자인 다형은 실적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저소득층 이외에 비용 지원보다는 질 높은 도우미를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둘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의 차이가 있다. 시간제 돌보미는 전국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

는데 비하여 종일돌봄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로 보육비용 지원 대상 선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 돌보미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심사가 각 사업체에 맡겨져 있다.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를 중복 이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무상보육과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전부 사용할 경우, 정부가 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은 바우처로 체계화하여 보육 바우처과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9. 보육 재정

가.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어린이집 및 아동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2004년 4000억원에 불과하던 중앙정부 예산은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9-1>은 2007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2007년은 2조 2286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4조 2889억원, 2011년 5조 18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도 보육예산 중 78.1% 정도가 부모 보육료 지원금이고 16.8%가 인건비 등 운영 지원금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금이다. 2011년부터 전액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예산 규모는 많지 않으나 다문화 가족 자녀 무상보육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예산 이외에 각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소요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시·도 사업비 4552억원, 시·군·구 사업비 271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각각 국고 사업비의 9.1%, 5.4%로 모두 14.5%이다.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2009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표 Ⅱ-9-2 참조).

〈표 II-9-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7~2011

단위: 백만원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554,824	658,368	753,082	766,876	813,638
	차량운영비	8,210	8,429	9,893	9,863	9,892
	교재교구비	22,000	21,896	22,609	22,610	21,428
	소계	585,034	688,693	785,584	799,349	844,958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897,452	1,254,762	2,109,618	1,856,036	3,499,6426
	5세아 무상보육	280,901	262,783	281,906	248,963	205,361
	장애아무상보육	71,543	66,577	105,602	94,721	88,778
	두자녀보육료	47,059	98,594	172,116	173,235	별도미제시
	기본보조금	306,303	530,472	-	934,915	별도미제시
	맞벌이 보육료	-	-	-	19,700	88,820
	다문화가족무상보육	-	-	-	-	23,447
	소계	1,603,259	2,213,188	2,669,242	3,327,570	3,915,155*
어린이집 기능 보강		83,263	65,197	41,978	17,902	25,900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5,100	24,615	8,205	7,362	19,335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	68,802	136,764	186,905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	-	-	16,347
계		2,286,656	2,991,693	3,573,811	4,288,947	5,018,600

주: 국고지원 사업 중앙과 자방정부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2009년 기본보조금은 운영비에 포함됨. 시·도 미통지액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표 II-9-2〉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1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2011년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표 II-9-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수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전체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서울	696,859	187,543	105,980	990,382	26.9	15.2
부산	287,246	11,161	915	299,322	3.9	0.3
대구	258,090	11,255	6,411	275,756	4.4	2.5
인천	273,582	36,491	8,106	318,179	13.3	3.0
광주	201,229	3,120	3,606	207,955	1.6	1.8
대전	167,470	14,959	7,919	190,348	8.9	4.7
울산	94,509	8,942	3,288	106,739	9.5	3.5
경기	1,159,325	118,591	53,075	1,330,991	10.2	4.6
강원	166,587	7,201	2,748	176,536	4.3	1.6
충북	176,929	2,827	15,934	195,690	1.6	9.0
충남	224,889	5,916	6,159	236,964	2.6	2.7
전북	250,359	12,659	3,277	266,295	5.1	1.3
전남	238,863	12,960	7,725	259,548	5.4	3.2
경북	288,565	15,980	13,132	317,677	5.5	4.6
경남	392,050	5,477	23,131	420,658	1.4	5.9
제주	109,560	105	9,753	119,418	0.1	8.9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전체에는 미통자 금액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표 Ⅱ-9-3>은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국고사업 대비 시·도 사업비 비율은 서울이 26.8%로 가장 높고, 인천, 경기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제주가 1% 미만으로 가장 낮고, 대구와 광주, 충북, 전남은 2% 미만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 특별사업비 비율 또한 서울이 15.2%로 가장 높고, 충북이 9.0%로 다음으로 높다. 부산은 1%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다.

〈표 II-9-4〉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아동1인당 비용: 2011

단위: 백만원

구분	국고사업비	지방정부 특수사업비	계	1인당 국고사업비	1인당 지방정부 사업비	1인당 총계 지원 사업비
전체	5,018,610	726,346	5,744,956	3.92	0.57	4.49
서울	696,859	293,523	990,382	3.37	1.42	4.79
부산	287,246	12,076	299,322	4.36	0.18	4.55
대구	258,090	17,666	275,756	4.18	0.29	4.46
인천	273,582	44,597	318,179	4.20	0.69	4.89
광주	201,229	6,726	207,955	4.12	0.14	4.25
대전	167,470	22,878	190,348	3.98	0.54	4.52
울산	94,509	12,230	106,739	3.46	0.45	3.90
경기	1,159,325	171,666	1,330,991	3.62	0.54	4.16
강원	166,587	9,949	176,536	4.03	0.24	4.28
충북	176,929	18,761	195,690	3.85	0.41	4.26
충남	224,889	12,075	236,964	3.86	0.21	4.06
전북	250,359	15,936	266,295	4.43	0.28	4.71
전남	238,863	20,685	259,548	4.52	0.39	4.91
경북	288,565	29,112	317,677	4.16	0.42	4.58
경남	392,050	28,608	420,658	4.21	0.31	4.52
제주	109,560	9,858	119,418	4.42	0.40	4.81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전체에는 미통자 금액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표 II-9-5〉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재원			계
	중앙	시·도	시·군·구	
국고지원사업	2,478,380	1,269,235	1,269,235	5,018,600*
시·도 사업	-	227,593	227,594	455,187
시·군·구 사업	-	-	271,159	271,159
계	2,478,380	1,496,830	1,767,988	5,744,946
(비율)	(43.1)	(26.1)	(30.8)	(100.0)

주: 미통지 금액 일부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표 Ⅱ-9-4, Ⅱ-9-5>는 2011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 추정 예산 5조 7449억 중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43.1%를 분담하고 시·도가 26.1%, 시·군·구가 30.8%를 분담하고 있다. 2011년 총 추정 보육예산 5조 7449억은 2010년 말 전체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448만 8500원이다.

<표 Ⅱ-9-6>은 2011년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7조 75004억 규모로 GDP 대비 0.69%이다.

〈표 Ⅱ-9-6〉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2010-2011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11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보육	2,066,483	2,877,320	4,943,803	0.465	2,478,380	3,264,818	5,744,946	0.509
유아교육		1,529,272	1,529,272	0.144		1,923,903	1,923,903	0.171
농업인양육비	40,686	40,686	81,372	0.008	40,686	40,686	81,372	0.007
계			6,554,447	0.617			7,750,251	0.687

자료: 1)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2)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3) 농림수산식품부(각 년도).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나. 성과와 과제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4년 이후 정부 보육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5조 7400억 규모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 동안 보육예산은 부모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앞으로 보육예산의 사용처가 부모 부담 완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선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이에 따른 지원 단가의 현실화 등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지원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전액지원 대상자의 확보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추가 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교사에 대한 처우는 부모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늘 뒷전으로 밀려왔는데, 보육의 질

이 교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가 조정시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를 조건으로 하여 재정 지원의 증가가 운영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이 그 동안 외적인 구조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제부터는 실제 어린이집 반에서 교사와 아동간에 이루어지는 보육 내용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육예산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국고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원 예산이 상당수이므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예산이 더 많겠으나,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사업비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수시책사업비의 지역 차이는 지역간 불평등을 가져온다.

10. 소결

앞에서 논의한 영역별로 주요 성과 자료를 토대로 2010년 보육정책 성과 지표를 2009년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보육비용 지원 주요 지표는 보육 아동 중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및 소득대비 보육료 지출 비율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는 부모 보육료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2010년 현재 각각 49.2%, 68.7%이다.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0, 1세 아동 5.8%가 지원 받았으며, 지원액은 월 10만원이다. 2011부터는 지원 연령이 영아 전체로 확대되고 지원액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증가하였다.

2010년 예산 기준으로 보육재정은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대비 보육·유아교육 재정 비율, 보육료 정부 분담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아동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여섯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2010년이 0.20%, 2011년 0.22%이고,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51%이다. 유아교육 및 농어촌 영유아 지원을 포함하면 0.69%이다. 아동1인당 보육예산은 449만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만, 주로 지역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0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56.9%,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8%,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8%이다. 야간보육은 3.0%이고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3.3% 수준이다. 2009년 어린이집 공급률은 54.2%,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2.9%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 야간보육은 2%에서 3% 수준으로 30% 이상이 증가하였다.

〈표 II-10-1〉 주요 국가 단위 보육 관련 지표

영역	세부지표명	2009/ 2010	2010/ 2011	주기	기초자료 출처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아동 비율	45.0%	49.2%	1년	보육통계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65.7%	68.7%	1년	보육통계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7.4%	-	5년	실태조사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8.7%)	5.8%	1년	복지부
	양육수당 지원액	10만원	20-10 만원	1년	복지부
보육재정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0.195	0.211	1년	복지부
	GDP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0.465	0.509	1년	복지부
	GDP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0.617	0.687	1년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아동1인당 총 보육예산	4,207천원	4,489천원	1년	복지부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54.2%	56.9%	1년	보육통계
	어린이집 이용률	42.9%	46.8%	1년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1.0%	10.8%	1년	보육통계
시간연장 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2.0%	3.0%	1년	보육통계
평가인증	평가인증어린이집 비율	60.5%	70.0%	1년	평가인증사무국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	11만원	11만원	1년	복지부
	수당 지급 교사 비율	18.2%	22.4%	1년	복지부
	교사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2.9%	2.6%	1년	복지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현재 통과 비율은 70.1%이다. 이는 2009년 통과비율은 60.5%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하였다.

교사 부분은 교사수 대비 월 수당 지급 교사 비율은 22.4%로 2009년 18.2%에서 증가하였고,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2.6%로 2009년 2.9%보다 낮아졌다.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제3장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예산을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특색있는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수보육시책 비용 역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차이가 크다.

1. 시·도 특수보육시책

가. 개요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6만원부터 서울 91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보육아동 1인당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는 인천, 대전, 울산이 비교적 높은 순위이다.

특수보육시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크게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지원[34],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서울과 부산에 해당되며, 이외 운영비는 매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Ⅲ-1-1 참조).

보육교직원 지원은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역량개발비이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서 수당 형태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차이가 많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경북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두고 있으며, 서울, 부산, 경남에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기능보강비는 46억 이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 역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특수시책 사업이다. 특수보육시책 예산 중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는 없다.

---

34)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음.

〈표 Ⅲ-1-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1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71,416	187,543	11,161	4,843	36,491	3,120	14,014	8,903	42,214	7,201	2,827	5,916	12,659	12,960	15,980	5,477	105
보육 아동1인당		0.29	0.91	0.17	0.08	0.56	0.06	0.33	0.33	0.13	0.17	0.06	0.10	0.22	0.24	0.23	0.06	0.004
시설 운영 지원	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	135,737	135,737	-	-	-	-	-	-	-	-	-	-	-	-	-	-	-
	운영비지원	32,593	5,069	1,217	100	1,467	346	1,156	1,035	1,589	-	-	2,741	267	11,074	6,075	456	-
	인건비지원	5,264	863	-	-	90	-	-	-	4,310	-	-	2	-	-	-	-	-
	소계	173,595	141,669	1,217	100	1,557	346	1,156	1,035	5,899	-	-	2,743	267	11,074	6,075	456	-
종사자 지원	종사자처우개선	83,905	-	-	2,775	14,600	1,012	10,890	5,292	27,052	-	2,461	39	9,358	607	6,993	2,826	-
	역량개발지원	7,419	-	6,644	-	5	-	-	-	-	-	20	-	750	-	-	-	-
	소계	91,324	-	6,644	2,775	14,605	1,012	10,890	5,292	27,052	-	2,481	39	10,108	607	6,993	2,826	-
기능 보강	시설확충	5,612	5,272	-	-	-	-	-	-	-	-	-	-	-	-	-	340	-
	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	648	-	-	-	-	-	-	150	135	-	30	-	-	-	333	-	-
	민간어린이집환경개선	1,305	1,000	-	-	-	-	-	-	135	-	-	-	-	-	-	170	-
	육아지원센터설치운영	2,927	-	-	-	2,729	-	48	-	-	-	150	-	-	-	-	-	-
	소계	10,492	6,272	-	-	2,729	-	48	150	269	-	180	-	-	-	333	510	-
보육 비용 지원	보육료지원	74,912	36,836	3,300	1,559	12,192	1,446	1,001	2,240	6,358	1,507	-	3,000	1,893	-	2,000	1,580	-
	기타경비지원	5,713	-	-	-	3,982	12	265	-	-	1,373	-	-	-	-	81	-	-
	소계	80,624	36,836	3,300	1,559	16,174	1,458	1,266	2,240	6,358	2,880	-	3,000	1,893	-	2,081	1,580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가인증어린이집지원	인증어린이집운영비지원	1,150	-	-	-	-	-	279	-	-	736	20	115	-	-	-	-	-
	인증어린이집종사자처우, 역량개발	5,172	-	-	-	172	215	-	-	-	3,584	-	-	-	1,200	-	-	-
	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	312	-	-	-	-	-	238	-	-	-	74	-	-		-	-	-
	조력단 운영	270	-	-	-	-	50	-	-	-	-	10	-	-	40	100	70	-
	소계	6,903	-	-	-	172	265	516	-	-	4,320	104	115	-	1,240	100	70	-
취약보육운영지원	장애아전담, 통합시설	3,342	2,250	-	385	627	-	-	-	-	-	-	-	-	-	-	-	80
	영아전담어린이집	40	-	-	-	-	-	-	-	-	-	-	-	-	-	40	-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80	-	-	-	-	-	-	-	-	-	-	-	280	-	-	-	-
	방과후보육	241	216	-	25	-	-	-	-	-	-	-	-	-	-	-	-	-
	소계	3,902	2,466	-	410	627	-	-	-	-	-	-	-	280	-	40	-	80
기타	행사지원	270	-	-	-	100	40	-	15	-	-	33	20	15	30	-	-	17
	단체운영지원	333	50	-	-	-	-	10	-	-	-	-	-	-	5	233	35	-
	모니터링단운영	304	240	-	-	8	-	-	6	8	-	-	-	32	-	10	-	-
	부모·종사자교육	205	10	-	-	-	-	100	20	-	-	-	-	64	3	-	-	8
	보육정책위원회운영	32	-	-	-	5	-	-	2	-	-	-	-	-	-	25	-	-
	지방정보센터운영	2,347	-	-	-	514	-	28	142	1,573	-	-	-	-	-	90	-	-
	기타	1,084	-	-	-	-	-	-	-	1,054	-	30	-	-	-	-	-	-
	소계	4,575	300	-	-	627	40	138	185	2,635	-	63	20	111	38	358	35	25
2010		483,527	189,227	13,056	9,112	30,838	6,525	15,913	7,546	118,591	5,837	6,212	17,849	16,351	2,048	18,642	16,623	9,157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전남과 경북을 제외하고 부모 부담 보육비용 추가 지원으로 보육료 및 기타 경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관련 예산은 인천, 충북, 충남, 경남이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광주, 전북, 전남은 종사자 인건비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은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취약보육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는 충북을 제외하고는 이외 시·도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취약보육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많이 감소하였다.

나. 특수 사례

시·도 특수보육시책 중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일부 사례를 분류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의해 전국 지자체 16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모니터링단 운영의 목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믿고 맡길수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부모의 시각으로 어린이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건강, 안전, 급식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모니터링단에게 보육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민간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현재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경북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적다.[35]

7개 지역의 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해 예산,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 현황과 모니터링 점검률, 그리고 관찰지표를 살펴보면 <표 Ⅲ-1-2>와 같다.

35)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2011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중 0.085%를 차지함.

〈표 III-1-2〉 2011 시·도 부모모니터링 사업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경북
전체 특수보육시책 예산(백만원)	187,543	11,161	36,491	8,903	42,214	12,659	15,980
모니터링사업 예산(백만원)	240 (0.13%)	9.6 (0.09%)	8 (0.02%)	6.3 (0.07%)	8 (0.02%)	32 (0.25%)	10 (0.06%)
시작 시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모니터링단 규모	66명	16명	15명	14명	20명	18명	26명
모니터링단 구성	민간전문가	부모	부모 전문가, 종사자, 시민단체	부모 중 운영위원회 위원	부모, 전문가/교사경력자	부모 중 교사경력자, 전공자, 운영위원회 위원	부모 중 교사경력자, 전공자, 운영위원회 위원
활동비 지급	지급함	-	지급함	-	지급함	지급함	지급함
상반기 활동실적 및 지적·점검률	1,467개소 6.6%	42개소 4.8%	(하반기 예정)	53개소 7.6%	566개소 20.8%	145개소 11.7%	159개소 57.9%
모니터링 지표	1) 안심보육 2) 맞춤보육 3) 보육인력 전문성 4) 클린보육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의 안전보호	-	1) 급식위생 2) 시설안전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의 안전보호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의 안전보호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의 안전보호
	50문항	34문항	(구성중)	51문항	22문항	67문항	20문항
관련조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1) 2011 상반기 6월말 기준 자료임(서울시 모니터링 지적점검률은 2010년 결과임).
2) ( )안 수치는 사업예산비율임.
자료: 각시도(2011). 부모모니터링사업 내부자료.

2011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중 모니터링단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0.13%이며, 모니터링사업이 시작된 시기가 2009~2011년으로 최근이다. 모니터링단의 규모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2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니터링단원의 자격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또는 부모 중 보육경력자, 관련전공자, 운영위원회 위원, 평가인증 등의 경험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니터링단원이 되면 위촉과 소양교육의 과정을 거쳐 약 2년의 활동기간을 가지며, 지역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모니터링지표는 사업 착수 초기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보육모니터링단 운영계획에 의해 안전·위생·급식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부 항목의 구성과 구체적 점검의 보고는 다소 다르다.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의 선정 및 규모와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시설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두고 진행하며, 사업시행 연차에 따라 취약지역과 특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지적항목이 관찰된 기관에 대해서는 2~3회 이상 반복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항목에의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즉 관찰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서 구체적 개선으로 유도하는 지원과 조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대상 어린이집의 선정과 규모, 그리고 모니터링 관찰항목에의 지적점검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 동일 지표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에 편차가 크다.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역은 없었다.

모니터링 사업의 운영은 대체로 지역별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안심보육모니터링 사업이 수요자 부모의 입장보다는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등, 예산과 규모, 시작시기, 지표의 구성, 모니터링단의 자격 등에서 다른 6개지역 사업과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사업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

서울시는 저출산 타개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 2009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도의 도입과 함께 2009년부터「안심보육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안심보육모니터링」은 보육서비스가 특정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의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하여 자체 의견을 갖고 구체적 서비스의 질 제고를 컨설팅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안심보육모니터링」사업을 통해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모니터링사업을 서울시의 주요 보육시책사업으로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의 실시로, 기존의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 시스템에서 발전하여 행정체계와 현장, 그리고 수요자 부모와 민간전문가의 자율적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컨설팅이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거버넌스로서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조연숙·서영주·안현미, 2010).[36].

모니터링단원의 선정기준은 학력과 전공, 경력사항, 관련교육 이수의 4가지를 갖춘 일반시민으로서 민간관계자이자 경력자이며 현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를 포함하고 현직 원장 및 보육교사는 제외한다. 모니터링단원의 자격은 영유아관련학과 학사, 보육교사·원장 경력 1년 이상, 평가인증·모니터링단·서울형공인 실사 경력의 3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해야하며 관찰지표 및 컨설팅에 대해 2일간의 모니터링단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상시활동 가능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지표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표는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안심보육', '보육인력의 전문성', '클린보육'의 총 3개 영역 49개의 관찰항목을 적용한다. 반면,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은 '안심보육' 1개 영역 3개 세부영역의 35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를 점검하는 방법은 안심모니터링단의 직접 관찰에 의하며, 부분적으로 교사면담과 문서확인 작업이 적용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0).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지표는 안전·위생·급식에 대한 기본 지표 항목에서 확장되어, 맞춤보육의 실시와 보육인력 지원, 정보개방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Ⅲ-1-3 참조).

2009년 1차 모니터링에서 약 90% 이상의 어린이집인 총 5,048개원이 모니터링을 받았으며, 2~3차 모니터링에서는 1차 모니터링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의 시설에 대해 동일 지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급식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의 3개 영역 모두 평균 4.5점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안심보육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보육교직원과 모니터링 요원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한

36) 안심보육모니터링사업 주체는 서울시가 위탁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모니터링단의 선발 및 교육, 모니터링의 실시 등의 운영과정을 관장함.

결과, 보육교직원 2.96점, 모니터링단 3.90점으로 안심보육모니터링이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느냐의 인식에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조연숙·서영주·안현미, 2010 재인용).

〈표 III-1-3〉 보육모니터링 지표 비교: 2010

서울형 어린이집 모니터링 지표			기본 모니터링 지표	
영역(3)	세부영역(7)	관찰지표(49)	영역(3)	관찰지표(22)
안심보육	급식위생 (14항목)	급간식제공(5) 식재료관리(3) 조리실청결(3) 시설위생(3)	청결과 위생관리	실별 청결관리(5) 기구 청결관리(2) 교사/아동 청결(2) 급간식 제공(2) 질병관리(1)
	시설안전 (17항목)	어린이집내 안전성(6) 어린이집외 안전성(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7) 안전교육 실시(1)	실내외 시설 안전	실내 안전관리(3) 실외·물건 안전관리(2)
	아동인권 (4항목)	아동학대 예방(2) 정서수용(1) 보호(1)	영유아의 안전보호	영유아 보호·인계(3) 비상대비설비(1) 안전교육(1)
(맞춤보육)	프로그램 또는 홍보 (1항목)	(맞춤보육실시여부에 따라) 맞춤보육 프로그램 또는 맞춤보육 홍보	-	-
보육인력의 전문성	인건비 지급 및 교육 (5항목)	보육교사 인건비(1) 교직원 배치 및 업무(1) 보수교육(1) 자율장학실시(1) 전문성 향상 교육(1)	-	-
클린보육	운영 투명성 (5항목)	현금수납 미실시(1) 보육료 인하관련(1) 원별수납(1) 잡부금품(1) 보육료 상한액 준수(1)	-	-
	부모 개방성 (3항목)	온라인 정보공개(1) 가정과의 의사소통(1) 부모참여 프로그램(1)	-	-

주: 기본 모니터링 지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임.
자료: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0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서.

2010년 52.7%의 서울시 어린이집이 대상 기관으로 모니터링 된 데 이어, 2011년 53.7%의 어린이집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하반기로 나뉘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조력을 제공하고, 이후 서비스 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게 된다. 서울시는 활동자료집과 안심보육 컨설팅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다.

나) 부산시

부산시는 2010년 9월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총 16명의 부모 모니터링단원을 두고 있다. 2011년 예산으로 96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2011 상반기 현재 총 4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1년 하반기 8월 이후에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약 2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상과 표창을 한다. 모니터링 단원은 부산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자녀를 둔 학부모여야 하며, 활동기관 2년에 무보수 자원봉사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다) 인천시

인천시는 2011 모니터링사업 예산으로 약 800만원이 배정된 가운데, 2011년 하반기(10~11월)에 부모모니터링단원 약 15명을 모집, 선발·운영한다. 인천시 관내 총 2000개 어린이집 중 약 5%의 100개의 기관에 대해 시설안전과 급식의 2개 지표로 모니터를 실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지표는 개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모모니터링단원의 구성은 학부모 9명과와 학계, 현직 또는 경력이 있는 어린이집원장, 시민단체 임직원 각 2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어린이집운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평가인증 및 각급 보육정책위원회 활동경력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유형별로 각 3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활동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정책건의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의견과 규정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급식위생관리,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활동수당으로 1인당 1회 기준 4만원이 지급된다.

라) 울산시

울산시는 2010년 9월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총 14명의 부모모니터링단원을 두고 있다. 2011년 예산 63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2011 상반기 현재 총 53개소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서울시 지표를 참조하여 급식위생과 시설안전의 2개 분야에서 급·간식 제공, 식재료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위생의 총 5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니터링 단원은 울산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구성되며,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자원봉사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원의 역할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관리와 보육환경, 안전분야에의 모니터링 활동이며, 보건복지부 정책고객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우수 모니터링단은 부처 포상과 연수기회가 부여된다.

마) 경기

경기도에는 북부청과 남부청의 2개 청사가 있는데, 현재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의정부 소재 경기 북부청이다. 북부청은 2009년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 2011년 현재 관계자인력 10명과 부모 10명으로 구성된 총 20명의 모니터링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링 지표는 안전, 건강, 급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기 북부청 관내 566개의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여 118개소에서 135건의 항목에 지적 사항이 있었다. 2011년 예산으로 8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총 51개소를 모니터링하였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 위생과 안전관리에의 전반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 전북

전북은 2010년 9월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총 18명의 부모 모니터링단원을 두고 있다. 2011년 예산으로 3천2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2011 상반기 현재 총 14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의 약 11.7%에 대해 지적사항을 보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단원은 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어린이집 근무경험자나 보육관련 전공자, 어린이집 운영위원, 평가인증 점검경력자, 관련 관계자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모니터링요원의 역할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 보육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상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 온·오프라인 활동 병행과 서면점검이 가능하도록 자율 운영의 기회를 부여한다. 선정된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기간 중 2년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모니터링요원은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외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및 정책 건의를 하는 보건복지부 정책고객으로도 활동한다. 전북지역의 부모모니터링 진행 결과, 모니터링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검에의 편차가 존재하였으므로 점검지표의 보완과 이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사) 경북

경북은 2011년 4월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총 26명의 부모모니터링요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예산으로 1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2011 상반기 현재, 시설유형별로 총 15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 어린이집 중 약 58%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적 및 향후 개선사항을 보고하였다. 모니터링요원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어린이집 근무경험자나 보육관련 전공자, 어린이집운영위원, 평가인증 관찰평가 경력자, 관련 관계자로 구성하였으며,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칠곡 지역에서는 시군별 2~4명을, 그 외 지역에서는 권역별 2명을 선발하여 2인 1조로 조별 시설 방문을 실시한다. 상반기에 모티터링요원 위촉식과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 모니터링사업 실적발표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모니터링요원의 역할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 보육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임기는 2년이나 기 위촉된 모니터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다. 모니터링 요원에게는 회의 및 교육 참석수당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포상하는 모니터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아) 소결: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성과와 과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견인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평가인증은 3년 주기로 평가시점에서 해당 지표의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로, 수요자 부모 입장에서 현장에서 어떠한 보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서

의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참관과 관여가 어린이집과 부모 양자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다. 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접점빈도를 높여 부모-교사-아동간 원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실질적으로 부모의 참여도는 저조하고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소통 빈도를 양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부모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와 민간관계자의 보육서비스에의 상시 관찰과 참여의 통로를 확보하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실행은 고무적이다. 보육재정의 확대와 서비스 규제와 평가를 통한 기존의 보육정책에 학부모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지원의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통해 지향하는 서비스 질 제고와 부모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논의하기에는 현재 모니터링 사업 정책실행의 효율성과 지표의 내용, 정책 추진력과 지자체 및 현장의 참여는 미흡하다. 2009년에 시작하여 아직 전국의 보육시책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 하여도, 현재 진행중인 모니터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보인다.

첫째, 전국 지방시책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0.81%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7개 지역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모니터링의 환류시스템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지원 및 질 제고의 목적 달성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지자체 정부의 예산과 운용에 의해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시스템으로, 제한된 영역에의 지도·점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가인증에서의 부모관찰 및 점검과 차별화되는 정책방향이 요구되는 바, 파트너쉽으로서 부모와 관계자의 모니터링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의 수준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지표, 평정의 도구가 미흡하다. 객관적 도구와 모니터링 운영체계의 미비로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보육서비스의 운영과 질, 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동일 시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요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객관적인 모니터링 결과 도출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점검지표 해석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표에의 해석 및 교육 강화,

점검지표 보완,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지침서와 매뉴얼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평가인증과의 중복을 피하여 고유의 영역과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상호작용, 보육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과정적 요소를 포괄하는 관찰 지표 및 범주의 확장이 요구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이 어느 정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평가인증과도 중복되는 점이 있다. 부모들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의 영역과 범주, 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이용시설 운영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시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보육정보센터와 관련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가 이용시설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별도의 기관으로 명칭을 붙여서 보육정보센터를 그 안에 두기도 한다.

서울시가 각 구에 최소 1개소의 영유아 플라자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강동구는 강동구 어린이회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영유아 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를 두고 있다. 부산시도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보육정보센터가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지하철 역 공간을 활용한 장난감 도서관 10개소를 운영한다. 일부 서울이나 인천의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사업도 실시한다.

3) 공인 어린이집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인 어린이집 운영 사례로, 서울특별시와 부산시가 이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거의 50%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부산시는 소규모로 추진한다.[37]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1년 현재 2,592개소로 전체시설 대비 45.6%이다.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총 127,639명으로 전체시설의 보육정원 230,888명 대비 55.3%를 차지한다.

---

37)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사례는 육아정책연구소 2010년 보육정책 성과와 과제(서문희·최혜선, 2010)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표 III-1-4〉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2011

단위: 개소

계	합계	공공	민간	가정
전체 어린이집	5,684	670	2,610	2,404
공인어린이집				
전체	2,592	593	1,076	923
2009년	2,025	562	776	697
2010년	567	31	310	226

자료: 서울특별시(2011). 내부자료.

4) 파견보육

경기도에서 보육교사 자격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최소 4시간부터 11시간까지 가능하다. 0세아 취업모의 첫 자녀 평일 이용시간 8시간, 20일 이용을 기준으로 보면 부모가 64만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교사수당 17만원을 포함하여 56만5천원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원액은 아동연령, 출생순위와 부모의 취업여부로 결정되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표 III-1-5〉 가정보육교사 지원: 취업모 8시간 이용 기준

단위: 원

지역	0세		1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보육료지원				
취업여성지원	78,000	197,000	69,000	173,000
이용지원금	180,000	180,000	87,000	87,000
교사수당	170,000	170,000	170,000	170,000
부모부담	652,000	533,000	754,000	650,000
총 급여	1,080,000	1,080,000	1,080,000	1,080,000

자료: 경기도보육정보센터(2011) 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

가정 파견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와 보육정보센터 담당자의 현장관찰을 실시하고 있다(표 III-1-6 참조).

파견 보육교사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대체로 고학력에 고소득 가정이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 중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비율은 7% 정도이고 27.3%가 500만원 이상이다.

부모들이 가정보육교사를 보육하는 아유는 영아일 경우 가정에서 돌봐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또는 1:1 보육형태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일 것 같아서 등이며, 가정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취업하기에는 고연령이거나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임양미·구현아·이혜선, 2009).

〈표 III-1-6〉 가정보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내용 및 운영방법

구분	내용	방법	실시주체
자체평가	- 일일계획서·활동보고서 제출(1개월 기준) - 일상보육 및 놀이활동 수행 여부에 대한 사진 자료 제출(예: 핸드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활용)	- 문서작성 - 사진촬영	- 가정보육교사
현장관찰	- 건강·안전 등 일상보육에 대한 성실성 - 기본생활습관지도 - 영아-교사 간의 상호작용 - 가정보육프로그램의 적용 - 일일계획서·활동보고서 평가	- 체크리스트 (척도)	- 보육정보센터 담당직원

자료: 임양미 외(2009)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표 III-1-7〉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어머니 학력			월평균 수입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고등학교 졸업	8	(3.2)	100~200만원 미만	2	(0.8)
2,3년제 대학 졸업	58	(23.1)	200~300만원 미만	16	(6.3)
4년제 대학 졸업	132	(52.6)	300~400만원 미만	55	(21.7)
대학원 졸업 이상	53	(21.1)	400~500만원 미만	111	(43.9)
			500만원 이상	69	(27.3)
합계	251	(100.0)	합계	253	(100.0)

자료: 임양미 외(2009)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가. 개요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은 사업비 총액은 2711억원으로 국고사업비의 5.3%이다. <표 Ⅲ--2-1>은 시·도별 아동 1인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 예산 사업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보육아동 1인당 최대 378만원부터 전혀 없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크다.

〈표 Ⅲ-2-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 평균

단위: 천원

지역	평균	최대	최소
전체	214.6	3,783.0	-
서울	513.0	3,783.0	62.4
부산	21.8	95.0	5.0
대구	103.8	188.2	77.6
인천	124.6	1,863.9	70.7
광주	73.8	118.5	57.7
대전	188.0	199.7	176.2
울산	120.0	316.3	-
경기	179.8	670.0	41.1
강원	66.5	244.8	-
충북	346.5	2,416.5	216.0
충남	105.6	610.4	4.3
전북	58.0	233.9	-
전남	146.0	558.4	-
경북	189.2	764.5	-
경남	248.6	772.6	137.8
제주	393.1	463.0	368.4

주: 부산은 2010년 자료임.

보육특수시책은 시·도별 시책의 차이 이외에도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평균은 51만원 수준이지만 최대와 최소가 각각 378만원, 62만원 수준으로 구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사업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하다.

나. 사례

시·군·구 특수보육 사례로 서울시 서초구와 경남 진주시 사례를 수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서울시의 보육특수시책 규모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시·군·구가 다시 여기에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례로 서초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서초구는 영유아 플라자 운영, 교사와 민간어린이집 영아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종사자 지원은 보육교사 교재연구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이외 중식비 지원, 수당 등을 지원한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반 우유값,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표 III-2-2〉 서울특별시 서초구 특수보육시책: 2011

단위: 천원

분류	사업명	예산
보육교직원지원	어린이집우수종사자표창	1,000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간외수당	193,200
	민간시설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199,800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432,000
어린이집운영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3,500
	민간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우유값)	254,880
	민간어린이집 2세반 및 3세반 운영비	177,600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05,000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84,000
	직장어린이집 운영	296,000
어린이집기능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수준향상지원	90,000
	영유아플라자운영	433,834

자료: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III-2-3〉 경상남도 진주시 특수보육시책: 2011

단위: 천원

분류	사업명	예산
보육비용지원	셋째아무상보육료	718,272
보육교직원지원	원장 및 보육교사해외어린이집견학	13,500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150,000
	보육교직원 휴가비지원	141,4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813,704
	안전위생교육	6,000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12,000
	보육교직원 교육참석보상	3,200

(표 III-2-3 계속)

분류	사업명	예산
어린이집기능보강	어린이집놀이터개보수	100,000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0
	시립어린이집개보수	65,000
어린이집운영지원	도시(동)지역어린이집차량운영비	120,000
	종사자퇴직금	10,000
	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	85,000
	대체교사인건비	43,750
	아동간식비지원	1,123,500
	민간어린이집난방연료비	46,920
	어린이집방역비	30,000
	어린이집안전보험료 지원	26,386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수당	12,000
	평가인증참여수수료지원	27,000
기타		39,100

주: 기타는 파란마음하얀마음그림그리기 대회, 장애아동캠프지원, 교재교구실기경연대회, 보육인의날 행사참석 보상,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아동극공연 및 전시회관람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두 번째 사례는 경남 진주시이다. 진주시는 종류가 매우 많은데, 가장 많은 예산이 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소요된다.

3. 소결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에서 나타난 점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향후 중앙정부가 이러한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화 시대의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부모에게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예산의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부모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은 실시하고 또 다른 지역은 실시하지 못한다. 최소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Ⅳ.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 사업 검토

본 장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심층검토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 사업인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사업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

제1절에서는 보육관계자의 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본보육료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 부모의 의견을 수록하고자 한다.

가. 사업의 전개

국공립, 법인 시설 인건비나 차등보육료 지원 이외에 영아보육 정책은 영아전담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지원으로 추진되어 왔다.

민간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로, 아동 최소 규모는 18명이고, 인건비 지원은 원장과 교사는 8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한다. 농어촌 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민간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2005년부터 대체 지정하지 않는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을 책정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정원 범위 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38]

---

38)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1996년 처음 도입 당시 영아 40명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원장과 소요인원의 인건비 70%를 지급하였으나, 1997년 100%로 상향되고, 이후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90%로 하향되었으며, 2005년에 80%로 다시 조정되었음. 그러나 2002년 이전에는 민간영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3명까지만 지원되던 제도를 2002년 후반기부터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설의 규모를 2002년 30명에서 20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영아 18명, 3개반 이상으로 조정하였음.

일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보육 지원은 2002년 하반기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데서 시작되었다. 즉, 2002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영아반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이후 2003년 모든 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2004년부터는 시설별 40만원 지원에서 반별 지원으로 바뀌어,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영아반의 경우, 반별 현원이 3인 이상(2세는 5인)일 때, 반별 15만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2004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에서 아동별 지원 원칙이 보고된 이후 시설별 지원이 부분 축소되면서 영아보육 지원도 전담어린이집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정을 중단하여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하여 반당 45만원을 지원하였다(표 Ⅲ-2-3 참조).

〈표 Ⅳ-1-1〉 연도별 민간개인·가정 어린이집 영아 보육비용 지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대상	10인 이상 영아보육 가정보육 어린이집	10인 이상 영아보육	영아 20명 이상	영아 18명 이상	반별 별도교사 배치	반별 별도교사 배치
지원유형	시설별	시설별	반별	아동별	아동별	아동별
지원액	월36만원 /시설	월36만원 /시설	월13만5천원/ 반	150천원~ 60천원/ 영아	249천원~ 69천원/ 영아	292천원~ 86천원/ 영아
예산	44억원	146억원 (추경56억 포함)	295억원	686억원	942억원	1356억원

주: 2007년부터 8개 조항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
자료: 1)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2) 여성가족부(각 년도). 보육사업 안내.

이러한 지원은 2006년 이후 기본보조금[39]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리된다. 2006년

39)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건비 미지원 기관의 육아지원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현재의 부모부담 수준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모든 아동의 보육비용과 부모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임. 기본보조금 제도는 아동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어린이집들이 아동 유치를 위한 경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나 서비스 개선금의 형식이 강조되면서 시설별 지원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

새싹플랜 시행과 더불어 민간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전면 지원하면서 보육료를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되었다. 기본보조금의 지원수준은 표준보육비용의 80%선에서 결정하고, 3개년에 걸쳐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원단가와 소요예산은 점차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기본보조금 지급에 8가지 조건 준수가 도입되었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 지급,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총 정원 및 혼합반 운영비 지원 기준은 연령이 낮은 아동 기준 적용,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보고, e-보육에 의한 아동 및 교사관리와 보조금 신청, 2007년 인상분의 50% 이상을 교사 인건비로 사용 등으로 조건을 제시하여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이러한 기본보조금에 대하여 아동별로 액수가 결정되어 지원되지만 부모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바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의 애매성으로 논란이 있었다. 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아동별 부모보조금과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설 보조금의 장점을 모두 살리지 못하는 제도로 평가 받았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보조금이 어린이집 규제의 수단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고, 급기야 어린이집에 포스터 부착을 통하여 지원 내용 게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강조되면서 기본보조금은 원론적으로 아동별 부모보조금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 도입 과정에서 당초 바우처에 포함한다는 기본 방침과 달리 어린이집 단체의 반대로 바우처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설보조금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 '기본보육료'로 인쇄하여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정부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나. 지원 대상과 기준

1) 내용

기본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며, 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40]·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41]

<표 Ⅳ-1-2>는 반편성별 지원기준과 지원단가를 나타낸다. 특례지역이나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표 Ⅳ-1-2〉 반편성별 지원기준단가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 (초과반영)	최대 지급인원(명)	지급 우선순위	기본보육료 (원)
0세반	1:3 (특례지역 4명)	3	0세아, 장애아	361,000
0, 1세반	1:3 (특례지역 4명)	3	0세아, 장애아	361,000
			1세아	174,000
1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세아, 장애아	174,000
1, 2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세아, 장애아	174,000
			2세아	115,000
2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2세아, 장애아	115,000
2, 3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2세아, 장애아	115,000
			3세	0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지원 기준은 출석일수 구간별로 지원하고 입퇴소월은 일할계산으로 지원한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은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은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25%를 지원한다.

2) 현황

2011년 5, 6, 7월을 기준으로 해당 영아를 보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급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68개소이고, 이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638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21개소 153명이고 민간개인어린이집이 46개

40)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

41) 어린이집 원장 자녀 이외의 아동을 보육 중인 경우에 지원하며,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소 461명이며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 24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어린이집 중 16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고 52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파악되었다(표 Ⅳ-1-3 참조).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는 교사 미배치가 46개소로 가장 많고 21개소가 회계허위보고이고 1개소가 정원초과이었다(표 Ⅳ-1-4 참조).

〈표 Ⅳ-1-3〉 기본보육료 미수령 어린이집과 아동 규모

단위: 개소, 명

구 분	시설 유형			평가 인증		계
	가정	민간개인	직장	받음	안받음	
어린이집수	21	46	1	16	52	68
아동수	153	461	24	203	435	63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5~7). 기본보육료수령 관련 내부자료.

〈표 Ⅳ-1-4〉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

단위: 개소, 명

구 분	교사미배치	정원초과	회계허위보고	계
어린이집수	46	1	21	68
아동수	497	7	119	63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5~7). 기본보육료수령 관련 내부자료.

3) 보육관계자 의견

가) 기본보육료의 성격과 초과보육

현재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한 보조금으로, 시설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바, 부모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중 어느 쪽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질문시 보기로는 보육료 일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해당되므로 시설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형식상 보육료에 해당하나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특정 성격이 강하다 말하기 어려움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공무원들은 시설 보조금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높고 보육정보센터와 학계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이를 부모보조금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그 비율도 26.9% 수준으로 낮다.

〈표 Ⅳ-1-5〉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구분	부모 보조금	시설 보조금	규정하기 어려움	계(수)	$x^2(df)$
전체	16.3	44.0	39.7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17.0	54.5	28.6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16.7	33.3	50.0	100.0(54)	20.1(6)**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6.3	42.2	51.6	100.0(64)	
학계 전문가	26.9	34.6	38.5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1$.

영아 기본보육료를 바우처에 담아서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보육정보센터장들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응답자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Ⅳ-1-6〉 영아 기본보육료부모 보조금화 방안 동의 여부

단위: %(명)

구분	원칙적으로 찬성	반대	계(수)	$x^2(df)$
전체	73.8	26.2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72.3	27.7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85.2	14.8	100.0(54)	4.7(3)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70.3	29.7	100.0(64)	
학계 전문가	69.2	30.8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영아 기본보육료를 바우처에 담아서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 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초과보육을 허용할 경우와 금지할 경우에 따라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와 같은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부모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초과보육아동에게도 기본보육료가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71% 수준으로 찬성 29%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비율은 학계에서 가장 높고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들에게서 가장 낮다(표 Ⅳ-1-7 참조)

그러나 초과보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4%, 반대 46%로 초과보육 인정 시보다 찬성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여 특히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공무원들이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Ⅳ-1-7 참조).

〈표 Ⅳ-1-7〉 영아 기본보육료를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초과보육 허용 시		초과보육 금지 시		계(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29.4	70.6	53.9	46.1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33.9	66.1	43.8	56.3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24.1	75.9	63.0	37.0	100.0(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20.3	79.7	60.9	39.1	100.0(64)
학계 전문가	36.5	63.5	57.7	42.3	100.0(52)
$x^2(df)$	5.7(3)		8.0(3)*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현재 어린이집에서 1, 2세반은 반 정원을 2명까지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아 기본보육료는 정원분까지만 지원한다. 이는 영아 기본보육료가 정원을 반영하여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초과보육 허용 자체, 초과보육 해당 아동 기본보육료 미지급, 초과보육 해당 아동 기본보육료 일부 지급, 초과보육 해당 아동 기본보육료 전액 지급으로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초과아동 허용 자체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은 48% 수준으로 찬반 의견이 맞서는 경향인데, 공무원들이 이를 찬성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월등하게 높고 학계 전문가들이 30% 수준으로 낮다.

초과아동 기본보육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초과아동 기본보육료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에 대해서 20.9%, 전부 지급에 대해서 27.7% 정도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초과보육을 허용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본보육료 미지급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 학계에서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러나 초과 보육이라도 기본보육료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하다(표 Ⅳ-1-8 참조).

〈표 Ⅳ-1-8〉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한 영아 기본보육료 책정이 적절하다는 비율

단위: %(명)

구분	초과아동 허용 자체	초과아동 기본보육료 미지급	초과아동 기본보육료 일부 지급	초과아동 기본보육료 전액 지급	(수)
전체	48.2	60.3	20.9	27.7	(282)
보육담당 공무원	60.7	67.9	25.9	24.1	(112)
보육정보센터장	40.7	57.4	24.1	31.5	(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46.9	65.6	10.9	17.2	(64)
학계 전문가	30.8	40.4	19.2	44.2	(52)
$x^2(df=3)$	14.6**	12.2**	5.9	11.7**	

주: '적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1$.

향후 영아 기본보육료 추진 정책으로 어머니의 취업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각 연령에 적용할 경우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2/3 정도는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두 반대 의견은 공무원들이 41.1%로 가장 낮고 학계에서 11.5%로 가장 높다. 아동 연령별로는 차이 없이 모두 영아가 유사한 수준이다(표 Ⅳ-1-9 참조).

〈표 Ⅳ-1-9〉 어머니의 취업과 연계하여 영아 기본보육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동의 여부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모두 반대	(수)
전체	64.9	66.0	66.7	28.4	(282)
보육담당 공무원	51.8	52.7	53.6	41.1	(112)
보육정보센터장	74.1	72.2	74.1	20.4	(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70.3	68.8	67.2	26.6	(64)
학계 전문가	76.9	84.6	86.5	11.5	(52)
$x^2(df=9)$	14.3**	18.0***	18.2***		

주: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1$, *** $p < .001$.

다. 지원 절차와 조건

1) 내용

지원 절차는 이용현황 확정, 지원금 산출, 지원금 산정,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회계보고 실시, 교사대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사전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산출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보육료 지원금이 산출된다.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 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아동의 전월 이용현황 구간별로 당월 기본보육료 지원금을 생성한다. 입소 또는 퇴소한 아동의 기본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산출하고,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를 산출한다.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를 산출하고, 입소한 당월에 퇴소한 아동은 입소일로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를 산출한다. 초과보육 허용 범위 내의 초과보육아동이 있는 반은 기본보육료 지급금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급금액이 적은 아동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린이집은 2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한다.

시·군·구는 3일간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검토 및 필요시 정정 후 지급을 승인한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시·군·구 승인 후 3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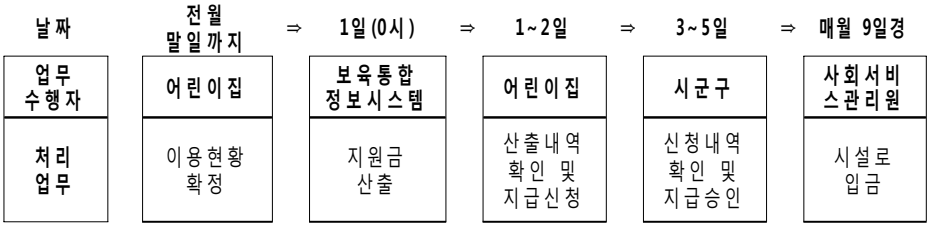

〔그림 Ⅳ-1-1〕 기본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기본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의 4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외에 조만간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데, 지원요건 ①,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하다.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익월에 지원중단월의 기본보육료를 소급지원한다.

월 중간에 운영정지나 시설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본보육료를 운영정지일 또는 시설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2) 보육관계자 의견

현재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은 시·도 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준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다섯 문항 모두 95%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육료 상한선 준수에 대해서만 학계에서 적절하다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표 Ⅳ-1-10 참조)

한편으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인증 통과, 클린카드 사용, 엄격한 회계 보고, 취약보육 제공, 입소 우선순위 적용, 표준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과 같은 7개 항목 각각에 대해 지원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7개 항목 중 엄격한 회계 보고에 대하여 90%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가인증 통과와 클린카드 사용이 8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표준보육과정 운영, 인건비 지급이

80% 이상으로 높다. 취약보육이나 입소우선순위 적용은 각각 58.5%, 68.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응답의 집단간 차이는 입소우선순위와 인건비 지급에서 나타났는데, 입소우선순위는 보육정보센터장들이 85%, 공무원 59%이며, 인건비 지급은 학계가 96.2%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표 Ⅳ-1-11 참조)

〈표 Ⅳ-1-10〉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준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 규칙 회계보고 이행	법령/지침 위반 운영정지 제외	(수)
전체	95.4	97.9	98.2	98.6	99.6	(282)
보육담당 공무원	98.2	98.2	98.2	99.1	99.1	(112)
보육정보센터장	96.3	98.1	96.3	98.1	100.0	(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95.3	98.4	100.0	98.4	100.0	(64)
학계 전문가	88.5	96.2	98.1	98.1	100.0	(52)
$x^2(df)$	7.8*	0.9	2.3	0.4	1.5	

주: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표 Ⅳ-1-11〉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 추가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평가인증 통과	클린 카드 사용	엄격한 회계 보고	취약 보육 제공	입소 우선 순위 적용	표준 보육 과정 운영	인건비 지급	(수)
전체	87.2	87.6	91.1	58.5	68.1	83.3	80.9	(282)
공무원	82.1	84.8	90.2	57.1	58.9	82.1	69.6	(112)
보육정보센터장	90.7	94.4	88.9	53.7	83.3	90.7	90.7	(54)
정보센터 전문요원	87.5	81.3	90.6	62.5	68.8	81.3	79.7	(64)
학계 전문가	94.2	94.2	96.2	61.5	71.2	80.8	96.2	(52)
$x^2(df)$	5.4	7.6	2.1	1.2	10.3*	2.6	20.4***	

주: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 $p < .001$.

라. 환수

1) 내용

지원요건 ① '보육료 상한선 준수'를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초과수납한 아동이 있는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지원요건 ② '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지원요건 ③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지원요건 ④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42]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해당 월 중에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 이후의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환수한다.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한다.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

42) 5일에 기본보육료가 산출되고, 15일부터 운영정지하는 경우 15일~말일까지 남은 보육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수함.

2) 보육관계자 의견

지원 조건 미 준수 시 이미 지급한 영아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데, 이 때 영아가 가장 많은 반 전체의 영아 기본보육료 환수하고, 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며, 해당 월 영아 기본보육료 전체를 환수하는 방식이 적절한 지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받은 기본보육료 전체를 환수한다는 비율에 가장 많은 동의를 표하였다(표 Ⅳ-1-12 참조). 이는 현재 환수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영아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할 경우 환수금액에 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 20%로 반대가 더 많다.

〈표 Ⅳ-1-12〉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 미준수 시 기본보육료 환수 방식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영아가 가장 많은 반	최고 지급액 영아반	기본보육료 전체	모두 반대	사례수
전체	49.6	46.8	61.3	8.9	(282)
보육담당 공무원	52.7	45.5	56.3	8.9	(112)
보육정보센터소장	48.1	48.1	63.0	5.6	(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54.7	57.8	68.8	4.7	(64)
학계 전문가	38.5	34.6	61.5	17.3	(52)
$\chi^2(df=3)$	3.7	6.3**	2.7		

주: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1$.

〈표 Ⅳ-1-13〉 영아 기본보육료 환수 시 환수금액에 이자 부여 방안 동의 여부

단위: %(명)

구분	원칙적으로 찬성	반대	계	$\chi^2(df)$
전체	20.9	79.1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15.2	84.8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25.9	74.1	100.0(54)	5.0(2)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20.3	79.7	100.0(64)	
학계 전문가	28.8	71.2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마. 기본보육료에 대한 부모 인식

기본보육료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영유아 부모 1,081명과 2011년 5~7월 동안 한 달이라도 영아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지 못한 어린이집 부모 43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응답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으로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 시설유형, 평가인증 여부, 어린이집 반 구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아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지 못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그 이유는 교사 미배정인 경우가 68.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회계보고 위반이 18.8%, 행정처분인 경우가 8.0%, 아동 반 미배정이 3.2%, 정원초과 위반이 2.1% 있었다.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상당수는 교사 미배정으로 인한 미수령으로 추정된다(표 Ⅳ-1-14 참조).

〈표 Ⅳ-1-14〉 영아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

단위: %(명)

구 분	교사 미배정	회계보고 위반	행정처분	아동반 미배정	정원초과 위반	계(수)
비율	68.0	18.8	8.0	3.2	2.1	100.0
(사례수)	(297)	(82)	(35)	(14)	(9)	(437)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

둘째, 조사대상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성으로 설립유형은 전체적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약 55%, 가정 어린이집이 약 43%인데, 기본보육료 미지급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약 68%로 많았다.

다음 평가인증 여부는 전체적으로는 받은 기관과 안 받은 기관이 약 50%씩이나, 기본보육료 미지급 아동 이용 중 약 76%가 평가인증 미통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급 시설은 민간개인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미통과 어린이집일 가능성이 높다(표 Ⅳ-1-15 참조).

〈표 Ⅳ-1-15〉 응답자 이용 어린이집 유형과 평가인증 여부

단위: %(명)

구 분	시설유형			평가인증		계(수)
	민간개인	가정	기타	받았음	안 받았음	
지급	50.0	48.4	1.6	60.2	38.7	100.0(1,081)
미지급	67.5	29.1	3.4	23.6	76.4	100.0(437)
전체	55.1(835)	42.8(649)	2.1(32)	49.7(753)	49.6(752)	100.0(1,51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

셋째, 이들 아동의 반 편성 특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지급 어린이집이 오히려 혼합반 비율이 낮은 경향이다.

〈표 Ⅳ-1-16〉 어린이집 반구분

단위: %(명)

구 분	0세반	1세반	2세반	0, 1세반	1, 2세반	2, 3세반	기타	모름	계(수)
지급	12.0	25.2	38.6	7.8	11.1	4.2	1.0	0.1	100.0(1,081)
미지급	13.3	22.9	43.5	3.0	9.6	2.5	0.2	5.0	100.0(437)
전체	12.3	24.5	40.0	6.4	10.7	3.7	0.8	1.5	100.0(1,51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

이상과 같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기본보육료에 대한 인지, 이용 및 효과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보육료 관련 정보 인지

가) 기본보육료 수혜여부 인지

영아 부모들은 영아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대체로 잘 모른다. <표 Ⅳ-1-17>은 부모들의 영아 기본보육료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인데, 66.4%가 전혀 모른다 또는 들어보긴 했으나 잘 모른다고 대답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미지급 부모가 오히려 잘 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Ⅳ-1-17〉 영아 기본보육료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들어보긴 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수)	$\chi^2(df)$
지급	8.7	24.1	16.5	50.7	100.0(1,081)	4.365(3)
미지급	11.7	24.0	17.8	46.5	100.0(437)	
전체	9.6	24.1	16.9	49.5	100.0(1,518)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다음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표 Ⅳ-1-18>은 기본보육료 지원의 실제와 부모의 인지를 상호교차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부모들이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는 경우 36.7%, 지원받지 않는 경우 13.3%이다. 한편 지원받고 있는데 안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6.8%, 안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33.0%로 지원받지 않는 경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표 Ⅳ-1-18 참조).

〈표 Ⅳ-1-18〉 영아 기본보육료 수령여부별 지원에 대한 인지

단위: %(명)

구 분	지원 받는다	안 받는다	지원 받는지 아닌지 모른다	계(수)	$\chi^2(df)$
지급	36.7	6.8	56.6	100.0(1,081)	16.926(2)***
미지급	33.0	13.3	53.8	100.0(437)	
전체	35.6	8.6	55.8	100.0(1,518)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 $p < .001$.

〈표 Ⅳ-1-19〉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받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지원 조건 미충족	초과보육	기타	모름	계(수)
지급	84.9	4.1	1.4	9.6	100.0(75)
미지급	75.9	3.4	8.6	12.1	100.0(58)
전체	80.9	3.8	4.6	10.7	100.0(132)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나) 기본보육료 금액 인지

영아 기본보육료 금액은 영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지원 부모 91.1%, 미지원 부모 87.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Ⅳ-1-20 참조).

〈표 Ⅳ-1-20〉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액수 인지

단위: %(명)

구 분	안다	모른다	계(수)
지급	8.9	91.1	100.0(1,079)
미지급	12.6	87.4	100.0(437)
전체	8.6	91.4	100.0(1,516)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에 기본보육료 액수가 제시되어 나오고 있다. 보육료 결제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약 78% 정도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다. 그 외에 어린이집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각각 14.5%, 11.0% 있었고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10.5%이다(표 Ⅳ-1-21 참조).

〈표 Ⅳ-1-21〉 보육료 결제 방법

단위: %(명)

구 분	아이사랑 카드로	일반 신용카드로	어린이집 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기타	계(수)
지급	78.0	1.1	14.5	6.2	0.2	100.0(1,080)
미지급	77.3	1.1	11.0	10.5	-	100.0(437)
전체	77.8	1.1	13.5	7.4	0.1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기본보육료 금액을 부모들이 인식하고 확인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50%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의 반 정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컸다. 즉,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로 더 많았고, 확인하고 있는 경우도 42.9%로 더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급 시설이 일시 정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를 잘 안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영수증에 기록

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4.4%이다(표 Ⅳ-1-22 참조).

〈표 Ⅳ-1-22〉 보육료 결제 영수증의 기본보육료 정보 인식

단위: %(명)

구 분	알고 확인	알지만 확인하지 않음	모른다	영수증에 나오지 않음	계(수)	$\chi^2(df)$
지급	18.8	21.3	54.5	5.5	100.0(842)	81.750(3)***
미지급	42.9	20.7	34.6	1.8	100.0(338)	
전체	25.7	21.1	48.8	4.4	100.0(1,180)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 $p < .001$.

2)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자의 영아 기본보육료 수령 여부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으며, 극히 일부 어린이집만이 일정 단기 기간 동안만 수령이 정지되기 때문에 실제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 이용자 특성 차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 온 이후에 주로 돌봐주는 사람으로는 부모가 8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가 13.4%로 많았다. 기본보육료 지급 대상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Ⅳ-1-23 참조).

〈표 Ⅳ-1-23〉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후 주 양육자

단위: %(명)

구 분	부모	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기타 성인	형제 자매	없음	계(수)
지급	85.1	12.9	0.6	0.6	0.1	0.6	0.1	100.0(1,080)
미지급	82.8	14.9	0.5	0.5	-	1.4	-	100.0(437)
전체	84.4	13.4	0.5	0.6	0.1	0.9	0.1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영아 기본보육료 외에 보육료 감면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73.2%가 전액 면제를 받고 있었고, 5.3%가 일부 감면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앙정부 사

업 지원자는 모두 전액지원이고 일부 감면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모들의 인지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이유가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서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음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보육료 지급 대상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Ⅳ-1-24 참조).

<표 Ⅳ-1-25>는 이들의 실제 보육료 지원 자격인데, 이를 보면 71.1%가 전액지원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영아 기본보육료 미지급 아동이 법정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다문화 가족 아동일 비율이 다소 높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표 Ⅳ-1-24〉 보육료 감면 여부: 부모 응답

단위: %(명)

구 분	전액 면제	일부 감면	일반	계(수)	$\chi^2(df)$
지급	73.5	5.0	21.5	100.0(1,080)	0.856(2)
미지급	72.5	6.2	21.3	100.0(437)	
전체	73.2	5.3	21.4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표 Ⅳ-1-25〉 보육료 지원 자격: 실제

단위: %(명)

구 분	영유아(법정)	영유아	기타(장애아, 다문화)	일반아동	계(수)	$\chi^2(df)$
지급	2.4	67.6	1.3	28.7	100.0(1,080)	11.487(3)**
미지급	4.1	63.2	3.4	29.3	100.0(436)	
전체	2.9	66.3	1.9	28.9	100.0(1,516)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
** $p < .01$.

나) 이용 일수

월~금요일 평일에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아 기본보육료를 받는 아동과 받지 않는 아동 모두 약 92%가 5일 모두 종일 이용한다고 답해 대부분이 주중에 매일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6 참조).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토요일 91.2%, 일요일 99.3%로 대부분이었고,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에 따른 아동간 차이는 없었다(표 Ⅳ-1-27 참조).

즉, 기본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되었고, 표준보육비용은 종일제 주 6일 보육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6〉 평일(월~금) 어린이집 이용 실태

단위: %(명)

구 분	5일 모두 종일	5일 이용 가끔 종일	3~4번 이용	1~2번 이용	필요시 가끔 이용	기타	계(수)
지급	92.2	1.3	0.9	0.2	0.4	5.0	100.0(1,080)
미지급	92.0	1.4	1.4	-	0.2	5.0	100.0(437)
전체	92.2	1.3	1.1	0.1	0.3	5.0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표 Ⅳ-1-27〉 주말 어린이집 이용 실태

단위: %(명)

구 분		매주 이용	격주 이용	필요시 가끔 이용	이용하지 않음	계(수)	$\chi^2(df)$
토요일	지급	2.1	1.9	4.1	91.9	100.0(1,080)	4.895(3)
	미지급	3.4	3.2	4.1	89.2	100.0(437)	
	전체	2.5	2.2	4.1	91.2	100.0(1,517)	
일요일	지급	-	0.1	0.2	99.7	100.0(1,080)	na
	미지급	0.5	0.7	0.7	98.2	100.0(437)	
	전체	0.1	0.3	0.3	99.3	100.0(1,517)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3) 서비스 수준 인식

영아 부모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7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4점 만점 기준으로 교사의 자질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3.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외 설비가 2.7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43]

기본보육료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차이는 7개 항목 중 한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한 항목은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점수가 가장 낮은 실외 설비로, 영아 기본보육료 지급 어린이집보다 미지급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오히려 긍정적 응답이

43) 각 항목별 응답 백분율 분포는 〈부표 Ⅳ-1-3〉참조

더 많았다. 이외 급간식의 질은 지급 어린이집이서 미지급 어린이집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1-28〉 보육비용 대비 보육서비스 수준 점수

단위: 점(명)

구 분	지급	미지급	전체 (표준편차)	t
교재교구 다양성 및 충분성	2.67	2.78	2.70 (1.45)	-1.37
급간식의 질	2.85	2.71	2.91 (1.39)	1.79#
프로그램 등 보육활동 다양성	2.91	2.97	2.92 (1.14)	-0.96
교사의 자질과 긍정적 상호작용	3.16	3.10	3.14 (0.86)	1.14
건강관리 및 안전한 보호	3.07	3.04	3.06 (0.86)	0.66
실내 환경이 쾌적한 정도	3.08	3.10	3.09 (0.83)	0.55
실외 설비(장치)	2.65	2.80	2.69 (1.36)	-2.05*
(수)	(1,079)	(437)		

주: 매우 적절함(4점)~많은 개선이 필요함(1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 $p < .1$, * $p < .05$.

바. 기본보육료의 효과성

보육관계자 조사와 부모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기본보육료 지급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부모 대상 효과

가) 긍정적 측면

대체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영아 보육아동 증가 등 영아보육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는데,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이 영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영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일하는 엄마 지원으로 여성 취업에 기여, 부모 비용 부담 완화로 출산에 기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또는 근무환경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영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취업 기여에 대한 효과 있음 비율이 70.9%로 높았다. 한편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교직원 인건비 지급 또는 근무환경 향상에 대해서는 효과 있음이 각각 52.8%, 55.7%로 반 수 정도이었다. 출산에 기여

한다는 40.1%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학계에서 질적 수준 제고나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효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1-29〉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효과: 보육관계자 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접근성 제고	질적 수준 제고	여성 취업에 기여	출산에 기여	교직원 근무 환경
전체	(282)	85.1	52.8	70.9	40.1	55.7
공무원	(112)	80.4	51.8	72.3	45.5	65.2
보육정보센터장	(54)	87.0	55.6	70.4	31.5	44.4
정보센터전문요원	(64)	87.5	37.5	65.6	35.9	37.5
학계	(52)	90.4	71.2	75.0	42.3	69.2

주: 각각에 대하여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부모의 입장에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이용 및 선택, 어머니 취업활동,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과 어머니 취업활동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42.3%, 42.2%로 많았다. 한편 어린이집 선택과 추가 출산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 지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3.0%, 37.3%로 많았다.

〈표 Ⅳ-1-30〉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 부모 응답

단위: %(명)

구 분	많음	다소	약간	전혀 무관함	계(수)
어린이집 이용	42.3	22.8	14.3	20.6	100.0(1,515)
어린이집 선택	29.6	22.1	15.3	33.0	100.0(1,517)
어머니 취업활동	42.2	19.1	13.8	24.9	100.0(1,517)
추가 출산	33.8	16.7	12.1	37.3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기본보육료 지급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여부, 어머니 취업활동, 추가 출산에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부표 Ⅳ-1-4, Ⅳ-1-5, Ⅳ-1-6 참조), 다만 어린이집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현재 기본보육료 지급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현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기관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33.2%로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표 Ⅳ-1-31 참조).

〈표 Ⅳ-1-31〉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 어린이집 선택

단위: %(명)

구 분	많음	다소	약간	전혀 무관함	계(수)	$\chi^2(df)$
지급	28.1	21.8	14.8	35.3	100.0(1,080)	9.592(3)*
미지급	33.2	23.1	16.5	27.2	100.0(437)	
전체	29.6	22.1	15.3	33.0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 $p < .05$.

<표 Ⅳ-1-32>는 모의 취업상태를 영아 기본보육료 지급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본 것으로 차이는 없었다. 미취업인 상태(교육훈련 중, 구직 중 포함)가 약 48%, 종일제로 출근하는 경우가 약 30%, 시간제로 출근하는 경우가 약 10%이었으며 취업 중인 경우 약 61%가 정규직이었다.

〈표 Ⅳ-1-32〉 모의 취업상태

단위: %(명)

구 분	종일제	시간제	휴직중	자영업	재택 직업	교육 훈련	구직중	미취업	계(수)	$\chi^2(df)$
지급	30.4	9.9	2.8	8.3	1.2	0.5	0.8	46.1	100.0(1,078)	4.6(7)
미지급	27.4	10.1	3.4	7.4	1.6	0.2	1.6	48.3	100.0(435)	
전체	29.5	10.0	3.0	8.0	1.3	0.4	1.1	46.7	100.0(1,513)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나) 부정적 측면

한편으로 보육관계자들은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과 영아의 발달측면에서 영아 기본보육료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원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가정에서까지 과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전업주부와 같은 미취업모로 하여금 가정내 양육보다는 시설 이용을 조장하게 하고 이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둘째, 영아의 발달 측면에서 너무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짐으로써 부

모와의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종일제 어린이집에서의 장시간 보육으로 인하여 아동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기본보육료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만, 상황은 부모의 기대치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는 의견과 부모들 중에는 본인들이 받아야 할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분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어린이집 운영

가) 긍정적 측면

어린이집 운영상 영아 기본보육료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영아 기본보육료를 받지 않으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교사의 급여나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표 Ⅳ-1-33>은 영아 기본보육료 수혜여부별 아동이 지불하였다는 특별활동 비용과 특별활동 이외 추가 납부액 조사 결과이다. 특별활동 비용은 각각 38천원, 45천원이고 특별활동 이외 추가 납부액은 각각 10천원, 20천원으로 영아 기본보육료를 받는 영아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요인들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하여 순수한 보육료 이외 추가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음은 기본보육료가 부모 부담 완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Ⅳ-1-33〉 특별활동 및 기타 비용 수납액

단위: 천원(명)

구 분	지급	미지급	전체(표준편차)	t
특별활동 비용	38.1	44.8	40.0(89.8)	1.5
특별활동이외 추가 납부액	10.2	19.6	12.9(71.0)	2.3*
(수)	(1,079)	(437)	(1,516)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 $p < .05$.

나) 부정적 측면

보육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 있어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정책의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통한 영아보육의 질 제고라는 영아 기본보육료의 주 목적의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현재 기본보육료는 기관에 지급되고 있고 교사 인건비나 환경개선비가 아닌 기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실제 보육서비스와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영아반 기본보육료이므로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나 영아반 보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는데, 기본보육료 사용에 대한 지침이나 제한이 없어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여 실제 보육을 하는 교사들의 처우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질 높은 인력을 사용할 수 없기에 영아 보육서비스 개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의 자발적 증가보다는 공급의 증가가 수요를 확대, 창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부모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액지원 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3) 양육수당과 보육서비스 이용 대체 의견

현재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적용하며,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의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지원 상태에서는 90.3%가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8.7%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였고 그 중 7.3%는 어머니가 집에서 직접 돌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양육수당을 받게 되어도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급여액을 보육료 지원 수준으로 늘릴 경우 어린이집 이용 의사를 다시 물어본

결과, 76.3%는 그래도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2.3%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중 20.2%는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였다(표 Ⅳ-1-35 참조).

〈표 Ⅳ-1-34〉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

단위: %(명)

구 분	계속 어린이집에 보냄	이용 중단, 어머니가 직접	이용 중단, 다른 식구가 돌보게 함	이용 중단, 다른 곳에 보냄	이용 중단, 보육모가 돌보게 함	모르겠음	계(수)
지급	90.3	8.0	0.8	0.3	0.3	0.4	100.0(1,080)
미지급	90.4	5.7	1.4	0.7	0.7	1.1	100.0(437)
전체	90.3(1,370)	7.3(111)	1.0(15)	0.4(6)	0.4(6)	0.6(9)	100.0(1,517)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표 Ⅳ-1-35〉 양육수당 급여액 증가 시 어린이집 이용 의사

단위: %(명)

구 분	계속 어린이집에 보냄	이용 중단, 어머니가 직접	이용 중단, 다른 식구가 돌보게 함	이용 중단, 다른 곳에 보냄	이용 중단, 보육모가 돌보게 함	모르겠음	계(수)
지급	74.6	20.2	3.4	1.3	0.4	0.1	100.0(975)
미지급	80.5	15.4	2.3	1.3	0.5	-	100.0(395)
전체	76.3	18.8	3.1	1.3	0.4	0.1	100.0(1,370)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표 Ⅳ-1-36〉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할 경우 직장 중단과 자녀 돌봄 의향

단위: %(명)

구 분	그렇다	수당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은 계속 다님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지급	65.3	32.9	1.9	100.0	3.900(2)
미지급	58.7	37.2	4.1	100.0	
전체	63.4	34.1	2.5	100.0(601)	

자료: 본「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자료

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할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3.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표 Ⅳ-1-36 참조).

5) 요약 및 논의

가) 기본보육료 정책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 정보센터 전문요원, 학계 전문가 282명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관계자들은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영아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따라서 초과보육 아동에게 기본보육료를 주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경향이다. 어린이집과 직접 부딪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의식이 더 강하다. 기본보육료가 어느 정도 어린이집 통제 수단으로 작동함을 반영한다 하겠다. 둘째, 영아 기본보육료를 부모보조금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초과보육 허용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 즉, 초과보육을 인정하면서 부모보조금화 하여 초과보육아동에까지 기본보조금을 주는 것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보육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셋째, 현재 기본보육료 조건들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클린카드 사용, 평가인증 통과와 같은 기본적 조건들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넷째, 부적절한 기본보육료 지급분 환수는 지금보다 강화하여, 어린이집 전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아 기본보육료를 부모의 취업과 연계하거나 환수 시 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특히 영아보육과 어머니 취업의 연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사실상 실천하기 쉽지 않고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모 인지 및 보육서비스 이용

한편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기본보육료 금액을 부모들의 인식하고 확인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50%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의 반 정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보육료 액수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영아 기본보육료 수령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의 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으며, 극히 일부 어린이집만이 일정 단기 기간 동안만 수령이 정지되기 때문에 실제 영향도 크지

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 기본보육료를 받는 아동이나 아니나 모두 월~금요일 평일에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2%가 5일 모두 종일 이용한다고 답해 대부분이 주중에 매일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어린이집 이용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토요일 91.2%, 일요일 99.3%로 대부분이었고, 기본보육료 지원 여부에 따른 아동간 차이는 없었다. 즉, 기본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되었고, 표준보육비용은 종일제 주 6일 보육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본보육료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만족도 차이는 미미하다. 조사된 7개 항목 중 한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한 항목은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실외 설비로, 영아 기본보육료 지급 어린이집보다 미지급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긍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이외 급간식의 질은 지급 어린이집에서 미지급 어린이집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긍·부정적 효과

기본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어린이집 이용과 어머니 취업활동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모두 42% 정도이고 어린이집 선택과 추가 출산은 기본보육료 지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3.0%, 37.3% 정도이었다.

그러나 영아 기본보육료 수혜여부별 아동이 지불하였다는 특별활동 비용과 특별활동 이외 추가 납부액은 미 수혜 시설이 각각 10천원, 20천원으로 영아 기본보육료를 받는 영아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요인들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하여 순수한 보육료 이외 추가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음은 부모 부담 완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기본보육료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육관계자와 부모 모두 재정 지원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서비스의 질과 연계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이윤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아 중심 어린이집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성이 희박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초래를 우려하였다.

라) 양육수당 대체 효과

현재 수준으로는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대체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22.3%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며 20.2%는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여서 약 20% 정도의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취업모 중 63.4%는 지원금이 충분하다면 직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양육수당이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여성 노동 공급에 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가. 정의 및 대상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외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① 전월[44] 말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②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45]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③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건 및 급식 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처분[46]이 이루어졌거나 지자체에서 해당 사실 발생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수한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

44)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임

45) 행정처분은 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에 해당하는 처분,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보조금 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이상 부과(처분)을 말하며, 시점 계산방법은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1년 5월 12일인 경우, 그 전월인 2011년 4월 30일부터 역순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기산함.

46) 행정처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함.

나. 신청자격

1) 내용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기본 신청 자격은 민간개인어린이집에는 세 가지 조건 모두, 가정어린이집에는 첫째와 둘째의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된다.

첫째,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이여야 한다.[47] 둘째,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48] 셋째,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현원[49]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만 가능하다.

이외 추가되는 자격 기준은 ① 놀이터 설치 여부, ②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 ③ 어린이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 형태, ④ 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 ⑤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비율, ⑥ 시·도별 특성화 지표로, 이들은 점수에 반영된다.

2) 보육관계자 의견

민간개인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평균 50.0% 이상,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 상 유아 현원이 전체현원의 평균 30.0% 이상 조건을, 가정어린이집은 앞의 두 가지 조건만 적용하고 유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 80%는 적절, 20% 정도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었다. 학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민간어린이집 조건 42.3%, 가정어린이집 조건 38.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

47) 다만, 2011년도 1, 2, 3기('06년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재참여)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함.

48)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11년도 5월인 경우 2010년도 7, 8, 9, 10, 11, 12월의 말일의 정원 충족률의 평균을 산정함.

49)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 아동은 제외.

〈표 Ⅳ-2-1〉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 신청자격 기준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민간개인	가정	(수)
전체	79.8	80.5	(282)
보육담당 공무원	86.6	87.5	(112)
보육정보센터장	81.5	83.3	(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84.4	81.3	(64)
학계	57.7	61.5	(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사항은 정원 충족률이다. 정원이 제대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그램 실시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정원 충족률을 유아 현원 비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낮다는 의견이다. 또한 유아 현원 유지 비율이 30%는 가정어린이집에도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 이는 영아는 기본보육료도 지원하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가정어린이집들도 지원 자체보다는 공공형이라는 명분을 중요시 한다.

〈표 Ⅳ-2-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가인증 점수	2.1	2.8	7.1	30.9	57.1	100.0(282)
놀이터 구비	1.8	6.7	19.5	34.8	37.2	100.0(282)
비상재해대비시설	1.8	1.4	6.4	23.0	67.4	100.0(282)
건물 소유형태	1.4	6.7	22.7	34.8	34.4	100.0(282)
1급 보육교사 비율	1.8	2.8	13.5	36.5	45.4	100.0(282)
원장 경력	3.5	4.6	25.5	36.9	29.4	100.0(282)
수상 실적	6.7	18.8	45.7	20.6	8.2	100.0(282)
보육료지원아 비율	5.3	8.9	33.0	33.7	19.1	100.0(282)
특성화 지표	2.8	1.8	36.5	42.6	16.3	100.0(28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다음으로 추가 조건인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건물 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 경력, 수상 실적, 보육료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의 아홉 가지 선정 기준 항목의 적절성을 질문하였는데, 이 중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비상재해대비시설로 67%이고 다음이 평가인증 점수로 57% 수준이며, 1급 보육교사 비율이 45%이다. 이외는 놀이터, 건물소유형태가 30%대이고, 가장 낮은 것은 상을 받은 실적으로 단지 8.2%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1/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육료지원아 비율도 매우 적절하다는 비율이 19% 정도이다(표 Ⅳ-2-2 참조).

5점 점수로 보아도 비상재해대비시설 4.53점, 평가인증 점수 4.38점, 1급 보육교사 비율 4.21점으로 4점 이상이고 수상 실적은 3.05점, 보육료 지원아 비율 3.5점으로 낮다(표 Ⅳ-2-3 참조).

〈표 Ⅳ-2-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평균 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건물소유형태	1급 교사 비율	원장 경력	수상 실적	보육료 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
전체	4.38	3.99	4.53	3.94	4.21	3.84	3.05	3.52	3.68
공무원	4.26	3.69	4.31	3.79	4.06	3.72	3.11	3.38	3.66
보육정보센터장	4.52	4.22	4.67	4.22	4.39	4.02	3.11	3.81	3.76
전문요원	4.27	4.06	4.63	3.98	4.17	3.84	3.11	3.59	3.64
학계	4.63	4.31	4.73	3.92	4.38	3.90	2.77	3.44	3.67
F	2.9*	6.6***	4.6**	2.5	2.4	1.1	1.7	2.2	0.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영유아 안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바람직한 기준 선정으로 보며 평가인증은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므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1급보육교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그러나 1급 교사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경력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상 실적과 보육료 지원아 비율에 대해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들이 주로 수상하는데 원장이 상을 받았다거나 지원아동 비율이 높은 것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는 관련짓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응답자 집단간의 차이는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세 항목에서만 유의하다. 평가인증 점수는 공무원과 전문요원에 비하여 정보센터장

과 학계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고, 놀이터 구비는 공무원이 현저하게 낮으며 학계가 가장 높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공무원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여 낮다. 즉, 이러한 차이는 현장에서 어린이집과 직접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의 어려운 입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학계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겠다(표 Ⅳ-2-3 참조).

다. 선정 요건

1) 내용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점수 산정에는 평가인증 점수가 45점이라는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고 이외에 여섯 가지 추가 자격 조건이 추가되어 점수로 환산, 적용된다. 이는 ① 놀이터 설치 여부 5점, ②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여부 5점, ③ 어린이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 형태 10점, ④ 교직원 전문성으로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원장의 경력 10점, 수상실적 5점 등 총 25점, ⑤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비율 5점, ⑥ 시·도별 특성화 지표 5점이다. 시·도별 특성화 지표는 시·도별로 지역적 여건, 보육정책 방향, 중점 추진 시책, 민간 개인·가정어린이집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표 Ⅳ-2-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및 배점

항목	기본	가점	감점
① 평가인증 점수	45점		
ㅇ 평가인증 점수 95점 ~ 100점	45점	5점	
ㅇ 평가인증 점수 90점 ~ 94.99점	45점		
ㅇ 평가인증 점수 85점 ~ 89.99점	40점		
ㅇ 평가인증 점수 85점 미만	35점		
ㅇ 2005 ~ 2009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3점	
② 놀이터 구비	5점		
ㅇ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터 구비시 - 실외, 실내, 옥상, 인근놀이터 인정	5점		
ㅇ 어린이집 자체부지에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구비된 실외놀이터 구비시		3점	
③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5점		
ㅇ 별표의 기준 충족시	5점		
ㅇ 별표의 기준 미 충족시	0점		

(표 Ⅳ-2-4 계속)

항목	기본	가점	감점
④ 건물 소유형태	10점		
ㅇ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ㅇ 자가 복합 어린이집	8점		
ㅇ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ㅇ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ㅇ 월 융자 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1점
ㅇ 월 융자 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0% 미만			3점
ㅇ 월 융자 이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5점
⑤ 보육교직원 전문성	25점		
ㅇ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 60% 이상	10점		
- 50.0% 이상 60% 미만	6점		
ㅇ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점		
- 5년 미만	5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7점		
- 10년 이상	10점		
ㅇ 원장·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최대 5점		
* 건당 훈·포장 3점,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건당 1.5점, 해당부처 장관상 1점, 시·도지사상 0.5점, 시·군·구장상 건당 0.3점(그 외 불인정)			
ㅇ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3점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30% 이상		3점	
- 원장의 최종 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3점	
⑥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보육료지원 영유아/현원)	5점		
ㅇ 60% 이상	5점		
ㅇ 50% 이상 60% 미만	4점		
ㅇ 40% 이상 50% 미만	3점		
ㅇ 35% 이상 40% 미만	2점		
ㅇ 35% 미만	1점		
⑦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 시·도에서 자체 설정	5점		
계	100점	17점	8점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총점 100점 이외에 가점과 감점을 두고 있다. 가점은 평가인증 점수 95점 이상 및 재인증시 총 8점, 어린이집 자체부지에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구비된 실외놀이터 구비시 3점,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30% 이상 3점, 원장의 최종 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3점 등 총

17점이며, 감점은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최대 3점 감점, 월 융자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으로 나누어 각 1, 3, 5점으로 최대 8점이 감점된다.

평가인증 점수를 포함한 이러한 조건들은 점수화하여 총 80점을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결정된다.

2) 보육관계자 의견

가) 항목별 점수 배분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건물 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 경력, 수상 실적, 보육료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의 아홉 가지 항목의 100점의 점수를 배점한 비중의 적절성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에,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평가인증인데 30.5%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 비율도 10% 이상이다. 비상재해대비시설, 1급 보육교사 비율, 건물소유 형태는 19~20% 정도가 매우 적절하다고 하였고, 가장 낮은 것은 교사나 원장이 상을 받은 실적으로 단지 7.8%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1/3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놀이터 구비, 원장경력, 보육료 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도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은 낮다(표 Ⅳ-2-5 참조).

〈표 Ⅳ-2-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항목별 점수 배점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가인증 점수	1.8	8.5	17.7	41.5	30.5	100.0(282)
놀이터 구비	5.7	19.1	27.3	35.5	12.4	100.0(282)
비상재해대비시설	4.3	17.0	22.7	36.9	19.1	100.0(282)
건물 소유형태	2.8	12.4	26.6	38.3	19.9	100.0(282)
1급 보육교사 비율	2.1	7.1	23.8	47.9	19.1	100.0(282)
원장 경력	3.5	14.2	35.5	34.8	12.1	100.0(282)
수상 실적	9.6	23.4	38.7	20.6	7.8	100.0(282)
보육료지원아 비율	4.6	13.5	37.2	33.3	11.3	100.0(282)
특성화 지표	1.1	10.3	40.4	34.8	13.5	100.0(28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표 Ⅳ-2-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건물소유형태	1급 교사 비율	원장 재직 경력	수상 실적	보육료 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
전체	3.90	3.30	3.50	3.60	3.75	3.38	2.94	3.33	3.49
공무원	3.90	3.57	3.72	3.61	3.75	3.41	3.04	3.29	3.46
보육정보센터장	4.07	3.59	3.61	3.78	3.96	3.59	3.06	3.70	3.78
전문요원	3.78	3.02	3.23	3.63	3.55	3.34	2.97	3.30	3.47
학계	3.88	2.75	3.21	3.37	3.77	3.12	2.54	3.10	3.29
F	0.9	10.5***	4.2**	1.5	2.0	2.2	3.1	3.7*	2.9*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 $p < .01$, *** $p < .001$.

5점 점수로 보면 평가인증 점수 3.9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75점, 건물소유형태 3.60점, 비상재해대비시설 3.50점으로 3.5점 이상이고, 수상 실적은 2.94점으로 나타났다. 놀이터 구비, 원장경력, 보육료 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는 3.3~3.5점 사이에 분포한다(표 Ⅳ-2-6 참조).

이러한 응답의 응답자 집단별 차이는 F값의 유의도를 중심으로 보면 9개 항목 중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보육료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놀이터 구비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과 학계에서 적절성 점수가 낮고, 보육료지원아 비율과 특성화 지표는 보육정보센터장들의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이외 6개 항목은 대체로 의견 차이가 적다(표 Ⅳ-2-6 참조).

<표 Ⅳ-2-7>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점수 배점의 변경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이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비율이 대부분 50%에 다소 못 미치거나 50% 이상인데, 수상실적은 약 30%만이 현행유지를 선택하고 그 이외는 변화를 요구하였다. 변경되기를 바라는 비율은 강화되어야 하다는 항목은 평가인증 점수와 비상재해대피시설이 각각 42% 수준이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수상실적이 41%, 원장 경력이 25%로 비교적 높으며 건물소유형태나 보육료 지원아 비율이 19% 수준이다. 삭제 항목으로 선택한 비율은 수상실적이 22.7%로 가장 높고, 보육료 지원아 비율이 12.4%이다(표 Ⅳ-2-7 참조).

〈표 Ⅳ-2-7〉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점수 배정 변경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평가인증 점수	52.1	42.2	5.3	0.4	100.0(282)
놀이터 구비	49.6	33.0	15.2	2.1	100.0(282)
비상재해대비시설	53.2	42.6	3.9	0.4	100.0(282)
건물 소유형태	48.6	30.1	19.5	1.8	100.0(282)
1급 보육교사 비율	51.8	35.1	12.4	0.7	100.0(282)
원장 재직 경력	53.9	17.7	25.2	3.2	100.0(282)
수상실적	29.8	6.7	40.8	22.7	100.0(282)
보육료지원아 비율	48.6	19.1	19.9	12.4	100.0(282)
특성화 지표	57.1	23.0	13.5	6.4	100.0(28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표 Ⅳ-2-8>은 특히 추가 조건으로 평가인증 점수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인데 특히 학계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63.5%로 매우 높고, 보육정보센터장도 53.7%이나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은 41~44%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

〈표 Ⅳ-2-8〉 평가인증 점수 하한선을 두는 방안 찬성 비율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무응답	계(수)
전체	48.2	51.8	100.0(282)
공무원	41.1	58.9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3.7	46.3	100.0(54)
전문요원	43.8	56.2	100.0(64)
학계	63.5	36.5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나) 항목내 배점

다음은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재해대비시설, 건물 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 경력, 수상 실적, 보육료지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의 아홉 가지 항목에 배당된 점수를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표 Ⅳ-2-9〉 보육서비스 질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가인증 점수	4.6	15.2	21.3	42.2	16.7	100.0(282)
놀이터 구비	5.0	14.2	31.6	36.5	12.8	100.0(282)
비상재해대비시설	2.5	12.4	20.2	37.9	27.0	100.0(282)
건물 소유형태	3.5	19.9	26.2	33.0	17.4	100.0(282)
1급 보육교사 비율	1.8	11.7	28.4	41.5	16.7	100.0(282)
원장 경력	3.5	12.8	33.7	36.9	13.1	100.0(282)
수상 실적	12.4	19.9	41.1	19.5	7.1	100.0(282)
보육료지원아 비율	6.7	12.8	29.4	36.5	14.5	100.0(282)
특성화 지표	1.8	9.6	39.0	34.0	15.6	100.0(28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0, 5점으로 부여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로 27%이고, 가장 낮은 것은 최대 5점까지 부여하는 수상 실적 점수로 7.1%이며 이외는 모두 10%대이다.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수상실적은 32% 정도로 가장 높고, 건물소유형태, 평가인증점수, 놀이터 구비, 보육료 지원아 비율 등도 약 20% 정도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9 참조).

5점 점수로 보면 대체로 3.3점 이상인데 수상 실적은 2.89점으로 나타났다(표 Ⅳ-2-10 참조).

〈표 Ⅳ-2-10〉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 배점의 적절성 평균

단위: 점

구분	평가 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건물 소유 형태	1급 교사 비율	원장 경력	수상 실적	보육 료지 원아 비율	특성화 지표
전체	3.51	3.38	3.74	3.41	3.60	3.43	2.89	3.39	3.52
공무원	3.77	3.47	3.78	3.49	3.63	3.46	2.96	3.34	3.46
보육정보센터장	3.61	3.72	3.81	3.56	3.63	3.56	2.91	3.56	3.83
전문요원	3.33	3.34	3.67	3.34	3.64	3.52	3.08	3.52	3.52
학계	3.08	2.87	3.69	3.15	3.42	3.13	2.48	3.19	3.35
F	6.0**	7.0***	0.3	1.6	0.7	2.1	3.4*	1.3	2.9*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 집단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항목별 점수 배점에 대한 적절성 의견이 낮았다. 공무원, 보육정보센터소장이나 전문요원들에 비하여 차이를 나타냈는데, 통계적 유의도는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 구비, 수상실적, 특성화 지표의 네 가지 항목에서 나타났다(표 Ⅳ-2-10 참조).

다) 가감점

다음 <표 Ⅳ-2-11>은 가감점에 대한 의견이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최대 3점까지 부여되는 평가인증 재인증 가점이 약 20%로 가장 높다. 다음은 상환액·임대료 감점이 약 10% 정도이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교직원 전문성 가점 6점으로 74.1%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표 Ⅳ-2-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항목에 대한 가점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가인증 가점	2.5	17.4	20.6	42.9	16.7	100.0(282)
놀이터 구비 가점	0.4	7.4	20.6	44.7	27.0	100.0(282)
교직원 전문성 가점	0.4	2.5	13.1	47.9	36.2	100.0(282)
상환액·임대료 감점	3.2	6.7	28.4	40.1	21.6	100.0(282)
보수교육 미이수 감점	2.1	5.7	15.6	44.0	32.6	100.0(28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표 Ⅳ-2-1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세부 항목에 대한 가점 적절성 평균 점수

단위: 점

구분	평가인증 가점	놀이터 구비 가점	교직원 전문성 가점	상환액· 임대료 감점	보수교육 미이수 감점
전체	3.54	3.90	4.17	3.70	3.89
공무원	3.51	3.85	4.29	3.68	3.88
보육정보센터장	3.50	4.09	4.13	3.89	4.28
전문요원	3.59	4.03	4.14	3.73	3.94
학계	3.58	3.67	4.00	3.52	4.00
F	0.1	2.6	1.8	1.3	2.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5점 척도로는 최저 평가인증 가점 3.54점이고 최고는 교직원 전문성 가점 4.17점이다. 응답자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Ⅳ-2-12 참조). 평가인증 점수

는 95점 이상과 95점 미만 90점 이상 점수가 45점 만점으로 동일하면서 다시 95점 이상에 가점을 주는 배점 체계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라) 기준 점수와 규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80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에서는 68~9%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학계에서는 58% 정도만이 적절하다고 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표 Ⅳ-2-13 참조).

〈표 Ⅳ-2-1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80점)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2.0	28.0	100.0(282)
공무원	82.1	17.9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68.5	31.5	100.0(54)
전문요원	68.8	31.3	100.0(64)
학계	57.7	42.3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표 Ⅳ-2-1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단위: %(명)

구분	85점	88점	90점	95점	무응답.기타	계(수)
전체	38.0	1.3	51.9	1.3	7.7	100.0(79)
보육담당 공무원	45.0	-	45.0	-	10.0	100.0(20)
보육정보센터 소장	35.3	5.9	47.1	5.9	5.9	100.0(17)
정보센터 전문요원	40.0	-	50.0	-	10.0	100.0(20)
학계 전문가	31.8	-	63.6	-	4.5	100.0(2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한편 기준점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적절한 점수로 51.9%가 90점을 제시하였고 85점 이상 90점 미만이 39.2%로 다수가 기준 점수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계 전문가는 42%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63.6%가 90점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14 참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었다. 응답자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Ⅳ-2-15 참조).

〈표 Ⅳ-2-1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동점 선정 순서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4	15.2	23.8	46.8	12.8	100.0(282)	3.54
공무원	1.8	17.0	28.6	37.5	15.2	100.0(112)	3.47
보육정보센터장	1.9	11.1	24.1	50.0	13.0	100.0(54)	3.61
정보센터 전문요원	1.6	17.2	26.6	48.4	6.3	100.0(64)	3.41
학계	0.0	13.5	9.6	61.5	15.4	100.0(52)	3.79
$x^2(df)$/F			15.3(12)				1.9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적절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중을 질문에는 10% 미만이 28%, 10~20%가 36.5%, 20~30% 18.8%의 순인데, 공무원들은 41.1%가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채로웠다(표 Ⅳ-2-16 참조).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여러 공무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2-16〉 민간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의 적정한 비율

단위: %(명)

구분	10% 미만	10~ 20%	20~ 30%	30~ 40%	40~ 50%	50% 이상	계(수)
전체	28.0	36.5	18.8	4.3	3.9	8.5	100.0(282)
공무원	41.1	37.5	10.7	1.8	0.9	8.0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24.1	33.3	27.8	3.7	7.4	3.7	100.0(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18.8	40.6	25.0	4.7	3.1	7.8	100.0(64)
학계	15.4	32.7	19.2	9.6	7.7	15.4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 내용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정원이 20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월 96만원이 지급되며, 21~40인은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만원 560만원, 98인 이상은 824만원이다. 기존

에 지원받던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된다.

〈표 Ⅳ-2-17〉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정원	20인 이하	21~40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월 지원액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이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게 되어 어린이집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할 수 있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원아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어린이집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 시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보육관계자 의견

보육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해서 85% 이상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과 센터장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

〈표 Ⅳ-2-18〉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현재 기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5.5	14.5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83.9	16.1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81.5	18.5	100.0(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87.5	12.5	100.0(64)
학계	90.4	9.6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반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의 순으로 개선방안을 염두에 둔다(표 Ⅳ-2-19 참조). 즉, 이는 교사 인건비 대체 지원으로 간주한다면 반에 배치된 교사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모보조금으로 보면 아동별로 지원시 연령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Ⅳ-2-19〉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반 수	아동 연령	교사 수	수
전체	58.5	68.3	85.4	(41)
보육담당 공무원	55.6	50.0	94.4	(18)
보육정보센터장	60.0	90.0	70.0	(10)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62.5	75.0	100.0	(8)
학계	60.0	80.0	60.0	(5)

주: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본 의견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규모별 지원금 차이에 대하여 조사한 바, 먼저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지 4.6%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5.2%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다. 5점 척도로는 3.12점이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는 학계와 보육정보센터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Ⅳ-2-20〉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 적절성: 구간별 정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5.7	19.5	36.5	33.7	4.6	100.0(282)	3.12
공무원	6.3	18.8	32.1	40.2	2.7	100.0(112)	3.14
보육정보센터장	5.6	25.9	40.7	22.2	5.6	100.0(54)	2.96
전문요원	4.7	15.6	35.9	35.9	7.8	100.0(64)	3.27
학계	5.8	19.2	42.3	28.8	3.8	100.0(52)	3.06
$x^2(df)$/F			9.6(12)				1.1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또한 구간별 지원액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단지 3.5%만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3 이상인 34.4%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다. 5점 척도로는 2.98점으로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는 5점 척도로는 2.93점인데,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 정도가 공무원이나 학계보다 높은 경향이다(표 Ⅳ-2-21 참조).

〈표 Ⅳ-2-21〉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 적절성: 구간별 지원액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6.7	27.7	35.5	26.6	3.5	100.0(282)	2.93
공무원	6.3	25.0	33.9	32.1	2.7	100.0(112)	3.00
보육정보센터장	9.3	35.2	33.3	18.5	3.7	100.0(54)	2.72
전문요원	7.8	28.1	35.9	23.4	4.7	100.0(64)	2.89
학계	3.8	25.0	40.4	26.9	3.8	100.0(52)	3.02
$x^2(df)$/F			6.7(12)				1.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지원금 이외에 응답자들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사도우미, 시설환경개선, 취사부의 순이다.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커서 학계 전문가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교사 도우미를 지적한 비율이 각각 55.8%, 48.1%, 45.3%로 가장 높고, 공무원들은 시설 환경 개선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표 Ⅳ-2-22 참조).

〈표 Ⅳ-2-22〉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구분	취사부	교사 도우미	시설환경 개선	급식비	기타	계(수)
전체	22.7	37.9	24.8	5.0	9.6	100.0(282)
공무원	25.9	20.5	35.7	10.7	7.1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27.8	48.1	16.7	0.0	7.4	100.0(54)
전문요원	28.1	45.3	15.6	1.6	9.4	100.0(64)
학계	3.8	55.8	21.2	1.9	17.3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마. 사후 운영 및 관리 기준

1) 내용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 기준을 계약 조건으로 설정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입소 우선순위는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동일하며,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여야 한다. 2011년 7월분 보육료부터 적용되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 경비를 인상하여 수납할 수 없다.

셋째,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월 급여를 낮출 수 없다.

넷째, 종일제 필수 운영으로 맞벌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일 19:30분까지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그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곱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전 교육,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후 어린이집 간 자율공부모임에도 참여해야 한다.[50]

여덟째,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 보육교직원 현황, 급식 식단표,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황 등 상세정보를 분기별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 및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사항은 <표 Ⅳ-2-23>과 같다.

아홉째,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클린카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 운영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된다. 운영기준의 성실한 준수 관리 체계로, 공공형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일부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선정한 1인(전문가)과 지자체 공무원 1인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50) 사전 교육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과정과 준수 요건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또한 각 시·도별로 경력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수시로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어린이집 간의 자율적인 공부 모임으로 확산될 계획임.

다. 조건 위반 시 그 내용 정도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시정 명령 미 이행 시 선정 취소가 결정된다. 또한 아동 학대, 급식 사고 등 부모가 우려하는 중대사고 1회 발생 시 바로 선정 취소된다.

〈표 Ⅳ-2-23〉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사항

구 분	공개사항
1) 평가인증 관련 정보	① 평가인증 점수: 총점, 규모에 따른 영역별 점수 (40인 이상은 6개 영역, 39인 이하는 5개 영역) ② 평가인증 연도 및 유효기간
2) 보육교직원 현황	① 원장 전문성 (최종학력, 전공, 자격취득사항, 원장 근무기간, 경력) ②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교사별 자격현황: 최종 학력, 1급·2급·3급 자격 현황, 해당 어린이집 근속기간)
3)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현황	① 실시 과목 수 ② 과목별 실시 요일, 시간대 ③ 과목별 월 비용 ④ 운영 강사 인적사항(이름, 최종학력, 전공, 소속 업체명)
4) 급식 식단표	① 주간, 월간 식단표 ② 급식 재료 구매처, 구매 주기 등

2) 보육관계자 의견

본 조사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하였다. 보기로 준 항목은 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취약보육 실시, 표준보육과정 운영, 클린카드 사용을 포함하였고, 이외에 특별활동 지침 준수, 운영시설 제한, 1시설 1계좌 사용을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시용으로 각각 63~64%가 이를 선택하였고, 다음은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로 53~54%가 이를 선택하였으며, 1시설 1계좌 사용, 취약보육 실시에 각각 43~48가 선택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목표가 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이며 그러자면 클린카드 및 단일계좌, 특별활동 지침 등의 준수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Ⅳ-2-24〉 공공보육 어린이집 추가 기준에의 동의 비율

단위: %(명)

구분	취약 보육 실시	표준 보육 과정 운영	클린 카드 사용	평가 인증 점수 하한	특별 활동 지침 준수	운영 시설 제한	1계좌 사용	기타	(수)
전체	43.3	64.5	63.1	48.2	52.8	54.3	46.5	3.5	(282)
공무원	41.1	48.2	60.7	41.1	35.7	46.4	36.6	3.6	(112)
보육정보센터장	55.6	77.8	74.1	53.7	64.8	68.5	61.1	7.4	(54)
전문요원	42.2	85.9	56.3	43.8	73.4	59.4	53.1	1.6	(64)
학계	36.5	59.6	65.4	63.5	51.9	50.0	44.2	1.9	(52)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 60.7%가 동의한 클린카드 사용 이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별활동 지침 준수, 운영 시설수 제한, 표준보육과정 준수 항목은 보육정보센터장이나 전문요원들이 높았으며, 특히 보육정보센터장들은 클린카드와 1시설 1계좌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Ⅳ-2-24 참조).

관리체계 필요성에의 우선순위 조사에는 정기적인 평가를 지적한 비율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8.8%, 재무회계, 지도 감독 16.0%이고, 원장 재무 회계 교육, 표준보육 과정 운영 관리, 교차점검 등이 10% 내외이다(표 Ⅳ-2-25 참조).

〈표 Ⅳ-2-25〉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체계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원장 재무 회계 교육	재무 회계 지도 감독	표준 보육 과정 운영 관리	정기 평가	교차 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기타	계(수)
전체	11.0	16.0	10.6	30.9	8.5	18.8	4.3	100.0(282)
공무원	21.4	17.0	8.0	20.5	9.8	20.5	2.7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6	13.0	9.3	40.7	5.6	14.8	11.1	100.0(54)
전문요원	4.7	10.9	12.5	40.6	12.5	17.2	1.6	100.0(64)
학계	1.9	23.1	15.4	30.8	3.8	21.2	3.8	100.0(5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표 Ⅳ-2-26〉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사전교육	-	0.4	5.3	34.4	59.9	100.0(282)
자율공부 교육	-	3.2	20.9	40.4	35.5	100.0(282)
자율공부 실시	1.1	5.0	23.8	37.9	32.3	100.0(282)
정보제공	-	0.7	7.8	37.2	54.3	100.0(282)
지속적 점검	-	-	6.0	33.0	61.0	100.0(282)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정보제공, 지속적 점검에 대해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으나 자율공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다소 낮다. 보통과 부적절을 포함한 비율이 자율공부 교육 24.1%, 자율공부 실시 29.9%이다(표 Ⅳ-2-26 참조).

5점 척도로 자율공부 실시만 4점 내외이고 그 이외는 4.5점 내외이다. 자율공부 실시는 아직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다. 특히 보육정보센터장들의 필요성 정도가 높은데, 이는 보육정보센터가 직접 이러한 공공형어린이집 자율공부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라 하겠다(표 Ⅳ-2-27 참조).

〈표 Ⅳ-2-27〉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관리체계 필요성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사전교육	자율공부 교육	자율공부 실시	정보 제공	자속적 점검
전체	4.54	4.08	3.95	4.45	4.55
공무원	4.42	3.90	3.79	4.29	4.35
보육정보센터	4.72	4.41	4.13	4.61	4.74
전문요원	4.58	4.06	3.91	4.53	4.63
학계	4.56	4.15	4.17	4.54	4.69
F	3.2*	4.9**	2.8*	4.0**	7.7***

자료: 본「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조사」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바. 요약 및 논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의 요약 및 의미를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 기준 항목으로 수상 실적과 보육료지원아 비율은 재검토를 요한다. 선정 기준 항목 중 상을 받은 실적은 8.2%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1/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육료지원아 비율도 매우 적절하다는 비율이 19% 정도이다. 단체 임원 중심으로 주어지는 원장 수상 실적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비용 지원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보육료 지원아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항목간 점수는 평가인증 점수와 비상재해대피시설 점수 강화, 수상실적과 원장 경력은 점수 하향조정 및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45점을 배정하는 평가인증인데 30.5%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낮은 것은 상을 받은 실적 5점으로 단지 7.8%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1/3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변경되기를 바라는 비율은 강화되어야 하다는 항목은 평가인증 점수와 비상재해대피시설이 각각 42% 수준이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수상실적이 41%, 원장 경력이 25%로 비교적 높으며 항목으로 삭제를 선택한 비율은 수상실적이 22.7%로 가장 높다. 항목내 배점에서도 건별로 0.3~3점까지 받을 수 있는 수상실적 점수 배정이 매우 적절이 7.1%에 불과하여 수정을 요한다.

셋째, 가감점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교직원 전문성 가점 6점이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최대 3점까지 부여되는 평가인증 재인증이 약 2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상환액·임대료 감점이 약 10% 정도이다.

넷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80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보육정보센터에서는 68~9%, 학계에서는 58% 정도만이 적절하다고 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부적절하다는 경우, 85점, 90점으로 상향 조정을 희망하였다.

다섯째, 지원금 지원 방식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조사 결과, 운영 지원금 차등 지원에 대부분 동의하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반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의 순으로 개선방안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지 4.6%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5.2%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며, 구간별

지원액에 대해서도 단지 3.5%만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3 이상인 34.4%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다

여섯때, 추가적 지원으로 교사도우미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계 전문가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교사 도우미를 지적한 비율이 각각 55.8%, 48.1%, 45.3%로 높고, 공무원들은 시설 환경 개선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일곱째, 운영기준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되, 몇 가지를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당초 계획에 들어 있는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으로 각각 63~64%가 이를 선택하였고, 다음은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로 53~54%가 이를 선택하였으며, 1시설 1계좌 사용, 취약보육 실시에 각각 43~48%가 선택하였다.

또한 관리체계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율공부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질 높은 내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순위 조사에는 정기적인 평가가 3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8.8%, 재무회계 지도 감독 16.0%이고, 원장 재무 회계 교육, 표준보육 과정 운영 관리, 교차점검 등이 10% 내외이다. 사전 교육, 정보제공, 지속적 점검에 대해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으나 자율공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다소 낮다.

Ⅴ. 정책제언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제도 발전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육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 등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특정 보육정책으로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보육정책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향후 정책과제

가.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중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9년 하반기 하위 70%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 지원대상 모두에게 차등 없이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였다. 또한 취업모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면액을 부부 중 낮은 소득 25%에서 합산 소득의 25%로 확대하여 취업모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하였고, 또한 2011년부터 다문화 가족 전액 지원을 결정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질적 수준과 비용 지원 연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특히 유아는 전액지원이라고 하여도 부모는 별도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표준보육비용, 보육료 상한액, 지원단가가 다르다. 기타 필요 경비도 법으로 그 내역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내역이나 상한선이 지역 차이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특별활동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무상보육, 전액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보육비용 주기적 산정 및 법제화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기적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이를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서비스 수준과 포함되는 세부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으로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나) 보육지원 단가 현실화

산출되는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이에 근접하도록 올려 점차 현실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의 보육비용과 보육료 상한선, 보육료지원단가간의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 만 5세를 기준으로 보면 보육료 지원 단가는 177,000원, 보육료 상한액 24만원 내외, 표준보육비용 28만원 선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정부가 기관 이용 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비용 지원 체감도는 높지 않고 정책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2016년까지 만 5세아 지원단가를 30만원으로 현실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오후반비로 7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3, 4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곧 유아 전체가 동일한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다) 추가 비용 최소화

단기적으로는 먼저,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가 일정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에게는 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범위내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거하여 시·도 지침 하에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을 추가로 수납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사교육 등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흡수하여 추가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보육지원과 서비스의 질 연계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교재교구비 지원과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기본보육료나 보육료 지원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마) 보육비용과 이용시간 연계

보육비용을 이용시간과 연계하는 방안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용시간 언급없이 단일 비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는 정책과 함께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용시간을 세분화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오후 2~3시 경에 귀가하는 유형과 종일제는 구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인천 남동구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용시간을 8시간과 12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9년 조사 결과 실제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7시간 25분 정도로 파악되어 현실과 제도가 괴리를 보인다. 특히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운영자는 종일제 운영을 의무로 여기며 아동에게도 종일제 이용을 강요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도 일부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물게 된다. 보육교사도 12시간 아동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뿐 아니라 재교육은 물론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교사가 아동에게 아동 눈높이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바) 지원 확대

현재 소득 7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그 이상은 전혀 지원이 없는 이원화된 지원 제도는 부모들이 지원 선정 소득기준선 이하로 들어오려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낳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모두에게 지원되면 논의의 여지는 없겠으나, 그렇치않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상위 70%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와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부모보조금으로의 성격 규명

현재의 지원방식으로 부모의 인식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기본보육료 금액을 부모들이 인식하고 확인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50%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의 반 정도가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보육료 액수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위와 연계선 상에서 기본보육료를 보육바우처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아 기본보육료를 부모보조금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초과보육 허용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 즉, 초과보육을 인정하면서 부모보조금화하여 초과보육아동에까지 기본보육료를 주는 것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부모보조금화 할 경우 초과보육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육관계자들은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영아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따라서 초과보육 아동에게 기본보육료를 주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경향이다. 어린이집과 직접 부딪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의식이 더 강하다. 기본보육료가 어느 정도 어린이집 통제 수단으로 작동함을 반영한다 하겠다. 따라서 기본보조금을 바우처에 포함할 경우에는 평가인증 등 질적 수준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나) 지원 조건 강화

현재 기본보육료 조건들은 대체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평가인증 통과는 물론 클린카드 사용, 1기관 1계좌 사용 등과 같은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조건들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보육관계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 보육관계자와 부모 모두 재정 지원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서비스의 질과 연계되지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이윤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아 중심 어린이집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성이 희박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다) 어머니 취업과 연계

영아보육과 어머니 취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실상 실천하기 쉽지 않고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기본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42% 정도가 어린이집 이용과 어머니 취업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선택과 추가 출산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 지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3.0%, 37.3% 정도이었다. 특히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성이 희박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초래하는 것으로 우려되므로, 0세아에 한해서만 이라도 기본보육료와 보육의 필요성 정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제도는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양육수당제도가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22.3%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중 20.2%는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여서 약 20% 정도의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기대되었고, 지원을 더 크게 늘릴 경우 취업을 중단하겠다는 부모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대상의 확대, 금액조정의 순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아에 한정하여야 한다.

가) 소득계층 제한 조정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면에서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다. 보육료 지원과 비교하여 일부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점차 양육수당 소득수준 기준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 방침에 따른 지원금 설정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지원 수준 면에서도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다. 0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면 75만원 이상이 지원되지만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효과는 물론 어머니 경제활동 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보육정책의 기본철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수준의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다) 유아로의 확대 금지

보육서비스 대체로서의 양육수당은 영아 대상 정책으로 머물러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영아에게서 보육서비스 대체효과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겠으므로, 유아로의 확대는 금지되어야 하며, 유아로의 확대 시에는 아동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 보육 인프라 공급

1)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나라 보육 공급은 총량적으로 충분한 수준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낮다.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부통제와 지원의 차이, 공공성 높은 운영으로 인한 투자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간어린이집의 반대도 있으나 이보다는 시·군·구의 재정적 부담이다. 시·군·구는 건축비의 25% 이외에도 부지매입비, 설계비, 타당성 조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 2009년 설치 어린이집은 전체 비용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1.6%~50%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여도 2.7%~50%이다.

2009년 조사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효과성도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은(서문희·최혜선, 2010)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은 지원 항목 대상을 건축비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지원 단가를 확대하여야 한다.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단가 1,201,300원/㎡보다 57%p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지매입비 제외시에도 38.2%p가 높다. 시설당 평균 1,124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시 876백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있으므로, 국고보조율의 차등 적용, 지원단가 현실화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 시설 규모 제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2011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비나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조건이나 지원수준 등이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선정에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선정 기준 항목, 배점 수정

선정 기준 항목, 배점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평가인증 점수는 하한선을 두어야 하고, 90점 이상과 95점 이상을 동일점수로 주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수상 실적, 보육료지원아 비율, 원장 경력은 재검토를 요한다. 단체 임원 중심으로 주어지는 원장 수상 실적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비용 지원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보육료지원아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은 점수 하향조정 및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선정 기준 점수 상향 조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산점 제도로 총 17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80점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 학계에서도 58% 정도만이 80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 지원금 및 지급방식 조정

지원금 지원 방식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반당 지원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견조사에서도 구간별로 정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지 4.6%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구간별 지원액에 대해서도 단지 3.5%만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의 지원은 미미하지만 향후에 개선을 기대하였다.

라) 운영 기준과 사후관리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으로는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클린카드 사용, 취약보육 이외에 운영시설 제한, 특별활동 지침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체계로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율공부는 점차적 준비 과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3)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7% 수준으로 조사되어 실제 보육아동 3.3%와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모는 10%가 상시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 시간연장형 보육 시작시간 조정

시간연장형 보육 시작 시간을 현재 7시 30분에서 6시30분으로 한 시간 당겨 실시하고,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저녁식사 제공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일제 보육 시간을 수정하여야 한다. 종일제 12시간 보육이라는 명분에 매여 있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나) 일정 규모 유지

시간연장형 보육은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이나 남아 있는 극소수

아동의 정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9,411개의 시설에서 41,654명 아동을 보육한다는 것이 나타내듯이, 시간연장형 보육은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하도록 개방하며 아동이 소수이어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 이용 아동 기준 설정

현재는 시간연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향후 모의 취업이나 가정 사정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라) 야간교사 배치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은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 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낮동안 근무한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야간보육교사 배치를 강화한다.

4) 육아지원시설

어린이집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한다. 육아지원시설인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한 중장기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지역 균형 배치

2010년에 시·도 보육정보센터 예산은 확대하였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여전하게 시·군·구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어 지역 차이가 나고 있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다수는 서울,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만 서울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육아지원시설을 두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다. 이외의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육아지원시설이 설치되어 부모 입장에서 접근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

나) 조직 체계 구축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배치는 물론 명칭까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민간 단체 위탁으로 운영되어 각 지방이나 운영자 역량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등이 달라진다. 물론 협의체가 구축되어 중앙정부나 시·도가 필요로 하는 지원업무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파견보육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를 중심으로 하는 파견보육서비스는 종일 돌봄 지원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관점에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합리화

우선, 지원 바우처 체계를 보육과 연계하여야 한다.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를 중복 이용하는 경우에 상호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의 통일이 요구된다. 전자는 전국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로 보육정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간제 돌보미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심사가 각 사업체에 맡겨져 있는 것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파견보육자 자격 관련 제도 정립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와 더불어 질 높은 자녀 돌봄인력을 필요로 하는 파견서비스 희망 가정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이외에 일반 영리 회사 등에서 파견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단기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등록 관리 기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아이돌보미 관련 법에 추가하고, 파견 사업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1) 정보 공개

가) 평가인증 정보 공개

평가인증제도는 안정성 측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향후 재정 지원과의 연계가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는 인증통과 어린이집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고, 어린이집 선택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원점수를 공개함으로서 부모들이 평가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평가자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2011년 8월에 영유아보육법 제30조 4항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년후인 2013년 8월 5일부터 발효되므로, 구체적인 공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어린이집 정보 공시

중기 과제로 어린이집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는 예결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2010년부터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에 전체 교사에게 약간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인 것 이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기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사 수당 지급

단기적으로는 전체 교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러 지방정부가 낮은 교사 급여 보전의 수단으로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기 커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인력 지원 및 배치

대체교사 제도는 당분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규모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450명 그대로이고 보육교사가 연가를 주중 5일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불편사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개반 1명 교사 제도에서 탈피하여 보조교사 또는 종일제교사를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내내 아동과 함께 할 경우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다) 교육체계 개선과 인력관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금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 지원도 변화가 없다.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위하여 단가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중기과제로는 보수교육 명령제를 도입하여 보육인력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해진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지원 사업인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을 검토하였다.

정부 핵심 보육사업인 보육료 전액지원 및 지원 아동 비율은 2010년 현재 각각 49.2%, 68.7%이다. 2011년부터 지원아동 전체가 전액지원 아동이다.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0, 1세 아동 5.8%가 지원 받았으며, 지원액은 월 10만원이다. 2011부터는 지원 연령이 영아 전체로 확대되고 지원액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증가되었다. 취업모 지원은 2010년에 다소 강화하여 부부 소득 합의 25%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대상과 수준의 증가로 소요예산도 증가하여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2010년이 0.20%, 2011년 0.22%이고,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47%이다. 유아교육 및 농어촌 영유아 지원을 포함하면 0.69%이다. 아동1인당 보육예산은 42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보육지원 수준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액의 확대라고 하지만 특히 유아의 보육료 지원단가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그 격차는 부모 부담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2009년 대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56.9%,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8%이다. 그러나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8%로 거의 변동이 없다. 야간보육은 3.0%이고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3.3% 수준이다. 야간보육은 2%에서 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현재 통과 비율은 70.1%로 2009년 통과비율은 60.5%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하였다. 교사수에 대한 월 수당 지급 대상은 2009년 18.2%에서 22.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은 변동이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기본보육료 지원 사업과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검토하였다. 기본보육료 지원 사업은 효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으나 우선 어린이집 운영상태 개선으로 인한 영아보육 확충에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영아 특히 0세가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일부 아동은 비정규적 이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사용처가 정해 지지 않아서 교사 급여나 질적 수준과 연계 부분은 취약하다. 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초과보육을 제한하고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준수 조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 기능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 조건이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 시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지출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투자 비용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정 조건, 배점이나 준수하여야 사항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현재는 지역 차이가 있으나, 교사 급여 개선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2008-2010). 유치원현황.

김재완(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보육기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141-173.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김현숙·신은수·유영의·전홍주·노재은(2007).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2010-2011).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변용찬·서문희·이상헌(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서문희·이상헌·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e-보육통계.

보건복지부(1995-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1995-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1995-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건복지부(2011.4.21).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http://www.mw.go.kr에서 인출).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아동지표. 보건복지부.

서문희·김온기·이정원·송신영·원종욱(2010).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김은영·최혜선(2007).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 여성

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이상헌(1999). 보육시설 융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상헌(2001).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최혜선(2010). 2010년 보육정책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꼬(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0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지표.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0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3-2008).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여성가족부(2009-2011).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임양미·구현아·이혜선(2009)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갈현숙·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조병구·조윤형(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조연숙·서영주·안현미(2010). 거버넌스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2010 한국행정학회 발표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2011). 2010년 전국보육정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중앙보육정

보센터.

행정안전부(2009-2010). 주민등록인구통계.

OECD(2006). Starting Strong Ⅱ: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132~133.

<참고 웹 사이트>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부 록

부록 1.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부록 2. 기본보육료 관련 조사 결과표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표

부록 4. 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 질문지

부록 5. 기본보육료·공공형어린이집 관련 보육관계자 조사 질문지

부록 1.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부표 II-1-1〉 2010년 시·군·구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단위: %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전국	56.9	46.7	5.6	5.0
서울특별시				
전체	47.0	41.1	11.0	10.0
종로구	72.7	61.3	29.7	27.0
중구	62.6	51.8	33.2	27.7
용산구	42.0	37.0	11.8	11.0
성동구	44.4	39.0	16.5	15.3
광진구	51.0	43.9	10.8	9.8
동대문구	53.5	45.9	13.2	11.5
중랑구	56.8	49.6	12.9	12.0
성북구	45.1	39.0	8.5	7.5
강북구	60.5	51.7	10.6	9.8
도봉구	61.4	52.5	8.7	8.3
노원구	47.6	41.9	9.2	8.7
은평구	51.2	45.6	5.1	4.9
서대문구	52.4	44.0	11.8	11.1
마포구	41.2	34.0	16.2	12.5
양천구	51.5	45.0	11.7	11.0
강서구	46.4	41.4	8.5	7.8
구로구	44.5	41.2	8.7	8.4
금천구	74.5	63.0	9.4	8.7
영등포구	44.9	39.6	8.7	8.2
동작구	41.2	36.4	13.2	12.6
관악구	44.0	39.6	12.3	11.2
서초구	31.6	27.9	8.4	7.9
강남구	36.1	31.0	14.5	13.4
송파구	35.8	32.7	8.8	8.3
강동구	43.2	37.9	7.7	7.3
부산광역시				
전체	52.0	43.0	7.5	6.6
중구	66.6	54.9	25.2	20.2
서구	62.2	49.2	16.8	15.8
동구	74.0	59.4	21.8	17.0
영도구	63.4	49.7	19.0	16.5
부산진구	40.4	35.0	6.9	6.2

(부표 II-1-1 계속)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동래구	47.4	41.8	5.0	4.9
남구	45.4	39.2	8.5	8.2
북구	62.6	46.0	4.1	3.3
해운대구	51.8	42.3	5.9	4.4
사하구	51.9	45.1	9.1	8.4
금정구	54.0	43.8	7.1	6.0
강서구	65.3	44.7	6.5	5.5
연제구	39.2	34.6	4.3	3.9
수영구	48.7	42.5	2.8	2.4
사상구	56.4	48.0	6.8	6.0
기장군	57.6	46.6	5.8	5.5
대구광역시				
전체	61.9	50.1	2.0	1.6
중구	63.2	49.1	3.9	3.8
동구	60.5	49.1	2.0	1.6
서구	98.3	78.1	5.6	4.8
남구	64.0	53.9	0.8	0.6
북구	64.0	50.3	1.1	0.8
수성구	54.1	44.6	1.1	0.9
달서구	58.6	48.0	2.0	1.4
달성군	56.3	46.6	3.2	2.8
인천광역시				
전체	49.6	42.7	4.4	3.8
중구	51.8	43.0	10.7	9.4
동구	42.5	37.9	12.3	10.9
남구	52.2	45.3	6.1	5.0
연수구	48.1	40.6	5.4	4.8
남동구	49.2	41.2	3.3	2.8
부평구	50.5	43.5	2.6	2.4
계양구	55.1	47.9	2.8	2.7
서구	44.6	39.7	2.3	2.2
강화군	49.6	42.2	20.5	18.7
옹진군	37.6	31.4	17.4	11.5
광주광역시				
전체	70.9	57.0	3.4	2.6
동구	79.6	55.7	3.5	3.0
서구	61.9	50.6	5.8	4.4

(부표 II-1-1 계속)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남구	63.8	54.1	2.1	1.9
북구	67.3	55.7	3.9	3.2
광산구	80.5	62.7	2.0	1.4
대전광역시				
전체	58.2	48.3	1.9	1.7
동구	63.9	53.8	2.2	2.0
중구	53.6	45.8	1.6	1.4
서구	58.0	48.4	1.9	1.8
유성구	54.6	43.1	0.2	0.2
대덕구	64.2	54.1	4.9	4.4
울산광역시				
전체	50.1	41.4	3.0	2.9
중구	47.3	40.9	2.7	2.7
남구	47.9	39.9	3.3	3.2
동구	47.6	41.0	3.8	3.8
북구	51.2	39.8	1.4	1.3
울주군	56.1	45.7	4.1	3.8
경기도				
전체	52.7	43.5	4.5	4.2
수원시	48.9	39.8	2.6	2.5
성남시	43.4	37.9	8.2	7.5
의정부시	71.5	56.6	4.2	4.0
안양시	46.1	39.8	5.6	5.5
부천시	44.1	38.5	3.7	3.5
광명시	37.8	34.8	5.5	5.3
평택시	56.6	44.9	4.3	4.0
동두천시	80.0	64.9	9.7	9.1
안산시	64.2	53.1	4.8	4.7
고양시	53.5	42.1	4.2	3.7
과천시	68.4	59.2	14.9	14.3
구리시	39.3	36.0	4.1	3.9
남양주시	53.4	46.8	2.5	2.3
오산시	41.4	35.7	7.9	7.0
시흥시	55.0	47.8	4.1	4.1
군포시	40.3	35.2	6.0	5.7
의왕시	46.8	41.3	6.9	5.6
하남시	53.1	45.0	4.6	4.4
용인시	48.5	38.2	1.7	1.6

(부표 II-1-1 계속)

지역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파주시	63.3	49.9	2.2	2.1
이천시	63.7	50.8	5.6	4.8
안성시	82.5	57.3	4.4	4.1
김포시	50.1	41.8	6.1	5.0
화성시	42.7	36.7	2.3	2.2
광주시	59.2	49.7	4.5	4.4
양주시	83.2	64.6	7.1	6.2
포천시	82.9	64.5	10.9	9.4
여주군	63.3	51.6	1.4	1.3
연천군	76.4	57.1	16.0	14.4
가평군	74.2	55.0	8.9	7.3
양평군	60.2	45.9	14.7	12.4
강원도				
전체	68.5	54.4	7.9	6.8
춘천시	72.7	57.4	5.6	5.3
원주시	65.1	51.3	6.3	5.3
강릉시	82.8	64.8	2.6	2.1
동해시	59.7	50.8	3.3	3.0
태백시	46.2	42.9	26.3	23.5
속초시	81.3	63.6	6.9	5.5
삼척시	61.6	48.5	15.4	12.3
홍천군	71.9	51.7	5.6	4.6
횡성군	84.2	60.4	6.6	5.2
영월군	62.6	47.6	6.6	5.6
평창군	53.3	44.6	9.2	8.2
정선군	57.5	43.8	17.7	16.5
철원군	77.6	65.6	5.7	5.4
화천군	51.1	41.2	16.2	11.9
양구군	68.6	55.3	6.5	5.6
인제군	49.2	42.3	18.7	15.7
고성군	72.6	63.3	41.7	36.6
양양군	44.2	39.1	8.1	7.5
충청북도				
전체	68.2	53.8	4.5	3.9
청주시	68.9	53.9	2.0	1.8
충주시	74.0	57.4	6.6	5.2
제천시	58.4	49.5	12.3	11.5
청원군	65.1	49.5	0.9	0.7

(부표 II-1-1 계속)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보은군	55.5	45.6	7.9	7.9
옥천군	60.2	49.6	8.4	7.2
영동군	57.0	41.2	6.3	5.0
증평군	66.2	60.0	1.5	1.2
진천군	77.0	61.8	6.9	6.8
괴산군	78.5	57.0	10.9	8.3
음성군	67.9	57.0	8.7	7.3
단양군	91.3	67.3	22.9	20.6
충청남도				
전체	60.1	48.8	3.2	2.7
천안시	50.3	41.6	1.5	1.3
공주시	60.6	50.2	7.2	6.0
보령시	62.7	51.1	5.5	4.8
아산시	63.1	51.9	2.7	2.5
서산시	60.5	45.6	0.9	0.6
논산시	90.5	67.9	5.9	4.5
계룡시	52.3	45.6	1.9	1.8
금산군	58.9	49.0	9.1	7.4
연기군	70.2	61.3	6.3	6.2
부여군	79.5	59.9	0.0	0.0
서천군	97.7	65.6	10.4	7.6
청양군	73.9	55.4	10.9	7.8
홍성군	58.7	49.8	6.8	4.4
예산군	48.9	43.1	2.2	2.1
태안군	58.1	49.5	2.0	1.7
당진군	59.6	48.5	3.5	3.3
전라북도				
전체	75.6	58.8	3.3	2.8
전주시	81.9	62.1	1.3	1.1
군산시	62.5	53.7	4.0	3.3
익산시	73.1	55.3	4.0	3.2
정읍시	96.7	72.2	5.6	4.5
남원시	98.5	77.3	1.5	0.9
김제시	83.4	60.5	5.5	4.2
완주군	65.7	54.3	4.1	3.9
진안군	38.7	31.7	12.1	10.2
무주군	53.5	47.9	14.4	12.7
장수군	51.0	43.7	12.5	11.7

(부표 II-1-1 계속)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임실군	61.5	44.6	0.0	0.0
순창군	59.6	47.3	10.0	6.6
고창군	67.8	57.8	2.1	2.1
부안군	70.9	49.8	3.2	2.4
전라남도				
전체	69.5	55.6	5.0	3.9
목포시	75.8	62.8	2.1	1.7
여수시	62.5	52.4	7.0	4.8
순천시	69.3	59.4	5.3	4.8
나주시	93.0	66.2	15.7	10.8
광양시	72.7	59.9	7.3	6.7
담양군	54.0	40.2	0.0	0.0
곡성군	78.1	62.1	0.0	0.0
구례군	71.0	52.4	7.6	7.5
고흥군	68.7	52.7	1.8	1.6
보성군	43.3	33.3	15.7	12.4
화순군	95.0	76.5	1.8	1.5
장흥군	60.3	49.6	4.6	4.6
강진군	57.6	44.5	0.0	0.0
해남군	68.4	57.5	1.5	1.5
영암군	74.3	51.2	0.0	0.0
무안군	65.2	42.5	2.7	2.3
함평군	87.3	52.2	0.0	0.0
영광군	69.4	50.4	1.6	0.0
장성군	42.7	36.1	6.6	6.2
완도군	60.6	53.0	5.1	3.8
진도군	54.8	48.2	5.8	5.2
신안군	65.7	41.8	15.7	9.0
경상북도				
전체	66.2	51.6	4.9	4.1
포항시	75.2	56.1	2.4	2.0
경주시	76.3	58.0	2.9	2.3
김천시	73.1	52.0	5.6	4.9
안동시	50.6	43.3	7.1	5.8
구미시	56.8	45.2	2.6	2.1
영주시	60.9	52.1	5.8	5.3
영천시	60.7	52.6	6.2	5.0
상주시	42.9	34.6	1.0	0.7

(부표 II-1-1 계속)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문경시	54.2	44.6	7.5	5.2
경산시	73.1	56.5	2.8	2.6
군위군	51.0	32.3	0.0	0.0
의성군	56.9	46.5	7.8	7.0
청송군	76.1	52.1	21.0	17.5
영양군	51.7	36.4	31.0	24.2
영덕군	69.8	57.4	25.8	19.6
청도군	74.5	53.5	18.6	13.3
고령군	79.5	57.2	16.8	12.7
성주군	58.9	52.1	16.2	15.4
칠곡군	78.5	61.2	2.9	2.5
예천군	62.2	55.7	7.6	6.5
봉화군	42.8	35.3	19.3	16.1
울진군	69.6	57.2	22.5	19.3
울릉군	34.0	31.0	24.5	22.6
경상남도				
전체	62.7	49.3	4.9	4.3
창원시	58.2	46.9	4.8	4.4
진주시	82.7	63.4	6.1	5.2
통영시	48.6	40.9	6.4	5.2
사천시	75.2	56.3	6.7	5.8
김해시	69.3	52.6	4.0	3.6
밀양시	81.3	62.2	1.6	1.4
거제시	36.5	31.8	2.7	2.5
양산시	72.8	54.7	1.3	1.1
의령군	60.4	43.1	12.0	8.8
함안군	48.0	42.1	5.5	4.9
창녕군	60.9	48.3	7.3	7.0
고성군	51.6	46.8	6.2	4.2
남해군	70.9	59.7	8.9	8.4
하동군	78.3	57.4	8.4	5.2
산청군	79.0	61.1	27.0	22.9
함양군	52.0	43.3	11.5	10.9
거창군	69.5	55.2	11.9	9.6
합천군	48.8	36.7	13.6	10.1
거창군	70.2	11.6	59.1	10.0
합천군	42.1	12.3	34.3	10.6

(부표 II-1-1 계속)

지역	전체 어린이집 (0~5세)		국공립 어린이집 (0~5세)	
	공급률	이용률	공급률	이용률
제주도				
전체	84.7	71.9	4.0	3.8
제주시	80.9	70.2	2.6	2.5
서귀포시	96.4	77.4	8.6	7.9

부록 2. 기본보육료 관련 조사 결과표

〈부표 Ⅳ-1-1〉 부모 직업 특성-정규직, 비정규직

단위: %(명)

구 분	부				모				계(수)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기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기타	
지급	85.0	11.1	3.3	0.6	61.5	23.8	12.8	1.9	100.0
미지급	85.8	9.5	4.4	0.3	58.9	25.9	13.5	1.6	100.0
전체	85.3	10.6	3.6	0.5	60.8	24.4	13.0	1.8	100.0(1,160)

〈부표 Ⅳ-1-2〉 자녀의 보육교사가 동시에 돌보는 아이 수 인지여부

단위: %(명)

구 분	안다	모른다	계	$\chi^2(df)$
지급	87.5	12.5	100.0	0.325(1)
미지급	88.6	11.4	100.0	
전체	87.8(1,332)	12.2(185)	100.0(1,517)	

〈부표 Ⅳ-1-3〉 보육비용 대비 보육서비스와 환경 수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 분	매우 적절	비교적 적절	다소 개선이 필요	많은 개선이 필요	계	$\chi^2(df)$
교재교구						
지급	19.1	59.9	17.6	3.5	100.0	1.382(3)
미지급	17.1	63.0	16.9	3.0	100.0	
전체	18.5(271)	60.8(890)	17.3(254)	3.3(49)	100.0(1,464)	
급간식 질						
지급	23.6	58.9	15.2	2.3	100.0	2.551(3)
미지급	20.2	60.7	16.0	3.1	100.0	
전체	22.6(333)	59.4(874)	15.4(227)	2.5(37)	100.0(1,471)	
프로그램						
지급	23.8	58.6	15.9	1.7	100.0	4.288(3)
미지급	21.1	64.4	13.2	1.4	100.0	
전체	23.0(343)	60.3(899)	15.1(225)	1.6(24)	100.0(1,491)	
교사						
지급	32.6	55.0	10.6	1.8	100.0	0.554(3)
미지급	31.2	56.6	10.2	2.1	100.0	
전체	32.2(486)	55.5(837)	10.5(158)	1.9(28)	100.0(1,509)	
건강 안전						
지급	28.3	56.1	14.1	1.5	100.0	1.247(3)
미지급	25.5	57.9	14.9	1.6	100.0	
전체	27.5(415)	56.7(855)	14.3(216)	1.5(23)	100.0(1,509)	
실내						
지급	27.5	58.0	13.2	1.3	100.0	0.800(3)
미지급	28.0	57.8	12.4	1.8	100.0	
전체	27.6(417)	57.9(875)	13.0(196)	1.5(22)	100.0(1,510)	
실외						
지급	19.0	52.8	22.9	5.3	100.0	7.900(3)*
미지급	19.4	58.6	19.2	2.8	100.0	
전체	19.1(282)	54.5(804)	21.8(322)	4.5(67)	100.0(1,475)	

* $p < .05$.

〈부표 Ⅳ-1-4〉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어린이집 이용

단위: %(명)

구 분	많음	다소	약간	전혀 무관함	계	$\chi^2(df)$
지급	41.1	23.0	14.1	21.8	100.0	4.162(3)
미지급	45.3	22.2	14.9	17.6	100.0	
전체	42.3(641)	22.8(345)	14.3(217)	20.6(312)	100.0(1,515)	

〈부표 Ⅳ-1-5〉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어머니 취업활동

단위: %(명)

구 분	많음	다소	약간	전혀 무관함	계	$\chi^2(df)$
지급	41.6	19.1	14.1	25.3	100.0	0.757(3)
미지급	43.7	19.2	13.3	23.8	100.0	
전체	42.2(640)	19.1(290)	13.8(210)	24.9(377)	100.0(1,517)	

〈부표 Ⅳ-1-6〉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의 영향-추가 출산

단위: %(명)

구 분	많음	다소	약간	전혀 무관함	계	$\chi^2(df)$
지급	33.8	16.0	11.6	38.6	100.0	3.830(3)
미지급	33.9	18.5	13.5	34.1	100.0	
전체	33.8(513)	16.7(254)	12.1(184)	37.3(566)	100.0(1,517)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조사 결과표

〈부표 Ⅳ-2-1〉 선정기준으로의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	5점 평균
전체	2.1	2.8	7.1	30.9	57.1	100.0(282)	4.38
보육담당 공무원	1.8	3.6	8.9	38.4	47.3	100.0(112)	4.26
보육정보센터장	1.9	3.7	3.7	22.2	68.5	100.0(54)	4.52
정보센터 전문요원	3.1	1.6	9.4	37.5	48.4	100.0(64)	4.27
학계 전문가	1.9	1.9	3.8	15.4	76.9	100.0(52)	4.63

〈부표 Ⅳ-2-2〉 배점 변경 필요성-평가인증 점수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
전체	52.1	42.2	5.3	0.4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58.9	32.1	8.0	0.9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3.7	44.4	1.9	0.0	100.0(54)
정보센터 전문요원	54.7	40.6	4.7	0.0	100.0(64)
학계 전문가	32.7	63.5	3.8	0.0	100.0(52)

〈부표 Ⅳ-2-3〉 배점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	5점 평균
전체	1.8	8.5	17.7	41.5	30.5	100.0(282)	3.90
보육담당 공무원	2.7	8.9	12.5	47.3	28.6	100.0(112)	3.90
보육정보센터장	3.7	3.7	18.5	29.6	44.4	100.0(54)	4.07
정보센터 전문요원	0.0	7.8	28.1	42.2	21.9	100.0(64)	3.78
학계 전문가	0.0	13.5	15.4	40.4	30.8	100.0(52)	3.88

〈부표 Ⅳ-2-4〉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평가인증 점수

단위: %(명)

구분	0	10	20	25	30	35	40	45	50	60	70	계(수)
전체	3.4	3.4	10.3	3.4	20.7	6.9	20.7	3.4	17.2	6.9	3.4	100.0(29)
보육담당 공무원	7.7	0.0	7.7	0.0	7.7	15.4	38.5	7.7	7.7	0.0	7.7	100.0(18)
보육정보센터장	0.0	0.0	0.0	25.0	25.0	0.0	25.0	0.0	25.0	0.0	0.0	100.0(4)
정보센터전문요원	0.0	20.0	20.0	0.0	40.0	0.0	0.0	0.0	20.0	0.0	0.0	100.0(5)
학계 전문가	0.0	0.0	14.3	0.0	28.6	0.0	0.0	0.0	28.6	28.6	0.0	100.0(7)

〈부표 Ⅳ-2-5〉 배점의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4.6	15.2	21.3	42.2	16.7	100.0(282)	3.51
보육담당 공무원	0.9	9.8	22.3	45.5	21.4	100.0(112)	3.77
보육정보센터장	5.6	14.8	16.7	38.9	24.1	100.0(54)	3.61
정보센터전문요원	6.3	18.8	18.8	48.4	7.8	100.0(64)	3.33
학계 전문가	9.6	23.1	26.9	30.8	9.6	100.0(52)	3.08

〈부표 Ⅳ-2-6〉 가점 적절성-평가인증 점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2.5	17.4	20.6	42.9	16.7	100.0(282)	3.54
보육담당 공무원	3.6	12.5	25.9	45.5	12.5	100.0(112)	3.51
보육정보센터장	1.9	22.2	22.2	31.5	22.2	100.0(54)	3.50
정보센터전문요원	1.6	20.3	14.1	45.3	18.8	100.0(64)	3.59
학계 전문가	1.9	19.2	15.4	46.2	17.3	100.0(52)	3.58

〈부표 Ⅳ-2-7〉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놀이터 구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8	6.7	19.5	34.8	37.2	100.0(282)	3.99
보육담당 공무원	1.8	9.8	29.5	35.7	23.2	100.0(112)	3.69
보육정보센터장	1.9	3.7	14.8	29.6	50.0	100.0(54)	4.22
정보센터전문요원	1.6	6.3	12.5	43.8	35.9	100.0(64)	4.06
학계 전문가	1.9	3.8	11.5	26.9	55.8	100.0(52)	4.31

〈부표 Ⅳ-2-8〉 배점 변경 필요성-놀이터 구비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49.6	33.0	15.2	2.1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45.5	30.4	18.8	5.4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7.4	27.8	14.8	0.0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59.4	26.6	14.1	0.0	100.0(64)
학계 전문가	38.5	51.9	9.6	0.0	100.0(52)

〈부표 Ⅳ-2-9〉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놀이터 구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5.7	19.1	27.3	35.5	12.4	100.0(282)	3.30
보육담당 공무원	0.9	11.6	29.5	45.5	12.5	100.0(112)	3.57
보육정보센터장	1.9	18.5	20.4	37.0	22.2	100.0(54)	3.59
정보센터전문요원	7.8	26.6	31.3	25.0	9.4	100.0(64)	3.02
학계 전문가	17.3	26.9	25.0	25.0	5.8	100.0(52)	2.75

〈부표 Ⅳ-2-1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놀이터 구비

단위: %(명)

구분	0	1	2	5	7	10	15	20	계(수)
전체	2.9	1.4	1.4	37.1	4.3	45.7	4.3	2.9	100.0(70)
보육담당 공무원	7.1	7.1	7.1	28.6	14.3	28.6	7.1	0.0	100.0(14)
보육정보센터장	9.1	0.0	0.0	45.5	0.0	36.4	0.0	9.1	100.0(11)
정보센터전문요원	0.0	0.0	0.0	50.0	4.5	36.4	4.5	4.5	100.0(22)
학계 전문가	0.0	0.0	0.0	26.1	0.0	69.6	4.3	0.0	100.0(23)

〈부표 Ⅳ-2-11〉 배점의 적절성-놀이터 구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5.0	14.2	31.6	36.5	12.8	100.0(282)	3.38
보육담당 공무원	0.9	11.6	38.4	37.5	11.6	100.0(112)	3.47
보육정보센터장	1.9	9.3	22.2	48.1	18.5	100.0(54)	3.72
정보센터전문요원	3.1	17.2	32.8	35.9	10.9	100.0(64)	3.34
학계 전문가	19.2	21.2	25.0	23.1	11.5	100.0(52)	2.87

〈부표 Ⅳ-2-12〉 가점 적절성-놀이터 구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0.4	7.4	20.6	44.7	27.0	100.0(282)	3.90
보육담당 공무원	0.0	6.3	25.9	44.6	23.2	100.0(112)	3.85
보육정보센터 소장	0.0	7.4	11.1	46.3	35.2	100.0(54)	4.09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0.0	4.7	15.6	51.6	28.1	100.0(64)	4.03
학계 전문가	1.9	13.5	25.0	34.6	25.0	100.0(52)	3.67

〈부표 Ⅳ-2-13〉 선정기준으로의 적절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8	1.4	6.4	23.0	67.4	100.0(282)	4.53
보육담당 공무원	1.8	1.8	14.3	27.7	54.5	100.0(112)	4.31
보육정보센터 소장	1.9	0.0	1.9	22.2	74.1	100.0(54)	4.67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3.1	0.0	1.6	21.9	73.4	100.0(64)	4.63
학계 전문가	0.0	3.8	0.0	15.4	80.8	100.0(52)	4.73

〈부표 Ⅳ-2-14〉 배점 변경의 필요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53.2	42.6	3.9	0.4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58.0	36.6	4.5	0.9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5.6	38.9	5.6	0.0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57.8	40.6	1.6	0.0	100.0(64)
학계 전문가	34.6	61.5	3.8	0.0	100.0(52)

〈부표 Ⅳ-2-15〉 배점 적절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4.3	17.0	22.7	36.9	19.1	100.0(282)	3.50
보육담당 공무원	0.9	11.6	21.4	46.4	19.6	100.0(112)	3.72
보육정보센터장	1.9	20.4	18.5	33.3	25.9	100.0(54)	3.61
정보센터전문요원	4.7	23.4	28.1	31.3	12.5	100.0(64)	3.23
학계 전문가	13.5	17.3	23.1	26.9	19.2	100.0(52)	3.21

〈부표 Ⅳ-2-16〉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단위: %(명)

구분	2	3	7	10	12	15	20	45	계(수)
전체	1.7	1.7	6.7	76.7	1.7	5.0	5.0	1.7	100.0(60)
보육담당 공무원	7.1	-	7.1	57.1	7.1	14.3	-	7.1	100.0(14)
보육정보센터장	-	-	-	100.0	-	-	-	-	100.0(12)
정보센터전문요원	-	-	11.1	77.8	-	-	11.1	-	100.0(18)
학계 전문가	-	6.3	6.3	75.0	-	6.3	6.3	-	100.0(16)

〈부표 Ⅳ-2-17〉 배점의 적절성-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2.5	12.4	20.2	37.9	27.0	100.0(282)	3.74
보육담당 공무원	2.7	8.0	25.0	37.5	26.8	100.0(112)	3.78
보육정보센터장	1.9	14.8	16.7	33.3	33.3	100.0(54)	3.81
정보센터전문요원	3.1	15.6	15.6	42.2	23.4	100.0(64)	3.67
학계 전문가	1.9	15.4	19.2	38.5	25.0	100.0(52)	3.69

〈부표 Ⅳ-2-18〉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4	6.7	22.7	34.8	34.4	100.0(282)	3.94
보육담당 공무원	3.6	4.5	27.7	38.4	25.9	100.0(112)	3.79
보육정보센터장	0.0	7.4	14.8	25.9	51.9	100.0(54)	4.22
정보센터전문요원	0.0	9.4	17.2	39.1	34.4	100.0(64)	3.98
학계 전문가	0.0	7.7	26.9	30.8	34.6	100.0(52)	3.92

〈부표 Ⅳ-2-19〉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건물 소유형태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48.6	30.1	19.5	1.8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56.3	24.1	17.9	1.8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38.9	42.6	16.7	1.9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46.9	29.7	21.9	1.6	100.0(64)
학계 전문가	44.2	30.8	23.1	1.9	100.0(52)

〈부표 Ⅳ-2-2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2.8	12.4	26.6	38.3	19.9	100.0(282)	3.60
보육담당 공무원	3.6	9.8	26.8	42.0	17.9	100.0(112)	3.61
보육정보센터장	1.9	14.8	16.7	37.0	29.6	100.0(54)	3.78
정보센터전문요원	3.1	9.4	25.0	46.9	15.6	100.0(64)	3.63
학계 전문가	1.9	19.2	38.5	21.2	19.2	100.0(52)	3.37

〈부표 Ⅳ-2-2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건물 소유형태

단위: %(명)

구분	0	3	5	7	10	15	20	계(수)
전체	2.3	14.0	55.8	2.3	7.0	14.0	4.7	100.0(43)
보육담당 공무원	6.7	13.3	60.0	-	6.7	13.3	-	100.0(15)
보육정보센터장	-	11.1	44.4	-	22.2	11.1	11.1	100.0(9)
정보센터전문요원	-	12.5	62.5	-	-	12.5	12.5	100.0(8)
학계 전문가	-	18.2	54.5	9.1	-	18.2	-	100.0(11)

〈부표 Ⅳ-2-22〉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3.5	19.9	26.2	33.0	17.4	100.0(282)	3.41
보육담당 공무원	3.6	13.4	29.5	37.5	16.1	100.0(112)	3.49
보육정보센터장	3.7	20.4	20.4	27.8	27.8	100.0(54)	3.56
정보센터전문요원	4.7	17.2	31.3	32.8	14.1	100.0(64)	3.34
학계 전문가	1.9	36.5	19.2	28.8	13.5	100.0(52)	3.15

〈부표 Ⅳ-2-23〉 선정기준 감점 적절성-건물 소유형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3.2	6.7	28.4	40.1	21.6	100.0(282)	3.70
보육담당 공무원	2.7	7.1	29.5	41.1	19.6	100.0(112)	3.68
보육정보센터장	1.9	5.6	25.9	35.2	31.5	100.0(54)	3.89
정보센터전문요원	4.7	1.6	28.1	46.9	18.8	100.0(64)	3.73
학계 전문가	3.8	13.5	28.8	34.6	19.2	100.0(52)	3.52

〈부표 Ⅳ-2-2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1급 보육교사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8	2.8	13.5	36.5	45.4	100.0(282)	4.21
보육담당 공무원	1.8	3.6	15.2	45.5	33.9	100.0(112)	4.06
보육정보센터장	1.9	3.7	9.3	24.1	61.1	100.0(54)	4.39
정보센터전문요원	3.1	1.6	15.6	34.4	45.3	100.0(64)	4.17
학계 전문가	0.0	1.9	11.5	32.7	53.8	100.0(52)	4.38

〈부표 Ⅳ-2-25〉 배점 변경 필요성-1급 보육교사 비율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51.8	35.1	12.4	0.7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58.0	24.1	17.0	0.9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0.0	38.9	9.3	1.9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50.0	40.6	9.4	0.0	100.0(64)
학계 전문가	42.3	48.1	9.6	0.0	100.0(52)

〈부표 Ⅳ-2-26〉 배점 적절성: 1급 보육교사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2.1	7.1	23.8	47.9	19.1	100.0(282)	3.75
보육담당 공무원	1.8	5.4	26.8	48.2	17.9	100.0(112)	3.75
보육정보센터장	1.9	7.4	11.1	51.9	27.8	100.0(54)	3.96
정보센터전문요원	1.6	14.1	26.6	43.8	14.1	100.0(64)	3.55
학계 전문가	3.8	1.9	26.9	48.1	19.2	100.0(52)	3.77

〈부표 Ⅳ-2-27〉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단위: %(명)

구분	0	3	5	7	10	15	20	25	30	40	계(수)
전체	3.8	3.8	30.8	3.8	3.8	23.1	19.2	3.8	3.8	3.8	100.0(26)
보육담당 공무원	-	12.5	37.5	12.5	12.5	12.5	12.5	-	-	-	100.0(8)
보육정보센터장	20.0	-	60.0	-	-	-	20.0	-	-	-	100.0(5)
정보센터전문요원	-	-	20.0	-	-	50.0	10.0	-	10.0	10.0	100.0(10)
학계 전문가	-	-	-	-	-	-	66.7	33.3	-	-	100.0(8)

〈부표 Ⅳ-2-28〉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1급 보육교사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8	11.7	28.4	41.5	16.7	100.0(282)	3.60
보육담당 공무원	0.9	8.0	28.6	51.8	10.7	100.0(112)	3.63
보육정보센터장	3.7	11.1	29.6	29.6	25.9	100.0(54)	3.63
정보센터전문요원	1.6	14.1	25.0	37.5	21.9	100.0(64)	3.64
학계 전문가	1.9	17.3	30.8	36.5	13.5	100.0(52)	3.42

〈부표 Ⅳ-2-29〉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3.5	4.6	25.5	36.9	29.4	100.0(282)	3.84
보육담당 공무원	4.5	4.5	29.5	37.5	24.1	100.0(112)	3.72
보육정보센터장	3.7	5.6	18.5	29.6	42.6	100.0(54)	4.02
정보센터전문요원	4.7	4.7	23.4	35.9	31.3	100.0(64)	3.84
학계 전문가	0.0	3.8	26.9	44.2	25.0	100.0(52)	3.90

〈부표 Ⅳ-2-30〉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53.9	17.7	25.2	3.2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57.1	12.5	26.8	3.6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46.3	29.6	20.4	3.7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57.8	15.6	23.4	3.1	100.0(64)
학계 전문가	50.0	19.2	28.8	1.9	100.0(52)

〈부표 Ⅳ-2-3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3.5	14.2	35.5	34.8	12.1	100.0(282)	3.38
보육담당 공무원	4.5	12.5	32.1	39.3	11.6	100.0(112)	3.41
보육정보센터장	5.6	7.4	27.8	40.7	18.5	100.0(54)	3.59
정보센터전문요원	1.6	12.5	43.8	34.4	7.8	100.0(64)	3.34
학계 전문가	1.9	26.9	40.4	19.2	11.5	100.0(52)	3.12

〈부표 Ⅳ-2-32〉 생각하는 점수-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단위: %(명)

구분	0	3	5	7	10	15	계(수)
전체	6.0	42.0	42.0	4.0	4.0	2.0	100.0(50)
보육담당 공무원	-	63.2	26.3	10.5	-	-	100.0(19)
보육정보센터장	28.6	14.3	28.6	-	14.3	14.3	100.0(7)
정보센터전문요원	11.1	44.4	33.3	-	11.1	-	100.0(9)
학계 전문가	-	26.7	73.3	-	-	-	100.0(15)

〈부표 Ⅳ-2-33〉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3.5	12.8	33.7	36.9	13.1	100.0(282)	3.43
보육담당 공무원	2.7	11.6	32.1	43.8	9.8	100.0(112)	3.46
보육정보센터장	5.6	7.4	29.6	40.7	16.7	100.0(54)	3.56
정보센터전문요원	3.1	12.5	34.4	29.7	20.3	100.0(64)	3.52
학계 전문가	3.8	21.2	40.4	26.9	7.7	100.0(52)	3.13

〈부표 Ⅳ-2-3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6.7	18.8	45.7	20.6	8.2	100.0(282)	3.05
보육담당 공무원	5.4	15.2	49.1	24.1	6.3	100.0(112)	3.11
보육정보센터장	5.6	18.5	42.6	25.9	7.4	100.0(54)	3.11
정보센터전문요원	4.7	21.9	43.8	17.2	12.5	100.0(64)	3.11
학계 전문가	13.5	23.1	44.2	11.5	7.7	100.0(52)	2.77

〈부표 Ⅳ-2-35〉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29.8	6.7	40.8	22.7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33.0	7.1	39.3	20.5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27.8	9.3	40.7	22.2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29.7	6.3	46.9	17.2	100.0(64)
학계 전문가	25.0	3.8	36.5	34.6	100.0(52)

〈부표 Ⅳ-2-36〉 배점 적절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9.6	23.4	38.7	20.6	7.8	100.0(282)	2.94
보육담당 공무원	8.0	20.5	39.3	23.2	8.9	100.0(112)	3.04
보육정보센터장	7.4	27.8	29.6	22.2	13.0	100.0(54)	3.06
정보센터전문요원	6.3	20.3	50.0	17.2	6.3	100.0(64)	2.97
학계 전문가	19.2	28.8	32.7	17.3	1.9	100.0(52)	2.54

〈부표 Ⅳ-2-37〉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단위: %(명)

구분	0	3	5	7	10	15	계(수)
전체	32.3	3.2	8.6	52.7	2.2	1.1	100.0(93)
보육담당 공무원	34.4	6.3	12.5	43.8	3.1	0.0	100.0(32)
보육정보센터장	47.4	5.3	10.5	31.6	0.0	5.3	100.0(19)
정보센터전문요원	17.6	0.0	0.0	76.5	5.9	0.0	100.0(17)
학계 전문가	28.0	0.0	8.0	64.0	0.0	0.0	100.0(25)

〈부표 Ⅳ-2-38〉 배점의 적절성-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2.4	19.9	41.1	19.5	7.1	100.0(282)	2.89
보육담당 공무원	9.8	18.8	44.6	18.8	8.0	100.0(112)	2.96
보육정보센터장	11.1	22.2	38.9	20.4	7.4	100.0(54)	2.91
정보센터전문요원	9.4	17.2	39.1	25.0	9.4	100.0(64)	3.08
학계 전문가	23.1	23.1	38.5	13.5	1.9	100.0(52)	2.48

〈부표 Ⅳ-2-39〉 선정기준의 적절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5.3	8.9	33.0	33.7	19.1	100.0(282)	3.52
보육담당 공무원	7.1	8.0	39.3	30.4	15.2	100.0(112)	3.38
보육정보센터장	3.7	3.7	25.9	40.7	25.9	100.0(54)	3.81
정보센터전문요원	6.3	9.4	23.4	40.6	20.3	100.0(64)	3.59
학계 전문가	1.9	15.4	38.5	25.0	19.2	100.0(52)	3.44

〈부표 Ⅳ-2-40〉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48.6	19.1	19.9	12.4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42.0	17.0	25.9	15.2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51.9	27.8	11.1	9.3	100.0(54)
정보센터전문요원	57.8	17.2	17.2	7.8	100.0(64)
학계 전문가	48.1	17.3	19.2	15.4	100.0(52)

〈부표 Ⅳ-2-4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4.6	13.5	37.2	33.3	11.3	100.0(282)	3.33
보육담당 공무원	5.4	13.4	38.4	33.0	9.8	100.0(112)	3.29
보육정보센터장	3.7	9.3	24.1	38.9	24.1	100.0(54)	3.70
정보센터전문요원	1.6	17.2	37.5	37.5	6.3	100.0(64)	3.30
학계 전문가	7.7	13.5	48.1	23.1	7.7	100.0(52)	3.10

〈부표 Ⅳ-2-4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단위: %(명)

구분	0	2	3	5	7	10	15	20	계(수)
전체	27.5	9.8	19.6	2.0	2.0	31.4	3.9	3.9	100.0(51)
보육담당 공무원	38.1	4.8	28.6	-	-	23.8	-	4.8	100.0(21)
보육정보센터장	42.9	-	28.6	-	-	28.6	-	-	100.0(7)
정보센터전문요원	25.0	-	8.3	-	8.3	41.7	16.7	-	100.0(12)
학계 전문가	-	36.4	9.1	9.1	-	36.4	-	9.1	100.0(11)

〈부표 Ⅳ-2-43〉 배점의 적절성-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6.7	12.8	29.4	36.5	14.5	100.0(282)	3.39
보육담당 공무원	5.4	15.2	33.9	31.3	14.3	100.0(112)	3.34
보육정보센터장	7.4	11.1	20.4	40.7	20.4	100.0(54)	3.56
정보센터전문요원	6.3	9.4	28.1	39.1	17.2	100.0(64)	3.52
학계 전문가	9.6	13.5	30.8	40.4	5.8	100.0(52)	3.19

〈부표 Ⅳ-2-4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2.8	1.8	36.5	42.6	16.3	100.0(282)	3.68
보육담당 공무원	2.7	0.9	39.3	42.0	15.2	100.0(112)	3.66
보육정보센터장	1.9	1.9	35.2	40.7	20.4	100.0(54)	3.76
정보센터 전문요원	6.3	0.0	34.4	42.2	17.2	100.0(64)	3.64
학계 전문가	0.0	5.8	34.6	46.2	13.5	100.0(52)	3.67

〈부표 Ⅳ-2-45〉 배점 변경의 필요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단위: %(명)

구분	현행 유지	강화	완화	삭제	계(수)
전체	57.1	23.0	13.5	6.4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58.9	22.3	11.6	7.1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66.7	22.2	9.3	1.9	100.0(54)
정보센터 전문요원	54.7	18.8	17.2	9.4	100.0(64)
학계 전문가	46.2	30.8	17.3	5.8	100.0(52)

〈부표 Ⅳ-2-4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1	10.3	40.4	34.8	13.5	100.0(282)	3.49
보육담당 공무원	1.8	11.6	38.4	34.8	13.4	100.0(112)	3.46
보육정보센터장	0.0	5.6	29.6	46.3	18.5	100.0(54)	3.78
정보센터 전문요원	0.0	7.8	48.4	32.8	10.9	100.0(64)	3.47
학계 전문가	1.9	15.4	46.2	25.0	11.5	100.0(52)	3.29

〈부표 Ⅳ-2-47〉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점수-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단위: %(명)

구분	0	2	3	5	8	10	20	계(수)
전체	15.6	6.3	28.1	6.3	3.1	37.5	3.1	100.0(32)
보육담당 공무원	20.0	6.7	20.0	6.7	-	40.0	6.7	100.0(15)
보육정보센터장	-	-	33.3	33.3	-	33.3	-	100.0(3)
정보센터 전문요원	20.0	-	40.0	-	-	40.0	-	100.0(5)
학계 전문가	11.1	11.1	33.3	-	11.1	33.3	-	100.0(9)

〈부표 Ⅳ-2-48〉 배점의 적절성-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1.8	9.6	39.0	34.0	15.6	100.0(282)	3.52
보육담당 공무원	0.9	12.5	40.2	33.0	13.4	100.0(112)	3.46
보육정보센터장	0.0	7.4	25.9	42.6	24.1	100.0(54)	3.83
정보센터 전문요원	1.6	4.7	50.0	28.1	15.6	100.0(64)	3.52
학계 전문가	5.8	11.5	36.5	34.6	11.5	100.0(52)	3.35

부록 4. 기본보육료 관련 부모 조사 질문지

영아 기본보육료에 관한 부모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영아 보육비용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제 이용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부모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지원여부	시·도 번호		일련번호				지역번호	응답자번호

주소	(　　)시·도　(　　)구·군　(　　)동·읍·면			① 대도시 동　② 중소도시 동　③ 읍면	
응답자		자녀와 관계	① 모　② 부　③ 기타	전화번호	
아동명				어린이집명	

조 사 지 침

- 첨부한 명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입니다.
- 연령 등을 파악해서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아동을 확인하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 조사표 마지막은 명단 자료를 이기합니다.

※ 귀댁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인지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연령 등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아동을 찾아서 그 이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방학이라 잠시 쉬고 있어도 다니는 것으로 조사합니다)

1. 연령과 성별을 확인합니다 — 연령 성별
( )년 ( )월 ( )일 출생으로 2011년 1월 현재 만 ( )세 성별: ① 남 ② 여

2. 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를 기록합니다
① 첫째아 ② 둘째아 ③ 셋째아 ④ 넷째아 이상

3. 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아 온 후에 주로 돌봐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기타 친인척 ④ 보육모 등 비혈연
⑤ 기타 성인 ⑥ 형제자매 ⑦ 없음

4. 가족유형은 어떠합니까?
①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② 핵가족 ③ 한부모가족 ④ 기타

5.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은 몇 개월 정도입니까?
(출생 이후 다른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도 모두 합하여 개월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년 ( )개월 → 개월수로 환산하면 총 ( )개월

6. 현재 자녀는 월~금요일 평일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① 5일 모두 종일 이용 ② 5일 이용하되 가끔 종일 이용 ③ 일주일에 3~4번 이용
④ 일주일에 1~2번 이용 ⑤ 필요시 가끔 이용 ⑥ 기타( )

7. 현재 평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몇시입니까? 집에서 어린이집에 오고 가는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예 07:30~17:30)

가는 시각	오는 시각
( )시 ( )분	( )시 ( )분

시작
종료

8. 현재 자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토요일	① 매주 이용	② 격주 이용	③ 필요시 가끔 이용	④ 이용하지 않음
일요일	① 매주 이용	② 격주 이용	③ 필요시 가끔 이용	④ 이용하지 않음

9. 이 아이는 국가로부터 월 보육료나 교육비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 영아 기본보육료 방문학습바우처는 제외합니다)
① 전액 면제
② 일부 감면
③ 아무런 혜택 없음(→문 16으로)

9-1. 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월 ( )천원

9
천원

10.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또한 최근 3개월 동안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등의 필요경비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천원 단위로 기록)

1) 일정하게 정해진 월 보육료	2) 특별활동 비용 월 평균	3) 특별활동 이외 납부액 월 평균
( )천원	( )천원	( )천원

11. 영아 기본보육료를 알고 계십니까?
(※ 영아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정부가 시설에 지급하는 제도로, 보육료와 합하여서 1인당 보육비용이 됩니다)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들어보긴 했으나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2.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① 지원 받는다(→문13으로) ② 안 받는다(→문12-1로) ③ 지원 받는지 아닌지 모른다(→문13으로)

12-1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초과보육 ② 지원 조건 미충족
③ 기타 ④ 모름

13. 영아 기본보육료는 지원 액수가 얼마인지 계십니까? 안다는 경우 액수를 물어서 기록해 주세요.
(※ 조사원 참고 : 0세아 361,000원, 만 1세아 174,000원, 만 2세아 115,000원)
① 안다( )천원 999) 전혀 모름

천원

14.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십니까?
① 아아사랑 카드로 ② 일반 신용카드로
③ 어린이집 은행 계좌로 ④ 현금으로

15 (아이사랑 카드 결제시) 영수증에 영아 기본보육료 액수가 찍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영수증에 영아 기본보육료 액수가 찍혀 나오는 것을 알고 확인한다
② 영수증에 영아 기본보육료 액수가 찍혀 나오는 것은 알지만 확인하지는 않는다
③ 영수증에 영아 기본보육료 액수가 찍혀 나오는 것을 모른다
⑧ 비해당(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지 않음)

16. 귀하는 보육비용에 비하여 보육서비스와 환경의 질적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비용 대비 수준의 적절성				16
	1. 매우 적절	2. 비교적 적절	3. 다소 개선이필요	4. 많은 개선이필요	
1) 교재교구 다양성 및 충분성	□ 1	□ 2	□ 3	□ 4	1)
2) 급간식의 질	□ 1	□ 2	□ 3	□ 4	2)
3) 프로그램 등 보육활동 다양성	□ 1	□ 2	□ 3	□ 4	3)
4) 교사의 자질과 긍정적 상호작용	□ 1	□ 2	□ 3	□ 4	4)
5) 건강관리 및 안전한 보호	□ 1	□ 2	□ 3	□ 4	5)
6) 실내 환경의 쾌적한 정도	□ 1	□ 2	□ 3	□ 4	6)
7) 실외 설비(장치)	□ 1	□ 2	□ 3	□ 4	7)

17. 귀하는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이용이나 어머니 취업활동, 추가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구분	1. 많은 영향을 줌	2. 다소 영향을 줌	3. 약간 영향 있음	4. 전혀 무관함	16
1) 어린이집 이용	□ 1	□ 2	□ 3	□ 4	2)
2) 어린이집 선택	□ 1	□ 2	□ 3	□ 4	3)
3) 어머니 취업활동	□ 1	□ 2	□ 3	□ 4	2)
4) 추가 출산	□ 1	□ 2	□ 3	□ 4	3)

18 귀 자녀의 보육교사가 몇 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지 아십니까? 안다면 몇 명 입니까?
① 안다 (명) ② 모른다

명

19. 귀하는 귀 자녀가 속한 반이 단일연령반인지 아니면 혼합연령반인지 알고 계십니까?
① 단일연령반 ② 우리아이보다 나이 많은아동과 혼합연령반
③ 우리아이보다 나이 어린 아동과 혼합연령반 ④ 혼합연령반이란 것만 안다
⑤ 모름

20. 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① 평가인증을 받았다 ② 평가인증을 안 받았다
③ 평가인증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④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른다

21. 만약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0세는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아 10만원씩을 양육수당으로 줄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① 계속 어린이집에 보냄(→문21-1로)
②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돌봄(→문22로)
③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다른 식구가 돌보게 하겠음(→문22로)
④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보냄(→문22로)
⑤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보육모(베이비시터)가 돌보게 하겠음(→문22로)
⑥ 모르겠음(→문22로)

21-1 (계속 보내겠다는 경우) 만약에 양육수당 액수를 부모 보육료 수준(0세아 39만원, 1세아 35만원, 2세아 28만원)으로 늘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그래도 계속 어린이집에 보냄 ② ~ ⑥ 질문 번 보기와 동일

22. (보육료 지원을 받는 취업모의 경우만 질문) 보육료 지원 대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볼 의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그렇다 (만원 정도면) ② 아무리 많아도 직장은 안 그만 둘 것임
③ 잘 모르겠다 ⑧ 비해당

만원

23 자녀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를 질문합니다.

구분	부	모
1) 만 연령	만 세	만 세
2) 부모의 학력을 질문합니다 ① 고졸 이하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③ 4년제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⑨ 비해당(부재, 사망, 이혼)		
3) 부모의 취업상태를 질문합니다. ① 종일제 출근 ② 시간제 출근 ③ 휴직 중 ④ 자영업(가족 고용) ⑤ 재택(가내) 작업 ⑥ 미취업, 교육훈련 중 ⑦ 미취업, 구직 중 ⑧ 미취업 ⑨ 비해당		
3-1) (3번 질문에서 ①~③, ⑤번에 응답한 경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질문합니다.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일용직 ④ 기타 ⑨ 비해당		
4)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5) 일주일 당 평균 근로시간을 얼마입니까?.		
6)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만원	만원

※ 다음은 조사명부를 보고 이기해 주세요

1. 이용 어린이집 유형	① 민간개인 ② 가정 ③ 기타
2. 평가인증 여부	① Y ② N
3. 어린이집 반구분	① 0세반 ② 1세반 ③ 2세반 ④ 0,1세반 ⑤ 1,2세반 ⑥ 2,3세반 ⑦ 기타 ⑧ 모름
4. 보육료 지원 자격	① 영유아(법정) ② 영유아 ③ 일반아동 ④ 기타(장애아,다문화)
5. 영아기본보조금 미수령 이유	① 행정처분 ② 교사미배정 ③ 회계보고위반 ④ 정원초과위반 ⑤ 아동반미배정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기본보육료·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보육관계자 조사 질문지

영아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아 기본보육료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조사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송신영 연구원(02-398-7709, song@kicce.re.kr)
김문정 연구원(02-398-7719, moon@kicce.re.kr)

※ 귀하의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 름	
성 별	남 ( ) 여 ( )
소속기관	
직 위	

※ 의견조사에 대하여 조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육 아 정 책 연 구 소

Ⅰ. 영아 기본보육료 관련 질문입니다.

※ 각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응답에 ✓표해 주시고, 해당되는 의견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영아 기본보육료의 성격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괄 수령하기 때문에 부모보조금인지 시설보조금 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현재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한 보조금으로, 시설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바, 부모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중 어느 쪽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보육료 일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___②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해당되므로 시설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___③ 형식상 보육료에 해당하나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①, ②성격 중 특정성격이 강하다 말하기 어려움

2. 현재 어린이집에서 1, 2세반은 반 정원을 2명까지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아 기본보육료는 정원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이는 영아 기본보육료가 정원을 반영하여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초과보육 허용 자체 ___① 적절함 ___② 부적절함

   2-2. 초과보육 해당 아동 기본보육료 미지급 ___① 적절함 ___② 부적절함

   2-3. 초과보육 해당 아동 기본보육료 일부 지급 ___① 적절함 ___② 부적절함

   2-4. 초과보육 해당 아동 기본보육료 전액 지급 ___① 적절함 ___② 부적절함

2. 영아 기본보육료의 조건과 환수

현재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은 보육료 상한선 준수 등 다섯 가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영아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3-2. 총 정원 준수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3-3.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3-4.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3-5. 법령·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4.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음을 지원 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 평가인증 통과 ___① 찬성 ___② 반대
4-2. 클린카드 사용 ___① 찬성 ___② 반대
4-3. 엄격한 회계 보고 ___① 찬성 ___② 반대
4-4 취약보육 제공 ___① 찬성 ___② 반대
4-5. 입소우선순위 적용 ___① 찬성 ___② 반대
4-6. 표준보육과정 운영 ___① 찬성 ___② 반대
4-7.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시설 기준: 보육사업안내에 있는 급여표) 지급
___① 찬성 ___② 반대

5. 현재 3번 질문 항목과 같은 지원 조건 미 준수 시 이미 지급한 영아 기본보육료를 환수합니다. 이때 환수 방식이 적절한지 질문합니다.
5-1. 영아가 가장 많은 반 전체 영아 기본보육료 환수
_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5-2. 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 기본보육료 환수
_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5-3. 해당 월 영아기본보육료 전체 환수
_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6. 이미 지급한 영아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할 경우 환수금액에 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니까?
_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3. 영아 기본보육료의 효과와 향후 정책

7. 대체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영아 보육아동 증가 등 영아보육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 영아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___① 효과 있음 ___② 효과 없음
7-2. 영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___① 효과 있음 ___② 효과 없음
7-3. 일하는 엄마 지원으로 여성 취업에 기여 ___① 효과 있음 ___② 효과 없음
7-4. 부모 비용 부담 완화로 출산에 기여 ___① 효과 있음 ___② 효과 없음
7-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또는 근무환경 ___① 효과 있음 ___② 효과 없음

8. 귀하는 영아 기본보육료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효과 _____

부정적 영향 _____

9. 향후 영아 기본보육료 추진 정책으로 어머니의 취업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각 연령에 적용할 경우 동의하십니까?

9-1. 0세아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9-2. 1세아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9-3. 2세아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10. 현재와 같이 영아 기본보육료를 바우처에 담아서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___① 원칙적으로 찬성 ___② 반대

11. 영아 기본보육료를 바우처에 담아서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 하여 지원하는 경우 모든 영아 부모가 아이사랑카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초과보육을 허용할 경우와 금지할 경우에 각각 의견을 써 주세요.

11-1. 현재와 같은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부모에게 지원(초과보육아동 기본보육료 수령 가능)

___① 찬성(이유:_____)

___② 반대(이유:_____)

11-2. 초과보육 불인정하면서 부모에게 지원

___① 찬성(이유:_____)

___② 반대(이유:_____)

Ⅱ.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질문입니다.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범사업 안내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평가인증 점수와 놀이터 등 8개 추가 자격조건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규모(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받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품질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운영 및 관리 체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방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

1.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 신청자격 기준 중 민간어린이집은 ①, ②, ③, 가정어린이집은 ①, 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는 신청자격 기준이 시설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 기 】

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어린이집
②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③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 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영아+유아) 현원의 30.0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1) 민간어린이집 ① 예 ② 아니오 ☞ 문항 1-1로
2) 가정어린이집 ① 예 ② 아니오 ☞ 문항 1-1로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1.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하지 않은 기준과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1) 민간어린이집 _____
2) 가정어린이집 _____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적절성

2. 귀하는 다음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이나 조건들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 점수	①	②	③	④	⑤	
2) 놀이터 구비	①	②	③	④	⑤	
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①	②	③	④	⑤	
4) 건물 소유형태	①	②	③	④	⑤	
5) 1급 보육교사 비율	①	②	③	④	⑤	
6)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①	②	③	④	⑤	
7) 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수상실적	①	②	③	④	⑤	
8)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강화·완화 또는 삭제되어야 할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모두 √표해 주세요.

	강화	완화	삭제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① 평가인증 점수				
② 놀이터 구비				
③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④ 건물 소유형태				
⑤ 1급 보육교사 비율				
⑥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⑦ 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 실적				
⑧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⑨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4.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떠한 선정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가 필요한 항목에 모두 √표해 주세요.

_____ ① 평가인증점수 하한선 설정 _____ ② 특별활동 지침 준수
_____ ③ 대표자 운영 시설 수 _____ ④ 취약보육 실시
_____ ⑤ 클린카드 사용 _____ ⑥ 1시설 1계좌 사용
_____ ⑦ 표준보육과정 운영 _____ ⑧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세부 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5.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점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 점수	45점	①	②	③	④	⑤	
2) 놀이터 구비	3점	①	②	③	④	⑤	
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5점	①	②	③	④	⑤	
4) 건물 소유형태	10점	①	②	③	④	⑤	
5)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②	③	④	⑤	
6)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점	①	②	③	④	⑤	
7) 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5점	①	②	③	④	⑤	
8)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5점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시도에서 자체 설정	5점	①	②	③	④	⑤	

└☞문항 5-1로┘

5-1. 문항5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경우, 해당 선정기준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수를 모두 적어 주세요.

① 평가인증 점수(45점) _____점
② 놀이터 구비(3점) _____점
③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5점) _____점
④ 건물 소유형태(10점) _____점
⑤ 1급 보육교사 비율(10점) _____점
⑥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5점) _____점
⑦ 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 실적(최대 5점) _____점
⑧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5점) _____점
⑨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5점) _____점

6. 귀하는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이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할 정도의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점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점수							
① 평가인증 점수 95.00점~100점	45점	①	②	③	④	⑤	
② 평가인증 점수 90.00점~94.99점	45점						
③ 평가인증 점수 85.00점~89.99점	40점						
④ 평가인증 점수 85.00점 미만	35점						
2) 놀이터 구비							
①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터 구비 시(실외, 실내, 옥상, 인근놀이터 인정)	3점	①	②	③	④	⑤	
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시	5점	①	②	③	④	⑤	
②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미충족 시	0점						
4)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①	②	③	④	⑤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8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5) 1급 보육교사 비율							
① 60.00% 이상	10점	①	②	③	④	⑤	
② 50.00% 이상 ~ 60.00% 미만	6점						
6)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① 5년 미만	5점	①	②	③	④	⑤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7점						
③ 10년 이상	10점						
7) 원장·보육교사의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 실적							
① 원장·보육교사의 어린이집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 실적	최대 5점	①	②	③	④	⑤	

세부 항목	점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8)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보육료 지원 영유아/전체 현원)							
① 60.00% 이상	5점	①	②	③	④	⑤	
② 50.00% 이상 ~ 60.00% 미만	4점						
③ 40.00% 이상 ~ 50.00% 미만	3점						
④ 35.00% 이상 ~ 40.00% 미만	2점						
⑤ 35.00% 미만	1점						
9)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①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5점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항목의 가점 · 감점 배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7.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중 다음 세부항목에 대해 **가점**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가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평가인증 점수	① 2005~2009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3점	①	②	③	④	⑤	
2) 놀이터 구비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에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구비된 실외놀이터 구비 시	3점	①	②	③	④	⑤	
3) 기타보육 교직원 관련	①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30.00% 이상	3점	①	②	③	④	⑤	
	② 원장의 최종 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3점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음 세부항목에 대해 **감점**을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감점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건물 소유 형태	① 월 융자 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00% 미만	1점	①	②	③	④	⑤	
	② 월 융자 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5.00% 이상 10.00 % 미만	3점						
	③ 월 융자 이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00% 이상	5점						
2)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①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3점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려면, 평가인증 점수와 추가 신청자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점수로 80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 문항 9-1로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9-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정기준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점 이상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따라 획득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이 결정됩니다. 선정 순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 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1순위: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개소수 비율	①	②	③	④	⑤	
2) 2순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 3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3.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체계

11. 귀하는 다음의 사후 관리체계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응답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게 전반적인 운영과정 및 준수 요건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2) 자율공부모임의 주제 및 수행 방향 등에 관한 전체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간의 자율적인 공부 모임 실시	①	②	③	④	⑤	
4) 어린이집 운영 시 필요한 매뉴얼 및 전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	①	②	③	③	⑤	
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①	②	③	③	⑤	

12.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관리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원장 대상의 재무회계 교육 _____ ② 재무회계 관련 지도 감독
_____ ③ 표준보육과정 운영 관리 _____ ④ 정기 평가
_____ ⑤ 시·군·구간 교차점검 _____ ⑥ 시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점검
_____ ⑦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4.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3.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현재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 문항 13-1로

13-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 수에 따라 차등 지원 _____ ① 찬성 _____ ② 반대
2)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_____ ① 찬성 _____ ② 반대
3) 교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_____ ① 찬성 _____ ② 반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4.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입니다. 구간별 정원과 지원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인 이상
96만원	248만원	440만원	560만원	824만원

1) 구간별 정원 ____① 매우 부적절 ___② 부적절 ___③ 보통 ___④ 적절 ___⑤ 매우 적절
2) 구간별 지원액 ____① 매우 부적절 ___② 부적절 ___③ 보통 ___④ 적절 ___⑤ 매우 적절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5.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취사부 지원 _____ ② 보육교사 도우미 지원
_____ ③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_____ ④ 급식비 지원
_____ ⑤ 기타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Ⅵ.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관련

16.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전체 어린이집의 5% 미만(국공립어린이집보다 적은 수준)
_____ ② 전체 어린이집의 5%(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수준)
_____ ③ 전체 어린이집의 5~10%
_____ ④ 전체 어린이집의 10~20%
_____ ⑤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7. 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민간어린이집의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민간어린이집의 10% 미만
_____ ② 민간어린이집의 10~20%
_____ ③ 민간어린이집의 20~30%
_____ ④ 민간어린이집의 30~40%
_____ ⑤ 민간어린이집의 40~50%
_____ ⑥ 민간어린이집의 50% 이상

※ 응답하신 이유나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장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1-2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87-5 93330